

통 계 조 사 원 명 심 서

1970

006216

차 례

1. 통계 조사원 복무규정 -----	1
2. 통계 조사원이 하여야 할 일 -----	23
3. 주요 통계 조사일람 -----	33
4. 광공업 동태조사 -----	41
5. 경제활동 인구조사 -----	103
6. 가계조사 -----	133
7. 전국소매물가조사 및 기준시 물가조사 -----	239
8. 도매물가조사 -----	279
9. 도 소매업 동태조사 -----	339
부 록 -----	355
1. 연 령 표 -----	357
2. 계량단위 환산표 -----	359

1. 통계조사원 복무규정

통계조사원복무규정

경제기획원훈령제 14 호
서기 1963년 2월 13일 공포
개정 경제기획원훈령제 16 호
서기 1963년 5월 20일 공포
개정 경제기획원훈령제 18 호
서기 1963년 9월 9일 공포
개정 경제기획원훈령제 24 호
서기 1964년 5월 9일 공포
개정 경제기획원훈령제 32 호
서기 1965년 9월 28일 공포
개정 경제기획원훈령제 45 호
서기 1968년 6월 7일 공포
개정 경제기획원훈령제 51 호
서기 1970년 1월 19일 공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규정은 통계조사에 종사하는 정규직 통계조사원과 임시직 통계조사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계조사의 신속·정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통계법 제 8 조 동법 시행령 제 4 조 및 제 9 조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제 3 조 본 규정은 통계법 제 16 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정규 및 임시직 통계조사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제 2 장 임 용 과 복 무

제 4 조 ① 임시직 통계조사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복수추천을 받아 조사통계국장이 서류 또는 필기전형에 의하여 임명한다.

② 임시직 통계조사원의 임명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로서 연령 35세미만인 자

나. 공무원법 제 33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징세기관 및 경찰관서에 재직하지 아니하였던 자

제 5 조 임시직 통계조사원의 복무기간은 조사업무가 계속되는 기간에 한한다.

제 6 조 통계조사원은 조사통계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에 주재하여야 한다.

제 7 조 ① 조사통계국장은 통계조사원의 본 규정 제 9조에 규정된 통계조사 수행에 있어서 지방행정기관장의 감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부산시 및 각도의 정규직 통계조사원은 해당 시·도의 조사통계과와 기타 시 및 주요군부에 주재하여 조사업무를 담당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조사통계국장이 기타 지역을 지정하여 주재시킬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의 통계조사원은 조사통계국에 주재하며 조사통계국장의 직접 명령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①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사통계국장은 정규직 통계조사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임시직 통계조사원은 해임한다.

가. 모든 자료의 제출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연 3회이상 위반하였거나 복무태만으로 인하여 연 2회이상 조사통계국장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였을 때

나. 직무를 무단 이탈하여 조사상의 장애를 초래하였을 때

다. 기타 공무원법 제 3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② 본 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정규직 통계조사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고 임시직 통계조사원은 적어도 1개월전에 그 사퇴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 사 업 무

제 9 조 통계조사원은 조사통계국에서 실시하는 지정통계조사와 일반 통계조사 및 기타조사에 종사한다.

제 10 조 통계조사원은 조사통계국장의 지시를 받아 조사에 수반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장 일 반 서 무

제 11 조 통계조사원이 주재하고 있는 부산시 및 각도 조사통계과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한다.

- ① 출근부 (서식 제 1 호)
- ② 월간근무상황보고서철 (서식 제 2 호)
- ③ 주간근무상황보고서철 (서식 제 3 호)
- ④ 조사원 거주 신고서 (서식 제 4 호)
- ⑤ 관내조사원명부 (서식 제 5 호)
- ⑥ 문서건명부 (서식 제 6 호)
- ⑦ 조사원이 제출한 각종 참고서류철
- ⑧ 기타 업무에 필요한 각종 문서의 작성편철

제 12 조 조사업무를 제외한 통계조사원의 기타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규직 통계조사원의 경우

가. 인접지역내에 주재 근무하고 있는 임시직 통계조사원의 업무활동을 지도감독한다.

나. 임시직 통계조사원이 직무위반으로 업무수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조사통계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월간근무상황 보고서를 매월말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10일 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조사통계국장에게 제출한다.

라. 전항의 월간 근무상황 보고서는 별첨서식 제 4호에 의한다.

마. 서울지구는 직접 조사통계국장에게 제출한다.

② 임시직 통계조사원의 경우

가. 거주신고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소속 정규직통계조사원을 경유하여 조사통계국장에게 1부는 시·도 조사통계과 주재 통계조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거주변동이 있을 때에도 즉시 그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거주신고는 별첨서식 제 5호에 의한다.

다. 지정된 사항 이외의 경우라도 중요사항은 시·도 주재 통계조사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삭제

제 14 조 삭제

제 15 조 ① 통계조사원은 주간근무상황 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시·도 조사통계과 주재 통계조사원에게 제출한다. 단, 서울지구 통계조사원은 1부만 작성하여 조사통계국장에게 제출한다.

② 지방 구·시·군의 장에게 전항의 주간근무상황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직접 지참하여 주간근무상황 보고서 기재내용을 구두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주간근무상황 보고서는 별첨서식 제 3호에 의하되 전주의 근무상황과 차주의 근무 예정상황을 기재한다.

제 16 조 ① 통계조사원의 제 청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서울지구 이외의 통계조사원은 주재지역 행정기관의 장(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통계조사원이 청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시·도 주재 통계조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가기간이 1주일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통계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전조의 규정에 의해 청가를 승인할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업무를 대행할 자를 동시에 지정하여야 한다.

제 18 조 ① 통계조사원이 그 직을 사퇴할 때에는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되 정규직 통계조사원의 인계 인수시에는 시·도 조사통계과장이 임회를 하고 임시직 통계조사원의 인계 인수시는 시·도 주재 통계조사원이 임회하여야 한다.

단, 서울지구주재 통계조사원의 인계인수는 기획계장이 임회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규직 통계조사원은 조사통계국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가 지정하는 정규직 통계조사원에게 인계하고 임시직 통계조사원은 시·도주재 정규직 통계조사원에게 인계한다.

③ 인계인수서는 2부 작성하여 전임자 및 후임자가 서명날인한

후 1부는 조사통계과에 비치하여야 하며 1부는 조사통계국장에
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훈 련

제 19 조 ① 통계조사원은 년 2회 정기훈련을 실시한다.

② 통계조사원이 대체되었을 때에는 시·도주재 정규직 통계조사
원 책임하에 훈련시켜야 한다.

③ 전 ①·②항 이외에도 조사통계국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훈
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수

제 20 조 임시직 통계조사원에게는 매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 21 조 통계조사원에게 다음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가. 통계조사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나. 통계조사원의 훈련기간중에 소요되는 여비

다. 기타 특수조사에 소요되는 여비

부 칙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영중 부산시와 각도 및 구·시군의 장의 통계조사원에 대
한 관련조항은 통계조사원이 해당 구·시·군에 주재되었을 때부터
시행한다.

부 표

(서 식 제 1 호 전 면)

과 명																성 명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1	직 명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출 장	
월																	공 가	
																	결 근	
년																	병 가	
																	기 가	
년																	년 가	
																	지 참	
년																	조 퇴	

근 무 상 황 카 - 드

구분 날자	종별	필요한 날자수 및 시간			가는 곳	사유 또는 용무	결재를 바랍니다				
		일시 부터	일시 까지	날자수 시간			신청 또는 수명자	주무과장	총무과장	주무국장	
19 .											
19 .											
19 .											
19 .											
19 .											
19 .											
19 .											
신분상의 이동		발령년월일		소 속		발령사항		비고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 12 -

월 간 근 무 상 황 보 고 서

(서 식 제 2 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좌하

담당지구명		조사원 성명	인	보 고 일 자
조 사 사 항 및 업 무 처 리 현 황				
조 사 표 류 및 용 품 수 령 관 계				
근 부 관 계	담당구역 조사원수	사 고 내 용		시 정 및 견 의 사 항
	비 고			
	현 재 원			
기 타				

주간근무상황보고서

(서식 제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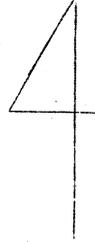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조사담당 통계조사원 성명

①

통 계 조 사 원 근 무 상 황	<p>1. <u>전주 실시 상황</u></p> <p>2. <u>금주 실시 예정 상황</u></p>
---	---

약 도



약도는 연필로 기입할 것.

조 사 원 명 부

(서 식 제 5 호)

담 당 조사 구 명	부 호	성 명	성 별	주 소

결 재 경 유	담 당	계	계 장	과 장	국 장

공 가 원

로 인하여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 을 얻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
다.

서기 197 년 월 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통계조사원 성명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좌하

결 재 경 유	담	당	계	계	장	과	장	국	장

병 가 원

로 인하여

월
월

일
부터
일
까지

일간

를 얻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심을

양망하나이다.

서기 197 년 월 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통계조사원 성명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좌하

결 재 경 유	담	당	계	계	장	과	장	국	장

연 . 가 원

로 인하여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 를 연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심
을 양망하나이다.

서기 197 년 월 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통계조사원 성명

경제 기획원 조사 통계 국장 과 하

2. 통계조사원이 하여야 할 일

통계조사원이 하여야 할 일

1. 통계조사원의 임무

통계조사에 있어서 통계조사원의 임무는 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있다.

조사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은 곧 맡은바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을 것과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다.

2. 통계조사원의 책임

통계조사에 있어서 통계조사원의 책임은 조사상의 착오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통계법에서 규정한 제 20 조 4 항의 적용을 유의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 20 조 4 항 (벌칙)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조사의 결과불 진실과 상반된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한자

3. 일반적 유의사항

통계조사원은 특히 조사활동에 있어 누락 혹은 중복됨이 없도록 전념하여야 한다.

통계조사원은 훈련 또는 지시받은 바에 의하여 행동하여야 하고 준비조사 또는 실지조사시에 병고 또는 기타사고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인접정규직 통계조사원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통계조사원은 조사상 지득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통계조사원은 조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심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통계조사원은 항상 통계조사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계몽선전에 주력하여야 한다.

4. 조사상의 유의사항

(1) 조사가구를 방문할 때에는 시간선택에 주의하여야 하며 가급적 식사시간을 피하고 관, 혼, 상, 제시에는 적당한 일자 및 시간을 선택하여 재방문토록 한다.

(2) 가구를 방문할 때에는 항상 경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참작하여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대화를 삼가하여야 한다.

(3) 응답자를 위협하여 응답을 강요하거나 암시를 주어 회답을 유도치 말고 호의적이며 자발적인 응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응답자가 응답을 기피 또는 거부할 가능성이 많은 조사사항의 질의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에 세심한 배려를 하여 허위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응답자가 간혹 불손한 응답태도를 갖더라도 통계조사원은 본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겸손하고 친절하게 납득시켜서 이해토록 하고 차후부터는 응답호의를 배풀도록 하여야 한다.

(6) 응답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고 「이번에만 닥의 조사를 하고 차후부터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응답자를 속이며 정부 통계조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할 때에는 제1차로 본 조사의 목적, 취지, 이용면 등에 관하여 즉 병역, 과세 등과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설명을 하여 설득시키고 그래도 불응할 때에는 동·이장을

대동하여 제차 설득시켜야 하며 끝내 불응할 때에 한하여 관할구 시·읍·면장의 응답거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8) 가구원 전원이 단기의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장기의출 하였을 때에는 인가 또는 이장 등의 정보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표 또는 보조표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정보제공자의 날인을 받도록 한다.

또 동가구에 대하여는 다음 조사시에 별도로 동기간내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환언하면 종래에 허다하였던 「조사불능」 또는 「응답거부」를 최소한도로 적게하여야 한다.

(9) 통계조사원은 반드시 지시받은 조사기일에 준비조사 또는 실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기일전이나 -또는 후에 조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중앙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키 위하여 조사구 관할 각구·시·읍·면장으로 부터 통계조사원 활동상황에 관한 보고를 수시로 받을 예정이다.

(10) 조사시에는 반드시 조사대상가구를 방문하여야 하며 이장 또는 동리사람들의 진술에 의하여 대상가구 아닌 곳에서 대상가구원 아닌 사람에 의한 조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11) 여러분은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검은 안경을 쓴다면가 불량스러운 옷을 입지말것)

(12) 가구 방문시에는 절대로 음주하지 말것과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13) 여러분은 통계조사원의 신분증을 보이면서 신중히 자기소개를 하여야 한다.

(14) 표본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왜? 표본조사에 선정

되었나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예) 「경제활동인구조사는 3개월에 한번씩(1년에 4회)전국민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통계를 작성하는 것이지만 대회전국을 조사한다는 것은 인적,경제적인 면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여 전국추계합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다목적 표본설계를 한결과 선생님택의 마을이 표본조사구로 선정되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5) 상대방과 논쟁 또는 조사와 관계없는 정치(정책,정견),종교,상담 그리고 쓸데 없는 사담(특히 이성간에)등을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16) 가급적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조사가 끝나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방문

통계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방문이라 함은 실시조사기간중을 의미하며 처음 방문하였던 일자만이 아니다.

과거에 일부 통계조사원은 재방문한다고 동일한 1일중에 수회 재방문하고 동가구에 대하여 「조사불능」이라 기재하여 제출한 예가 허다하였다.

- (1) 선출한 응답적격자가 외출중이고 불적격자만이 있을 때
- (2) 관, 혼, 상, 제로 매우 분주할 때
- (3) 응답적격자가 신병중이거나, 취해 있거나, 또는 수면중일 때
- (4) 농번기인 경우 가구원전원이 야외에 나가있을 때
- (5) 기타 조사대상가구의 가정적인 분위기로 보아 질의하기 곤란할 때

6. 응답자의 신중한 선택

아무리 유능한 통계조사원이라도 응답자가 진실한 응답을 하여 주지 않으면 정확한 조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의 통계조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두텁지 못한 여건하에서는 충실한 응답을 기대하기가 매우 힘들므로 통계조사원은 이 점을 특히 명심하여 대상가구내의 응답적격자 선택에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1) 응답적격자는 반드시 가구주 또는 호주가 아니라도 좋으며 그 가구내에서 본 조사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가구원이면 된다.

(2) 그러므로 호주 또는 가구주가 고령이거나 또는 병고 등일 경우는 구태여 가구주나 호주를 응답적격자로 선정할 필요는 없다.

(3) 본 조사의 대상가구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질의할 때에는 되도록 선정된 응답적격자에게 할 수 있도록 준비조사시에 방문일자를 알려두도록 한다.

7. 조사서류기입상의 주의

(1) 조사표를 기입할때 질문에 대한 답은 즉석에서 기입하여야 하며 조사서류의 기입은 정확하게 정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2) 조사항목의 기입은 한글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하며 수자를 기입할 때는 반드시 「1, 2, 3.....」와 같은 「아라비아」수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3) 전조사표는 흑·청색 잉크나 볼펜으로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인구동태 조사표는 난외사항만을 잉크 또는 볼펜으로 기입하고 조사사항은 연필로 명백하게 정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4) 정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두줄(=)을 그어 새로히 깨끗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5) 조사표 해당사항에 「○」으로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문자와 수자에 「○」을 그려야 한다.

예 3 학생

(6) 조사상 의문을 해석하기에 곤란할 때는 절대로 독단으로 처리하지 말고 인접지역 정규직 통계조사원의 지시를 받거나 이 뜻을 비교난에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7) 여러분은 표본가구의 내용을 잘 안다고 하여 응답자를 만나지 않고 임의로 조사표를 기입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8) 응답자가 잘 알지 못하여 답변을 할 수 없을 때는 「미상」이라고 기입하고 답변(부분적)을 하지 않을 경우 「회피」라 기입한다.

조사표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각난 또는 난외기재사항등 틀림이 있나 없나를 재확인한다.

8. 정규직 통계조사원의 임무와 책임

정규직 통계조사원의 임무와 책임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훈령 제 51호의 「통계조사원 복무규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나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재강조하는 것이다.

가. 정규직 통계조사원은 인접 조사구내의 임시직 통계조사원의 주소, 조사구내의 대상가구 통계조사원 활동일정 통계조사원의 사고유무 등에 관하여 항상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나. 임시직 통계조사원의 각종사고로 조사가 지연 또는 불능시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정규직 통계조사원 자신이 조사를 실시하여 그 이상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임시직 통계조사원의 경질 또는 조사구 교체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조사상의 훈련을 시킨 후에 직접 당해 조사구를 안내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라. 임시직 통계조사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고받아 중앙에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과거 중앙에서 각종업무를 통계조사원에 지시하면 주소불명으로 허다히 반송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임시직 통계조사원이 조사상 애로가 있거나 잘 모르는 점에 대하여 정규직 통계조사원에게 서던질의 또는 실사지도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정확하고 충분한 응답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정규직 통계조사원자신도 애매하거나 이해가 가지않는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절대로 임의 또는 독단적인 해석을 내리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중앙으로 질의하고 중앙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주요통계 조사일람

주요 통계 조사 일람

사업명	조사목적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단위	주요조사항목	소요조사원수
1. 광공업동태조사	가. 생산지수 및 각종 광공업지수 편제 나. 종업원급출근일수 및 평균급여액 통계작성 다. 주요품목의 월별생산량 통계작성	매월 6~19일 (14일간)	타계식 면접조사	광업, 제조업 및 전기업	가. 생산량 출하량 및 재고액 나. 원재료 수입량 다. 종업원수 및 급여액 라. 월평균가격 (광공업 생산자 판매가격)	통계조사원 177명 통계보조원 29명
2. 경제활동인구조조사	가. 취업과 실업을 파악하여 고용정책 수립	3, 6, 9월 12월 (21~30일)	타계식 면접조사	전국에서 약 9,700 가구내의 14세 이상 인구	가. 경제활동 인구수 파악 나. 취업 및 실업 다. 산업 및 직업	통계조사원 119명
3. 도매물가조사	가. 물가수준 변동추정 나. 상품수급동향 파악 다. 경기동향 파악	5.15~16 (월 3회)	타계식 면접조사	10 대도시의 1,000 개사업체에서 총거래액이 1/10,000 이상의 비중을 가진 473 개 품목	품목별 도매가격	통계조사원 18명

사업명	조사 목적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단위	주요조사항목	소요조사원 수
4. 소매 물가조 사	가.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용 역임료의 등락을 파 악 나. 소비자 물가지수 편제	5.15~ 16 25일 (월 3회)	타계식 면접조 사	전국에서 약 4,600 소매점포에 서 300개 품목	가. 식료품 비 및 주 거비 나. 광열비 및 피복 비 다. 잡비 및 기타	통계조사원 58명
5. 도시 가계조 사	가. 국민소비 생활실태 및 생활수준의 변동상황파 악 나. 국민소득 추계자료 다. 구제사업 임금기준의 결정 라. 소비자물 가지수 편제 를 위한 가 중치 자료 제공	가. 식료 품비조 사 1~30일 나. 식료 품비이 외의 조사 월 3회 다. 면접 조사 분기1회 1~10일	자계식 및 타 계식 방법혼 용	전국 32개 시에서 약 1,800가구	가. 수입 및 지출 나. 가구구성 및 변동 다. 방 세 라. 가계저축	통계조사원 46명

사업명	조사 목적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 단위	주요조사항목	소요조사 원 수
6. 도 . 소매업 동태조 사	가. 유통경로 에서의 구 입, 판매 및 재고액을 파악하여 경기변동 측정 나. 도 . 소매 액지수 작 성	1~6 일 (매월)	타계 - 면접조 사	서울 도.소 매업 약 1,500 점포	가. 월중 판매액 나. 외상매 출액 다. 월중 구입액 라. 월말 재고액	통계조사원 40 명

사 업 별

사 업 명	1 / 4 분 기						2 / 4 분 기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1. 광공업 동태조사			6~19		6~19		↔		↔		↔		
			시험조사		시험조사								
2. 경제활동인구조사						2~30						↔	
3. 도매물가 조사	5	15~16	25	↔	↔	↔	↔	↔	↔	↔	↔	↔	↔
4. 소매물가 조사	5	15~16	25	↔	↔	↔	↔	↔	↔	↔	↔	↔	↔
5. 도시가계 조사	면접조사 10	10	10	10	10	10	10	↔	↔	↔	↔	↔	↔
	기정조사												
6. 도.소매업동태조사	1~6			↔		↔		↔		↔		↔	

4. 광공업 동태 조사

차 례

제 1 장 조사의 개요	45
1. 조사목적	45
2. 조사의 종류 및 조사표	45
3. 조사기준일자 및 기준기간	46
4. 조사대상 및 범위	46
5. 조사방법	46
6. 유고사업체의 처리요령	47
7. 신규 대상사업체의 색출요령	49
8. 조사원의 임무	50
9. 조사표기입상의 유의사항	51
제 2 장 광공업동태조사 : 물량조사	53
제 3 장 광공업동태조사 : 금액조사 및 의약품조사	62
제 4 장 전기업동태조사	65
제 5 장 광공업 생산자 판매가격조사	66

부 표

I . 광공업동태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69
II . 광공업 생산자 판매가격조사 지정품목 일람표	81
III . 금액조사를 실시하는 산업	95

제 1 장 조사의 개요

1. 조사목적

이 조사는

- 가. 산업생산지수를 비롯한 각종 광공업에 관한 지수를 편제키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 나. 광공업 사업체의 고용 및 급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며
- 다. 중요품목에 대한 월별 생산량통계를 작성하고자 실시한다.

2. 조사의 종류 및 조사표

당원의 광공업동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사로 구분된다.
가. 광공업동태조사

이 조사는 지정된 광공업 사업체의 제품중 매월 지정된 품목에 대한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등의 물량을 조사 파악하는 물량 조사와 생산액, 출하액, 재고액등 금액으로 접근하는 금액조사로 나누어 진다.

금액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1) 산업중분류 "13 토사석채굴업(土砂石採掘業)"
- (2) 산업중분류 "24 화, 의류 및 장신품제조업(靴, 衣類 및 裝身品製造業)"
- (3) 산업세분류 "2031 도정업(搗精業)"
- (4) 산업세분류 "3150 의약품제조업(醫藥品製造業)"

물량조사는 조사표(I-A)를 사용하며 상기 (1)(2) 및 (3)의 조사는 조사표(II-A)를 사용하고, (4)의 조사는 조사표(II-B)를 사용한다.

금액조사 대상사업체라 하더라도 물량조사의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사표(I-A)도 함께 작성하되 "고용 및 급여"는

중복기입하여서는 안된다.

나 . 전기업동태조사

전기업부문의 발전동태를 파악하고자 매월 전기업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조사표 (I - B) 를 사용한다.

다 . 광공업 생산자판매가격조사

광공업생산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정품목의 품질규격에 대한 생산자판매 가격을 조사하며 조사표 (III) 을 사용한다.

3 . 조사기준일자 및 기준기간

조사의 기준일자는 매월말이며 조사기준기간은 그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간으로 한다.

4 . 조사대상 및 범위

이 조사의 산업상의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제조업 및 전기업이며 조사대상 사업체는 종업원 5인이상의 전기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중 당원이 지정한 사업체만을 조사한다.

각 조사원이 담당할 조사대상 사업체는 각 조사구별 명부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사의 종류도 명시되어 있음.

" 물 (物) "물량조사

" 금 (金) "금액조사 , " 의 (医) " 표시는 의약품 조사 대상
사업체임

" 가 (價) "생산자판매 가격조사

5 . 조사방법

면접식 타계주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원의 배치가 어려운 도서 (島嶼)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는 우편 조사한다.

6. 유고사업체의 처리요령

유고사업체라 함은 응답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전업 및 명칭변경의 사업체를 말하며 각자가 담당하는 사업체중에서 위와같은 유고사업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 응답을 거절하는 사업체

응답을 거절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업체명, 거절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을 별도 배포된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I-1)에 기재하여 조사통계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른 지시가 있을때 까지 계속하여 사업주에게 협조를 종용하여야 한다.

나. 휴업사업체 (休業事業體)

조사대상사업체가 휴업인 경우에도 매월 그 사업체를 방문하여 재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표에는 미해고된 잔류종업원수, 재고, 재고품의 출하등에 관하여 기입하고 적오란에 "휴업중"이라 명기하여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가동하였을 때는 정상적인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폐업사업체 (廢業事業體)

조사대상사업체가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체명칭, 폐업일자, 폐업이유와 기타 참고자료를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I-1)에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폐업한 달의 조사표는 적오란(摘要欄)에 "폐업"이라 명기하여 제출하되 그 후에는 조사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매월 그 사업체가 위치했던 곳을 순회하여 새로운 사업체의 신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체가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신규사업체색출 요령에 의거 색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전사업체 (移轉事業體)

(1) 조사대상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웃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는등 최선의 방법에 의하여 그 이전지를 찾아내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 이전된 곳이 담당조사구내인 경우에는 계속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적요란에 "이전"이라고 명기하고 이전된 곳의 소재지,전화번호등 제 변경사항을 기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자기가 담당하는 조사구외로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그달에 한하여 조사표 적요란에 "이전"이라 기입하여 제출하되 별도로 사업체명,이전전 소재지,이전후 소재지,신구전화번호 및 기타 참고사항을 "유고사업체보고서식(I - 2)"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상사업체가 회계처리상의 이유로 말미암아 타조사구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본사 또는 사업장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등을 "유고사업체보고서식(I - 2)"에 기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매월 이전된 사업체의 전소재지를 순회하여 새로운 사업체의 신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체가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신규사업체 색출보고요령에 의거하여 색출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소재불명사업체 (所在不明事業體)

조사대상사업체의 소재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이웃에 문의하는 등 "최선의 방법으로 소재지를 찾도록 노력하고 그 래도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유고사업체보고서식(I - 1)에 기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바 .전업사업체 (轉業事業體)

조사대상사업체가 전업하여 지정된 조사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지정된 조사대상산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달에 한하여 조사표의 적요란에 "전업"이라 명기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유고사업체보고서식(I - 2)"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명칭변경사업체 (名称變更事業體)

조사대상사업체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표의 적요란에 "명칭변경이라 기입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변경전명칭, 변경후명칭 및 변경일자 등을 "유고사업체보고서식(I - 2)"에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신규대상사업체의 색출요령

광공업동태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신규사업체를 색출보고하여야 한다.

가. 색출대상사업체 (索出對象事業體)

(1) 광공업통계조사(연간조사)에서 조사누락되었거나 그후 신설된 사업체로서 조사대상지정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및 "토사석채굴업" "화, 의류 및 장신품제조업" 사업체

(2) 광공업통계조사(연간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사업체중 전업하여 조사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지정된 조사대상산업("토사석채굴업" 및 "화, 의류 및 장신품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체

나. 색출보고요령

현지조사에서 색출하거나 또는 시·군 행정기관에 비치된 제자료에 의하여 색출하여 소정의 "광공업동태조사 신규사업체색출보고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예비실사

신규로 색출된 사업체에 대하여 예비실사지시를 받은 조사원

은 3일이내에 해당사업체의 예비실사를 완료하고 소정의 "광공업 동태조사 신규사업체 예비실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추가대상사업체

조사원은 추가대상사업체 실사지시를 받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업체를 사업체명부에 추가하고 매월 조사를 실시한다.

8. 조사원의 임무

광공업동태조사가 잘되고 안됨은 조사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각 조사원의 노력과 조사에 대한 이해 여하에 달려 있다.

이 광공업동태조사는 여타의 조사와는 달리 조사대상사업체가 광범하게 분산되어 있어 1개조사구가 포괄하는 지역이 광범하기 때문에 각 조사원의 보다 열의있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또한 광공업부문의 성장이 급격하고 그 조사의 결과가 극히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본 조사의 중요성과 사용되는 계 개념을 명백히 인식하고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가. 광공업동태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조사구내의 지정사업체를 순방하여 각종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토록 할 것이며 응답자의 부재등 계 사유로 인하여 조사표를 작성치 못하였거나 조사표기입상에 잘못이 발견된 사업체는 10일~15일까지 사이에 재방문하여 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토록 한다.

나. 조사원은 별도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다음 조사를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하며 이 조사기록부와 기타 사항을 참고로 하여 조사의 누락이나 오기 또는 잘못된 조사가 없이 조사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다. 조사원이 매 실사월의 조사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조사표가 작성 완료되는 대로 5매 내지 10매씩 분할하여 제출하되 늦어도 그달의 20일까지는 담당조사표 전부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도착토록 하여야 한다.

라. 조사원은 당해조사구내에 새로 설립된 신규사업체를 색출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마. 조사원은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타에 누설시켜서는 안된다.

바. 조사원은 항상 응답자와의 원활하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여 응답자의 신뢰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9. 조사표 기입상의 유의사항

조사원은 조사표의 기입에 앞서 조사항목의 정의 및 검토요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각 칸에 맞도록, 깨끗이 작성한다.

나.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숫자이외는 가급적 한자의 정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각 수량에 있어 단위미만과 금액에 있어 천원미만은 사사오입하여야 한다.

마. 품목명 및 품목번호는 "지정품목 분류표"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바. 단위는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위할 때는 지정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사. 오기사항을 정정코자 할 때는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올바른 것을 기입하되 적색 또는 주색(朱色)인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즉 오기된 것을 지우고 새로운 것을 기입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오기된 것에는 횡선을 그어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기입한다.

아. 조사표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측석에서의 기입이 곤란하거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엔 응답자에게 기입을 의뢰하여도 좋다.

단, 응답자에게 기입을 의뢰할 때는 조사항목에 대한 정의를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 ※표가 있는 난은 기입하지 않는다.

차. 생산량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요인을 반드시 조사표의 "적요"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2 장 광공업동태조사 : 물량조사 (I - A)

1. 제 품

가. 제품은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원재료 또는 구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하였거나 타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나. 조사표에 기입할 품목은 그 사업체의 제품중에서 "지정품목 분류표" (부표 I) 에 게재되어 있는 품목에 한한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원재료를 사용하여 일단계의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사용된 중간제품이 "지정품목 분류표"에 있을 경우에 제품으로 간주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표에 품목을 기입하기 전에 이 품목 분류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사업체의 제품중에서 어느 것이 조사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체의 제품이 "품목분류표"의 어느품목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때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기입한다.

다. 품목번호 및 품목명

"품목번호"란에는 "지정품목 분류표"의 좌측에 있는 숫자를 기입한다. 품목명은 조사표에 기입할 제품명으로서 "지정품목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하며 만일 제품이 품 분류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 할 때는 그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입하되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세분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 × "합성수지 (合成樹脂)" → ○ "요소수지 (尿素樹脂)"

× "양은식기 (洋銀食器)" → ○ "알루미늄프레스식기 (食器)"

× "가구류 (家具類)" → ○ "장농"

라. 규격 및 단위

각 품목의 규격은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품목의 규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러나 동일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여러가지 규격품을 단일규격으로 환산 가능할 때는 단일규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각 품목의 단위는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며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위할 때는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만약 제품명을 "지정품목 분류표"에서 찾지 못하여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수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하여야 한다.

마. 월초재고량 (전월말재고)

그달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였던 제품의 재고량 즉 전월에서 이월된 재고량을 말한다. 따라서 전월에 조사 보고된 조사표상의 월말재고량과 금월의 월초재고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그 사업체에서 수탁가공한 제품과 이미 판매되었으나 미출고된 제품의 재고량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보아서는 안된다.

바. 월중생산량

그달의 초일에서 말일까지의 1개월간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것과 타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한 제품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체에서 일단계의 생산을 하고 이 1차생산품을 중간재로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할때 이 중간 제품도 "지정품목 분류표"에 있는 것에 한하여 생산품으로 간주하고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예 : 어떤 방직공장에서 면사 1,000 Kg을 생산하여 그중 500Kg을 판매하고 나머지 500 Kg을 가지고 다시 600 m'의 광목을 생산하였다면 이 사업체의 생산량은 면사 1,000 Kg 광목 600 m'으로 기입되어야 한다.

사. 자가소비량

그달중에 그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소비한 양을 말한다.

위의 예에서 광목생산을 위하여 소비한 500 Kg의 면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위탁생산을 위하여 타사업체에 반출된 중간제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 출하량 (판매량등)

사업체의 생산제품중에서 조사기준월간에

- (1) 외부에 판매한 것 (외상판매 포함)
- (2) 동일기업체내에서 타사업체에 반출된 것
- (3) 견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
- (4) 그 사업체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한 것
- (5) 수출한 것

의 합계량을 말한다.

자. 과부족보정량

그 월간에 화재, 도난 등의 재난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양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중 반송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량도 이에

포함된다.

증감은 「+」 「-」의 부호로 표시하며 적요란에 반드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차. 월말재고량

그달의 말일에 그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량을 말한다. 수탁가공한 제품과 이미 판매되었으나 미출고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당월말재고량 = 익월초재고량

2. 원재료

원재료라 함은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주원료와 부분품, 부속품, 용기등과 같은 보조원료를 말한다.

자기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 제조시킨 경우의 원재료는 포함시켜야 하나 타사업체로 부터 수탁생산을 맡은 경우에 타사업체로 부터 지급된 원재료는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가. 품목, 원재료명

원재료에 대하여는 지정품목 분류표가 없으므로 그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한 주요원재료에 대하여 기입하되 원재료명은 가능한 한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재료의 종류가 많아서 조사표 1매에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2매이상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나. 규격 및 단위

원재료에 대하여는 규격 및 단위가 지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규격은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규격을 기입하고 수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한다.

다. 월초재고량 (전월말재고량)

그달의 초일에 그 사업체에서 보유하였던 원재료량을 말하며 전월말의 재고량과 같아야 한다.

전월말재고량 = 금월초재고량

라. 수입량 (受入量)

수입량은 구입량 (購入量) 과 자가생산량 (自家生産量) 으로 구분된다.

구입량이란 그달중에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외부로 부터 현금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 양을 말하며 동일기업의 타사업체로 부터의 반입량도 여기에 포함된다.

자가생산량이라 함은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중간제품으로서 그것이 다시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된 양을 말한다.

마. 사용량

광산품 및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그 월간에 실제로 사용된 원재료량을 말하며 위탁생산을 위하여 타사업체에 공급한 양도 포함한다.

바. 과부족보정량 (過不足補正量)

"제품"에서의 "과부족보정량"에 준하며 또한 구입한 원재료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도 「-」부호를 붙여서 기입하고 적요란에 "판매"라고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사. 월말재고량

"제품"에서의 "월말재고량"에 준한다.

3. 고용 및 급여

가. 상용종업원

일정한 산정기준에 의하여 임금이나 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그 사업체에 상시 고용된 자로서 그달중 조업일수의 반수이상(1개월 작업가능 평균일수별 26일로 간주하여 14일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임금이나 급여를 받을지라도 사고로 인하여 그달에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장기결근자, 군복무자 등은 제외되며 임시로 고용된 자(소위 임시직원)일지라도 그달에 통산하여 14일 이상을 그 사업체에 근무한 자는 상용종업원에 포함된다.

상용종업원은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생산종업원

제품 또는 광산물의 생산에 직접 관련있는 현장종업원 또는 보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보조원을 말한다.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노동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등은 생산종업원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 제조업의 경우

제조(製造), 가공(加工), 검사(檢査), 검량(檢量), 입하(入荷), 저장(貯藏), 조작(操作), 포장(包裝), 입고(入庫), 출하(出荷), 보수(補修) 등의 업무와 보조적인 생산품의 생산업무 생산공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생산종업원이다.

(나) 광업의 경우

채광(採鉞), 굴진(掘進), 갱내지주(坑內支柱), 권양(捲揚), 환기(換氣), 배수(排水), 천공(穿孔), 발파(發破), 분쇄

(粉碎), 선광(選鉱), 검사(檢査), 저장(貯藏), 출하(出荷), 보전(保全) 등의 업무와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무 및 기타종업원

생산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상용종업원으로서 생산작업에 직접 관련하지 않고 후선에서 기술적, 전문적 그리고 서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즉 인사, 기획, 경리, 선전, 판매, 배달등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 종업원을 말한다. 그리고 위의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사도 이에 포함되며 보수를 받는 지배인, 중역등도 이에 포함된다.

나. 임시종업원

그 사업체에 고용된 자 중에서 일용종업원으로서 그달중의 조업일수의 반수이하(1개월의 작업가능 평균일수를 26일로 간주하여 13일)를 근무한 자를 말하며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종업원의 구별없이 전부 여기에 포함된다.

다. 월말종업원수

그달의 말일 현재로 그 사업체의 종업원수를 말하며 만약 월말 현재로 조사가 곤란할 때에는 그달 말일에 가장 가까운 급여계산일을 기준한 종업원수를 기입하여도 무방하다.

라. 월중연근무인원수(月中延勤務人員數)

그달중에 실제로 근무한 종업원의 연인원수, 다시 말하면 일별근무인원의 월중누계를 말한다.

예: 월중조업일수를 26일이라 하고 처음 10일간에 15명씩 그리고 다음 6일간에 20명씩 나머지 10일간에 25명씩 근무

하였다면 월중연근무인원수는

$$15 \text{ 명} \times 10 \text{ 일} + 20 \text{ 명} \times 6 \text{ 일} + 25 \text{ 명} \times 10 \text{ 일} = 520 \text{ 명}$$

마 . 급여액

정기 부정기 막론하고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된 현금 및 현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봉급, 임금, 상여금, 각종수당, 생계보조금등을 포함한다.

장기결근자, 군복무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퇴직위로금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급여액은 세금, 저금, 노동조합비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서 사업체에서 부담한 총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 . 조업일수

그 사업체가 월중에 실제로 생산활동을 영위한 일수를 말한다. 1일 24시간을 교대로 작업을 계속하였어도 조업일수는 1일로 계산한다.

5 . 조사표의 검토

조사표를 작성한 후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가 . 조사기준월 (년 월분), 조사구번호, 산업분류번호등의 기입 누락여부

나 . 제품의 단위에 있어서 " 지정품목 분류표 " 에 지정된 수량단위의 사용여부

다 . 품목명 및 품목번호가 " 지정품목 분류표 " 에 지정된 대로의 기입여부

라 . 월중의 생산량과 사용원재료량과의 합리성여부

마 . 전월말재고 (이미 제출된 조사표에 기재된 것) 와 금월초재고의 일치여부

바 . 월초재고량 + 월중생산량 - 자가사용량 - 출하산 과부족보정량 = 월말재고량의 성립여부

사 . 원재료에 대한 단위가 "미터법"에 의하여 기입되었는지의 여부

아 . 원재료 월초재고량 + 월중수입량 - 월중사용량 ± 과부족보정량 = 월말재고량의 성립여부

자 . 조사된 수치의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차 . 기타 기입사항의 오기 또는 누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 3 장 광공업 동태 조사 : 금액 조사 및 의약품조사

(II - A) , (II - B)

1 . 제 품

가 . 완제품

구입원재료 또는 자가생산원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한 최종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 생산한 제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조공정상에서 생긴 부산물이나 폐품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의 "기타"에 포함된다.

의약품 제조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표 (II - B) 에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나 . 수탁제조 또는 수리수입액

수탁 제조수입액은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로 부터 공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하여 주고 그달중에 기성고분에 대하여 받은 수입액 (미수금포함) 을 말한다.

그리고 수리수입액이라 함은 타인의 소유물을 수리하여 주고 받은 수입액 (미수금포함) 을 말한다.

다 . 기 타

제조공정상에서 생기는 부산물, 설 (屑) 및 폐품등을 말한다.

예 : 면방직공장에서 광목을 방직하는 경우에 생기는 면설 (縮屑) , 사설 (糸屑) 등

라 . 월초제품재고액 (전월말제품 재고액)

그달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완제품 및 기타 부산물, 폐품등의 재고액을 말하며 평가는 장부가격 또는 생산원가에 의한다.

단, 장부가격이 없거나 원가의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의 미출고분은 재고로 보지 않으며 또한 위탁생산한 제품은 위탁사업체의 재고액에서 제외된다.

월초재고액 = 전월말재고액

마. 출하액

그 사업체가 직접 생산하였거나 위탁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한 그달중의 판매액을 말하며 위탁판매 및 의상판매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동일기업체내의 타사업체에 반출한 것, 견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 그 사업체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사용한 것 및 수출한 것 등을 포함한다.

반면에 구입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재판매하였거나 위탁생산한 제품의 판매는 그 사업체의 출하로 보지 않는다.

출하제품의 평가는 공장인도(광산은 최근역도(最近駅渡)) 판매가격에 의하며 물품세 부과대상품인 경우에는 동세금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한다.

수출한 제품으로서 외화로 판매한 것은 계약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평가하여야 한다.

바. 월말재고액

사업체가 그달의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완제품 및 기타의 재고액을 말하며 평가는 장부가격 또는 생산원가에 의한다. 생산원가에 의한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장부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2. 고용 및 급여

제 2 장 3 항 "고용 및 급여"에 준한다(P. 58 참조)

3. 조사표의 검토

조사표작성을 완료한 후 조사원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가. 조사기준월 (년 월분) 조사구번호 및 산업분류번호의 기입 누락여부

나. 전월말재고액과 금월초재고액의 일치여부

다. 조사된 수치의 변동을 검토하고 증감이 심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적요"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기타 기재사항의 옳기 또는 누락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 4 장 전 기업 동태 조사 : (I - B)

1 . 발전량

가 . 총 발전량

그달중에 발전 (發電) 한 발전총량을 말한다.

나 . 자가소비전력량

각 발전소가 그달중의 발전을 위하여 소비한 전력량을 의미하며 본사 , 지점 및 각 영업소의 소비전력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 순발전량

총발전량에서 자가소비전력량을 차감한 전력량을 말한다.

2 . 종합손실전력량

각 단계의 송전 및 배전과정에서 생기는 전력량의 총계를 말한다.

3 . 수요전력량

그달중에 판매한 수용부문별 전력량을 의미한다. 가정용은 일반가정에 공급한 전력량이며 산업용은 농림수산업 , 광업 , 제조업 및 기타 산업 (서비스등) 별로 공급한 전력량을 말하며 기타는 관 , 국군 , UN군 , 사업자용 (한전사업소등) 등에 공급한 전력량을 말한다.

4 . 고용 및 급여

제 2 장 3 항의 " 고용 및 급여 " 에 준한다 (P.58 참조)

제 5 장 광공업 생산자 판매가격 조사 : (Ⅲ)

1. 조사대상품목 및 사업체

"광공업생산자 판매가격조사 지정품목 일람표"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그리고 조사대상사업체 및 사업체별로 조사하여야 할 품목은 별책 "사업체별 조사대상 품목표"에 지정되어 있다.

2. 품목번호 및 품목명

품목번호와 품목명은 별책 "사업체별 조사품목표" 및 "가격조사 지정품목 일람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3. 품질규격 및 단위

"사업체별 조사품목표" 및 "가격조사 지정품목일람표"에 지정된 품질규격 및 단위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품질규격 및 수량, 단위를 기입한다.

4. 판매가격

판매가격은 공장인도가격(광산은 최근역도가격)으로서 용기 포장을 요하는 품목은 그 비용을 포함하고 물품세 또는 유류세의 부과대상품목인 것은 동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5. 평균가격의 계산방법

가격은 그달의 월중 평균 판매가격, 즉 일별 판매가격의 월평균가격으로 한다. 수출품목일 때는 F.O.B. 가격으로 하되 조사표상의 원화 표시를 지우고 미불(美弗)로 기입하여야 한다.

6. 조사표 작성상의 유의사항

가. 조사기준월(년 월분) 조사구 및 산업분류(지정품목 일람표 참조) 등의 기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 이 조사는 지정된 품질 및 규격에 의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품질 및 규격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 다 . 지정된 수량단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 라 . 수출품일 때는 미불가격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 마 . 조사표상 전월 가격란에 기입된 가격은 전월에 보고된 가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바 . 전월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의 등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적요란"에 밝혀야 한다.

부 표 I

광 공업 동 태 조 사

지 정 품 목 분 류 표

부표 I . 광공업동태조사

지 정 품 목 분 류 표

(1) 이 분류표에는 조사대상이 되는 품목을 산업중분류별로 게재하고 있다.

(2) 그 사업체가 소속하는 산업중분류의 대상품목 전부를 검토하여 그 사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 해당되는 품목을 골라야 한다.

(3) 그 사업체의 주요제품을 이 분류표에서 발견하지 못하거나 (중전과는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음) 또는 이 분류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대로) 기입하되 그 명칭은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예: 가정용전기세탁기라 기입하는 것은 좋으나 이를 가정용전기기계와 같이 기입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

(4) 두개이상의 품목을 한칸에 결합하여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예: 간장과 된장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이들을 각각 딴 칸에 기입한다 「간장 및 된장」이라 하여 한칸에 기입하면 안된다)

(5) 이 분류표의 단위란에 사용된 약호는 다음과 같다.

g : 그램 (gram) m' : 평방미터 (가로와세로가 각 1m인 넓이)

Kg : 킬로그램 (=1,000 g) m³ : 입방미터 (가로, 세로, 높이가 각

M/T: 매트릭톤 (=1,000kg) 1m인 부피)

S/T: 쇼트톤 (= 907 kg) S/F: 스퀘어피트 (square feet)

L/T: 롱톤 (=1,016kg) L : 리터 (liter)

HP : 마 력 Kl : 킬로리터 (= 1,000 l)

m : 미 터 (meter) G/A: 개 룬 (gallon)

광공업동태조사지정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지정 품 목 명	단위	품목번호	지 정 품 목 명	단위
	11. 석 탄 광 업		199001	납 석	M/T
111001	무 연 탄	M/T	199002	석 회 암	"
	12. 금 속 광 업			20. 식료품제조업	
121001	적 철 광 석	M/T	201001	분 유 및 연 유	kg
121002	자 철 광 석	"	202201	냉 동 해 산 물	"
129101	흑 중 석 광 석	S/T	202202	어 및 해 산 물 통 조 립	"
129102	회 중 석 광 석	"	202203	조 미 오 징 어	"
129201	망 강 광 석	M/T	203101	도정료 (금액조사)	천 원
129301	금 광석 (사금포함)	g	203201	밀 가 루	대 (22kg)
129302	은 광 석	g	204101	식 빵	kg
129401	동 광 석	M/T	204201	비 스 키 트	"
129501	연 광 석	"	204202	건 빵	"
129502	아 연 광 석	"	205001	정 당	"
129901	금 속 창 연	kg	206001	사 탕 (초컬리트, 드롭보스) 과자류 (케러멜 등 일체포함)	"
129902	모 리 부 데 늬 광	"	206002	껌	"
	13. 토사석 채굴업 (금액조사)		207101	간 장	KL
	19. 비 금 속 광 업		207102	된 장	kg
191101	인 상 흑 연	M/T	207103	고 추 장	"
191102	토 상 흑 연	"	207901	미 소 (구루타민산소오다를) 주성분으로 한 것	"
191201	고 령 토	"	207902	인공감미료 (삭카린) 두루전 등	"
191301	활 석 광 석	"	208001	인 조 빙	M/T
191401	형 석 광 석	"	209201	전 분	kg

품목번호	지정 품 목 명	단 위	품목번호	지 정 품 목 명	단 위
209501	엿 (물 엿 포 함)	kg	231104	혼 방 화 학 섬 유 사	kg
209502	포 도 당	〃	231105	비 스 코 스 인 건 사	〃
209601	한 천	〃	231201	순 소 모 사	〃
209901	마 아 가 린	〃	231202	혼 방 소 모 사	〃
209902	이 스 트	〃	231203	순 방 모 사	〃
209905	사 료	〃	231301	아 마 사	〃
	21. 음료품제 조업		231401	생 사	〃
			231402	건 방 사	〃
211101	소 주	Kl	231501	각 종 화 학 섬 유 연 사	〃
211301	주 정	〃	231502	어 망 사	〃
212101	탁 주	〃	232101	광 목	m ²
212201	청 주 (합 성 청 주 포 함)	〃	232102	당 목	〃
212301	맥 주	〃	232103	포 플 린	〃
214001	누 룩 (麵 子)	kg	232104	면 (능 직) 복 지	〃
214002	맥 아	〃	232105	용	〃
215001	사 이 다	Kl	232201	순 본 건 직 물	〃
215002	콜 라	〃	232202	인 건 직 물	〃
	22. 연 초 제 조 업		232203	건 혼 방 직 물	〃
			232204	순 화 학 섬 유 직 물	〃
220001	휠 타 부 권 연	천본	232205	화 섬 혼 방 직 물	〃
220002	휠 타 없 는 권 연	〃	232301	순 소 모 직 물	〃
220003	각 연	M/T	232302	순 방 모 직 물	〃
	23. 섬 유 제 조 업		232303	모 혼 방 직 물	〃
			234101	화 섬 사 양 말	천 주
231101	면 사 (면 혼 방 사 포 함)	kg	234302	메 리 아 쓰 외 의 (스 웨 터 포 함)	매
231102	합 성 섬 유 사	〃	234901	타 을	〃
231103	재 생 섬 유 사 (스프 사 포 함)	〃	235101	로 오 프	kg

품목번호	지정 품목명	단위	품목번호	지정 품목명	단위
235201	어 망	kg	271401	크 라 프 트 지	M/T
	24. 화류의복류 및 장 신품제조업(금액조사)		271501	박 엽 지	kg
	25. 체재업및목제품제조업		271502	권 련 지	"
251001	각 종 각 재	m ²	271601	판(백판지, 색판지, 마니) 지(라판지, 카이드판지포함)	M/T
251002	각 종 판 재	"	271602	골 판 지	"
252001	합 판	"	271801	루 평 지	kg
252002	하 드 보 오 드	"	271901	창 호 지	권 2,000매
	26. 가구및장치품제조업		272101	장 판 지	m ²
261001	장 농 (양복장, 찬창포함)	개	272103	아 트 지	kg
261002	경 대	"	272104	은 박 지	"
261003	책 상	"	272201	크 라 프 트 지대	개
261004	식 상	"	272301	골 판 지 상자 및 용기	"
261005	의 자	"		28. 인쇄, 출판및동류사업	
261006	침 대	"	281001	일 간 신 문	1,000부
261007	금속개 (철계옷장, 철계) 비네트(서류함등 포함)	"	281002	비 일 간 신 문	"
261008	금 고	"	282001	정기간행물 (잡지포함)	권
269101	장 지 문	"	282002	교 과 서 및 서 적	"
	27. 지류및지류제품제조업		284001	일반인쇄물(투입용지의양)	면
271201	신 문 용 지	M/T		29. 피혁 및 피혁제품제조업	
271301	백 상 지 (모조지)	"	291001	우 혁	m ²
271302	인 해 용 지	"	292101	공 업 용 혁 벨 트	m ² /ply
			292202	비 닐 제 트 링 크 류	개
			292203	금 속 제 트 링 크 류	"
			292205	현 드 백	"

품목번호	지정 품 목 명	단위	품목번호	지정 품 목 명	단위
30. 고무제품제조업			313301	글 리 세 린	kg
301001	자 동 차 용 타 이 어	본	314101	폐 인 트	ℓ
301002	자 동 차 용 튜 우 브	"	314102	와 니 스	"
301003	자 전 차 용 타 이 어	"	314103	에 나 멜 도 료	"
302001	고 무 신	족	314104	락카(섬유유도체도료일체)	"
302002	고 무 장 화 및 우 화	"	314301	염 료	kg
302003	운 동 화 (<small>훈련화 및 노동화포함</small>)	"	315001	신 경 계 용 약	(별 도금 조약 사접 표근 에으 의로 하조 여사 함)
303001	재 생 고 무	M/T	315002	해 열 진 통 제	
304001	재 생 타 이 어	본	315003	소 화 기 계 용 약	
305101	각 종 고 무 벨 트	m/ply	315004	비 타 민 제	
305901	고 무 호 스	m	315005	홀 몬 제	
309001	스 폰 지	m ²	315006	자 양 강 장 제	
31. 화학제품제조업			315007	혈 액 및 체 액 용 약	
311101	유 산 (황 산)	kg	315008	항 생 물 질 제	
311102	염 산	"	315009	외 피 용 약	
311103	가 성 소 오 다	"	316001	향 료	
311201	카 바 이 트	"	316002	화 장 수	"
311202	활 성 탄 소	"	316003	화 장 크 림	"
311301	호 루 마 링	"	316004	화 장 분 백 분	"
311401	압 축 산 소	본 (7m ³)	316005	두 발 유	"
311402	아 세 치 렌 깨 스	m ³	316006	연 치 약 및 치분	"
312101	요 소 비 료	M/T	319101	포 리 에 치 렌 사 섬유	"
312102	석 회 질 비 료	"	319201	살 충 제	"
312201	인 산 질 비 료	"	319202	살 균 제	"
313201	아 마 인 유 (亞 麻 仁 油)	KL	319301	화 장 비 누	"
			319302	세 탁 비 누	"
			319303	세 탁 용 분 말 비 누	"

품목번호	지정 품 목 명	단 위	품목번호	지 정 품 목 명	단 위
319401	다 이 나 마 이 트	kg	332203	유 리 약 병	개
319402	뇌 관	개	333101	도 자 식 기	〃
319403	도 화 선 (導火線)	m	333201	애 자	〃
319501	성 냥 (대 형)	상 자 1,000갑	334001	시 멘 트	M/T
319601	인 쇄 잉 크	kg	334002	백 시 멘 트	〃
319901	요 소 수 지	〃	335001	콘 크 리 트 벽돌	매
319902	P V C	〃	335002	콘 크 리 트 블로크	〃
319903	감 광 지 (感 光 紙)	상 자	335003	콘 크 리 트 기 와	〃
32.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321001	휘 발 유	Kl	335004	콘 크 리 트 관	본
321002	등 유	〃	335005	콘 크 리 트 전 주	〃
321003	경 유	〃	339101	소 석 회	M/T
321004	중 유	〃	339901	석 면 스 레 트	m ²
321005	방 카 C 유	〃	34. 제1차금속제조업		
321006	윤 활 유	〃	341101	선 철 (재 생 선 철 포 함)	M/T
322001	각 종 연 탄	M/T	341102	강 과	〃
322002	마 세 크 탄	〃	341103	강 반성품 (부름, 비릿트) (鋼半成品) 스텝, 쉬트바등	〃
322003	아 스 팔 트	〃	341201	봉강 (丸鋼), 철근 (鉄筋) (棒鋼) 각강 (角鋼) 평강 (平鋼) 반원강등 (半円鋼等)	〃
33. 토석 및 유리제품제조업					
341202			341202	형강 (山型鋼), I형강 (型鋼) (I型鋼), J형강등 (J型鋼)	〃
331101	벽 들 (燒 成 品)	매	341203	선 재 (線材) (와이어로드)	〃
331301	타 일	m ²	341204	강판 (鍍金하지 않은것) (鋼板) 厚板, 薄板 포함	〃
331401	내 화 벽 돌	M/T	341206	강 관	〃
332101	판 유 리	상 자	341301	주 철 관	〃
332201	유 리 식 기	개	341302	가 단 주 철 (可 鍛 鑄 鉄)	〃
332202	유 리 술 병	개			

품목번호	지정 품목명	단위	품목번호	지정 품목명	단위
341303	기계용주물	M/T	355102	알미늄프레스용기 (대야, 다라이 등)	kg
341401	흑철선	"	355202	스텐레스스틸제식기	"
341901	아연도철판(亜鉛鍍鉄板)	"	356101	철정	"
341902	석도철판(錫鍍鉄板)	"	356901	와이어로오프	"
342101	금괴	g	356902	철사망	"
342102	은괴	g	356903	용접봉	"
342103	전기동	kg	357001	볼트 및 너트	"
342104	연괴	"	357002	금속판이음쇠	"
342105	아연괴	"	359002	라이타개	"
342201	나동선	"		36. 기계제조업	
342202	동판 및 판	"	361001	공업용보이러	대
342301	알미늄판	"	361002	발동기	"
342302	알미늄(솔, 기물류 등, 주) 주물제늄(불제늄 일체 포함)	"	361003	디젤기관(선박, 차량용 제외)	"
	35. 금속제 품 제조업		362001	인력탈곡기	"
351001	석유관	개	362002	농력탈곡기	"
351002	드럼판	"	362003	분무기	"
352201	목공용수공구	"	362004	경운기	"
352202	공장용수공구	"	363001	송탄차(送炭車)	"
352301	농업용수공구(삽, 괭이, 낫, 쟁기 포함)	"	363002	권양기(捲揚機)	"
353002	석유스토부	"	364001	절삭공구(切削工具)	개
353003	연탄스토부	"	364002	선반(旋盤)	대
353004	방열기(라지에다)	"	364003	압연기(圧延機)	"
354001	철제수문 및 문	"	364004	압출기(押出機)	"
354002	건축용샷슈	"	364005	프레스기	"
355101	알미늄프레스가공식기(식기 제외)	kg	365001	해사기	"

품목번호	지정품목명	단위	품목번호	지정품목명	단위
365002	면 직 기	대	374001	고 무 절 연 전 선	kg
365003	견 직 기	"	374002	합 성 수 지 절 연 전 선	"
365004	환 편 직 기 (丸編織機)	"	374003	통 신 용 케 이 블	"
365005	횡 편 직 기 (橫編織機)	"	375001	백 열 전 구 (탕그스벤전구)	개
365006	직 물 염 색 기	"	375002	형 광 전 구	"
365007	종 광 (綜 綵)	개	375003	전 지 용 전 구	"
366101	정 미 기	대	376101	축 전 지	"
366102	정 맥 기	"	376201	건 전 지	"
366901	활 판 인 쇄 기	"	379901	소 키 트	"
366902	주 조 기	"			
366903	연 탄 재 조 기	"		3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367001	동 력 펌 프	"	381101	선 박 용 디 켈 기 관	대
367002	공기압축기(콤포레트샤)	"	381102	선 박 용 소 옥 기 관	"
368001	재 봉 틀	"	381201	철강화물선(화객선포함)	L/T
369003	발 브	개	381301	목 조 어 선	"
			382001	화 차	량
	37. 전기기계기구제조업		383101	버 스 (완 성 차)	대
371001	변 압 기	대	383102	마 이 크 로 버 스	"
371002	전 동 기	"	383103	승 용 차 (완 성 차)	"
371003	고 압 축 전 기	KVA	383104	트 력	"
371004	저 압 축 전 기	MF	383105	삼 분 화 물 차 (완 성 차)	"
371005	정 류 기 (整 流 機)	대	383201	자 동 차 샵 시	"
372001	선 풍 기 (扇 風 機)	"	383202	자 동 차 엔 진 (재 생 품 포 함)	"
373001	라 디 오 (트랜지스터포함)	"	383203	피 스 톤	조
373002	전 화 기	"	385101	자 전 차 (완 성 차)	대
373003	수 동 식 전 화 교 환 기	"	385102	자 전 차 링	개
373004	자 동 식 전 화 교 환 기	회 선			

품목번호	지정 품 목 명	단위	품목번호	지 정 품 목 명	단위
	39. 기타 제조업		399301	인 형	개
392201	안 경 데	개	399901	피 아 노 대	대
394001	프 라 스 탁 제 품	kg	399902	울 겐 "	"
395002	나전칠기제용기및 공예 품	개	399903	음 반 대	대
396001	연 필 (12본)	개	399904	시 계 개	개
396002	볼 팬	개	399905	필 타	kg
396003	만 년 필	"		5110. 전 기 업	
399102	포 제 우 산 및 양 산	"		(조사표(I-B)로 조사함)	
399201	정 돈 모 (整 豚 毛)	kg			

부 표 Ⅱ

광공업 생산자 판매 가격 조사

지 정 품 목 일 램 표

부표 II

광공업생산자 판매 가격조사지정 품목일람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11. 석 탄 광 업			
11-01	무 연 탄	M/T	분탄 5,300 ~ 5,600 cal
12. 금 속 광 업			
12-01	적 철 광 석	M/T	철함유량 57% 이상
12-02	자 철 광 석	"	철함유량 57% 이상
12-03	흑 중 석 광 석	S/T	함유량 70%
12-04	회 중 석 광 석	S/T	함유량 70%
12-05	망 간 광 석	M/T	함유량 40%
12-06	동 광 석	"	동함유량 6%
12-07	연 광 석	"	연함유량 66 ~ 67% 정광
12-08	아 연 광 석	"	아연함유량 46 ~ 47% 정광
12-09	금 속 창 연	"	99.99%
12-10	모리부데늄 광 석	"	90% 이상의 정광
13. 토 사 석 채 굴 업			
13-01	대 리 석	m ²	10.89재 (1재=1차 사방) 24mm 황룡
13-02	건 치 석	평	1척 X 1척 X 1.5척 36개
19. 비 금 속 광 업			
19-01	인 상 흑 연	M/T	FC 75~80% mesh-100
19-02	토 상 흑 연	"	FC 함유량 75%
19-03	고 령 토	"	S.K. 34번 Pink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 질 및 규 격
19-04	활 석 광 석	M/T	분말 백색도 90
19-05	형 석 광 석	"	과 CaF ₂ 80% 이상
19-06	납 석	"	S.K. 34 번 홍납석
19-07	석 회 석	"	탄산석회석 40~80% 함유
20. 식 료 품 제 조 업			
20-01	연 유 관		397 gr
20-02	명 동 새 우	20kg	상급품 (shell-on) 배 (count 당 1~15)
20-03	콩치보이루통조림	c/s	건 4호관 48관입 (堅 4号罐 48罐入)
20-04	조 미 오 정 어	10kg	상급품
20-05	쌀	가마니 (=60kg)	가마니당 도정료 (臥当 搗精料)
20-06	밀 가 루	대 (=22kg)	2 등품 계분율 77%
20-07	식 빵	3.75kg	상급품
20-08	비 스 키 트	3.75kg	상급품
20-09	정 당	30kg (=50근)	정백당
20-10	겉	20 갑	개당 3gr 갑당 (匣当) 5개
20-11	간 창	180 l	중급품
20-12	된 장	3.75kg	2 등품
20-13	구루타민산소오 나	kg	99%
20-14	삭 카 린	1bs	결정품 (結晶品)
20-15	인 조 빙	M/T	—
20-16	전 분	대 (=22kg)	(콘스타지) A 급
20-17	엿 관		24kg입 1급품
20-18	한 천	1bs	1 등품
20-19	마 아 가 린	상자	450gr 입 24개
20-20	이 스 트 관		900 gr 입
20-21	사 료	대 (=15kg)	No 365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 질 및 규 격
21. 음료품 제조업			
21-01	소 주	180ℓ =1石	30도
21-02	주 정	200ℓ =1D/M	94도
21-03	탁 주	180ℓ	6도정도
21-04	청 주	18ℓ =10병	특급
21-05	맥 주	c/s	3.55합병 24본입
21-06	곡 자 (麴子)	石 =80kg	특호
21-07	맥 아 (麦芽)	M/T	맥주원료
21-08	사 이 다	C/S	상급품 2합병 30본입
22. 연 초 제 조 업			
22-01	휠 타 권 련	갑(20본)	신탄진 (20본입)
22-02	휠 타 없는 권 련	"	백조
22-03	각 련 (刻煙)	50g	타이가
23. 섬 유 제 조 업			
23-01	면 사	梱 =400lbs	23수
23-02	스 프 사	梱 =400lbs	30수
23-03	나 이 론 사	lbs	휠라멘트나이론사 70denier
23-04	소 모 사	"	48수2합사 염색사 (48手2合糸 染色糸)
23-05	방 모 사	"	wool 100% 16수단사
23-06	아마사 (亞麻糸)	"	SCL 30s
23-07	생 사	kg	21중
23-08	견 방 사	"	72수 단사
23-09	어 망 사	lbs	나이론사 210denier
23-10	광 목	疋 =40yds	폭 35" 16s×16s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 질 및 규 격
23-11	포 프 린	필 =30 yds	$\frac{24 \times 24}{65 \times 60} \times 36''$
23-12	본 건 양 단	필 =40 yds	폭 29''
23-13	인견평직(人絹平織)	"	폭 29''
23-14	나 이 룬 다 후 다	yds	36'' × 36''
23-15	소 모 동 복 지	필 =30 yds	폭 60'' 순모
23-16	나 이 룬 양 말	타 =12 족	중급품
23-17	메리야쓰동내 의	족 =10 착	남자용 면 상하 크기중
23-18	타 울	족 =10매	중급품 80gr 정도
23-19	로 우 프	3.75 kg	마니라마사 (麻糸) (Mesh-size)
23-20	어 방	필 151.5 m	나이론사 210 denier 4Ply 2 $\frac{1}{2}$ '' (Mesh size) 200코 (Mesh Depth) 100장대 (Length)
24. 화류, 의류 및 장신품제조업			
24-01	남자용 피혁화	족	흑색 복수피 (福壽皮) 중급품
24-02	여자용 피혁화	"	흑색 복수피 중급품 (단화)
24-03	동 양 복	착	순모 50% 이상의 복지를 사용한
24-04	하 양 복	"	(신사복상하 중급품)
24-05	와 이 사 쓰	매	포프린 백색 15인치
25. 제재 및 목제품제조업			
25-01	육송각재(陸松角材)	재	1촌(寸) × 1촌 × 12척(尺)
25-02	육송판재(陸松板材)	평	3분판
25-03	베 니 어 합 판	매	1분 × 3척 × 6척
25-04	하 드 보 오 드	매	3 mm × 120 cm × 270 cm (1분 × 4자 × 9자)
26. 가구 및 장치품제조업			
26-01	장 농 대	대	6 × 6 × 2.5척정도 호마이카중급품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26-02	경 대 대	대	화장용 2.5척정도높이의 호마이가 중급품
26-03	책 상 각	각	사무실용 2.5×4×2.5척 정도
26-04	의 자 //	//	철제 사무회전용
26-05	금속캐비닛	개	3×6×1.2척 정도 중급품
27. 지류 및 지류제품제조업			
27-01	신문용지	M/T	31 Roll
27-02	모조지	//	연당(連當) 29 kg (69gr/m ²)
27-03	크라프트지	//	지대용 80~90 gr/m ²
27-04	박엽지(薄葉紙)	연	27 Lbs 46 판 (가로 2자 6치, 세로 3자 6치)
27-05	마나라판지	연	연당 109kg (253gr/m ²)
27-06	창호지	권 (=20매)	3×1.9척 중급품
27-07	아트지	연	A지 양면 100gr/m ² (연당42.994 kg)
27-08	은박지	M/T	코일형 폭90mm 장1,000(Coil 당6.3kg)
28. 인쇄, 출판 및 동유사품			
28-01	일간신문	부/월	1주당 36면 1개월분
28-02	교과서	권	국판(가로4치9분) 110 Page 정도 활판인쇄 세로6치9분) 국민학교용
28-03	서적	천부	국판소설 9P활판, 간격 5호4분, 표지 모조 150 LBS, 용지갱지 200면, 부당 가격 (1,000부기준 용지대포함)
28-04	일반인쇄물	권	46매판 갱지 1,000매 편면인쇄료 (片面印刷料) (용지대포함)
29. 피혁 및 피혁제조업			
29-01	우갑피	평	복수피 2급품
29-02	우저혁(牛底革)	//	홍저혁(紅底革) 2급품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 질 및 규 격
30. 고무 제품 제조업			
30-01	자동차용타이어	조	750×20 12푸라이 튜우브부
30-02	자전거용타이어	조	26×1 $\frac{3}{8}$ (타이어) 26×1 $\frac{3}{8}$ (튜우브)
30-03	고 무 신	100족	10~11.5문 백색 남자용
30-04	포 화	"	" " 흑색 "
30-05	평형고무벨트	1"×1"×1푸라이	평형동력전도용(平型動力轉導用)
30-06	V형고무벨트	본	A형 50"
30-07	스 폰 지	평 =1자×1자	고무스폰지 후2"
31. 화학 제품 제조업			
31-01	농 유 산	M/T	98% 공업용
31-02	염 산	"	35%
31-03	가 성 소 오 다	"	40%
31-04	카 바 이 트	D/M	225kg입
31-05	호 루 마 링	M/T	37%이상
31-06	압 축 산 소	본	7m ³ 99%
31-07	요 소 비 료	M/T	충주·호남비료산
31-08	늘 리 세 린	D/M	250kg입 94%
31-09	페 인 트	5G/A	백색 오일조합페인트 외부용
31-10	에 나 멜 도 료	5G/M	백색 A급 중품
31-11	직 접 염 료	kg	분말 Direct Black EX
31-12	해 열 진 통 제	1,000T	아스피린(성분함량정당 500mg)
31-13	중 합 비 타 민 정	병 =100T	비타민 A 10,000 IU, B2,000 IU 포함
31-14	오 일 페 니 시 링 주	병	병당 10cc 300만단위
31-15	건 위 소 화 제	병 =1,000T	원기소, 그로민정, 비타이스트
31-16	포 도 당	갑	20% 20cc 10앰플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1-17	바 니 싱 크림	타 =12병	병당순량 75gr 스테아린산 10~15% 함유
31-18	연 치 약	타 =12본	본당 100gr 입 튜우브
31-19	B. H. C.	kg	분제 1.5~2% 정도
31-20	세탁용분말비누	통	400gr 정도, 합성세제
31-21	세 탁 비 누	개	개당 300gr 정도 상급품
31-22	화 장 비 누	"	개당 80gr 정도 중급품
31-23	다 이 나 마 이 트	상 자	22.5 kg 교질
31-24	통 성 냥	개	덕용(德用)성냥
31-25	인 쇄 잉 크	kg	흑색 활판용 중급품
31-26	P. V. C.	M/T	분말
31-27	감 광 지	상 자 =100매	확대지 8"×10" 상급품
32.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32-01	휘 발 유	Kl	석유공사제품
32-02	등 유	"	"
32-03	경 유	"	"
32-04	중 유	"	"
32-05	방 카 C 유	"	"
32-06	연 탄	M/T	19공탄 톤당 200개
32-07	마 세 크	"	-
33. 토석 및 유리제품제조업			
33-01	벽 돌	10 매	1 등품 소성품 10cm×21cm×6cm
33-02	타 일	평	2"×2" 또는 2"×3.5" 외장용
33-03	내 화 벽 돌	M/T	S.K. 34 번 병형
33-04	판 유 리	상 자 =100평	후 2 mm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3-05	유 리 술 병	10본	4 합병
33-06	도 자 식 기	별	사발과 대접 중급품
33-07	시 멘 트	대 (=42kg)	수경성
33-08	콘크리트제블록	10개	8" × 16" × 4"
33-09	콘크리트제기와	10매	평당 40매 흑색 중급품
33-10	콘크리트제전주	본	10 m × 190 mm × 350 kg
33-11	소 석 회	대 (=15kg)	15 kg 입
33-12	석 면 스 레 트	매	석면 15~20% 함유 72 cm × 182 cm
34. 제 1 차 금 속 제 조 업			
34-01	선 철	M/T	주물용 1호
34-02	강 피	"	No. 1 [C 0.1~0.16% 함유]
34-03	철 근	"	직경 9 mm 건축용
34-04	선 재	"	" 4 mm (8 번선)
34-05	후 판	"	3' × 6' 후 9 mm
34-06	박 판	"	후박판 3' × 6' 1급후 3.2 mm 또는 2.3 mm
34-07	주 칠 판	"	직경 8 inch 정도
34-08	아 연 도 철 판	매	# 31 과형 3 × 6 척
34-09	석 도 철 판	c/s	20" × 28" 90 Lbs 1 급품
34-10	금 피	gT	99.85 %
34-11	은 피	"	99.97 %
34-12	전 기 동	M/T	99.9 %
34-13	연 피	"	99.96 %
34-14	나 동 선	m	7-2.6 mm (단면적 38 mm ²)
35. 금 속 제 품 제 조 업			
35-01	석 유 관 (罐)	개	각형 (角形) 5 gal 들이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35-02	삼	개	중급품 표준형
35-03	방 열 기	매	5c × 650
35-04	알 미 늄 샷 슈	M/T	6063(AA code)
35-05	남 비	개	알루미늄프레스식기 직경 20 cm
35-06	스 텐 식 기	조	50 piece 양식기 A급
35-07	철 정	kg	2" ~ 5"
35-08	와 이 어 로 우 프	1Coil (=200m)	6 × 19 직경 12 mm
35-09	볼 트 및 낫 트	조	볼트직경 15 mm 길이 60 mm 정도
36. 기 계 제 조 업			
36-01	공업용보일러	대	수관식(水管式) 증발량 5000kg/hr
36-02	발 동 기	"	중유용 16 HP
36-03	인 력 탈 곡 기	"	2인용 축답식(足踏式)
36-04	분 무 기	"	인력용 배부식(背負式)
36-05	경 운 기	"	소요마력 3.5 HP 엔진부 2륜(輪)
36-06	선 반	"	5척 평형
36-07	면 직 기	"	장 45" × 2 × 1
36-08	견 직 기	"	장 73" (복 2 개) 재래식
36-09	횡 편 직 기	"	30" 정도
36-10	정 미 기	"	본기 1호 소요마력 5 HP
36-11	동 력 펌 프	"	수두 20 m 펌프구경 100 mm 1분당 1 ton
36-12	재 봉 틀	"	가정용 발틀두부
36-13	볼 베 아 링	개	# 6205
36-14	롤 라 베 아 링	"	# 30304
37. 전 기 기 계 기 구 제 조 업			
37-01	변 압 기	대	주상용(柱上用) 15 KVA 단상(单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 질 및 규 격
37-02	전 동 기	대	10 HP 220 V 60cycles 4POLES 반폐
37-03	충 전 기	"	24 V 15A
37-04	선 풍 기	"	12"
37-05	라 디 오	"	5구 중파 (中波)
37-06	전 화 기	"	일반용 수화기
37-07	고 무 절 연 전 선	피	2 mm 복선 (複線)
37-08	합성수지절연전선	"	P.V.C. 2 mm (가정용)
37-09	통신용케이블	"	2.9 mm
37-10	탕그스텐전구	개	일반가정용 60 W 100 V
37-11	형 광 전 구	"	관구 FL 20W
37-12	축 전 지	대	12 V 50 AH
37-13	전 전 지	"	1.5 VCM

38.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

38-01	선박용디젤기관	대	60 HP 중간속도
38-02	철 강 화 물 선	G/T	신조화물선
38-03	목 조 어 선	"	신조어선
38-04	버 스	대	국산조립 G.M.C. 엔진 대형
38-05	승 용 차	"	5인승 corona 1500cc
38-06	삼 륜 화 물 차	"	TVA 12S
38-07	자 동 차 엔진	"	DA 120
38-08	자 진 차	"	26" 실용차 중급품

39. 기 타 제 조 업

39-01	안 경 테	개	4 mm 48~50대리스 중급품
39-02	프 라 스틱 제 필 림	권	P.V.C. 필림두께 0.015mm 폭 45cm 장 500 yds (=457m)
39-03	프 라 스틱 제 레 자	피	일반용 후 1 피 폭 135 cm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 질 및 규 격
39-04	프라스티제파이프	m	수도용내경 50 mm 후 3.5 mm KS 표시품
39-05	연 필	그로스	필기용 흑심 중급품
39-06	블 펜	"	모나미 153
39-07	정돈모(整豚毛)	lbs.	2 1/2 inch 정 정도
39-08	가 발	개	기계가발 장 10" ~ 12" 50ZS
39-09	피 아 노	대	견형(堅型) 1/4 (88 건(鍵) 중량 260 kg 높이 134 cm 정도
39-10	음 반	매	12" Lp Stereo 판
39-11	울 건	대	6 호 [61 건쌍렬(鍵双列) (122 Pedal) 5 octave]
39-12	휠 타	상자	본당 장 84 mm 원주 22.5 mm 1,000 본

부 표 Ⅲ

금액 조사를 실시하는 산업

부표Ⅲ

금액 조사를 실시하는 산업

다음의 두개 산업중분류는 당원의 광공업동태조사중 금액조사하는 부분으로서 동중분류 해당사업체의 신규색출에 있어서 그 자료로 사용토록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발췌한 것이다.

중분류 13 토사석채굴업 (土砂石採掘業)

점토, 사, 자갈, 석재, 화강암, 대리석, 석회암, 사암, 점판암등의 토사석을 채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고품토와 같이 토건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사석류는 중분류 19 (비금속광업)에 분류한다.

1300 토사석채굴업

130 토사석채굴업

중분류 24 화류, 의복류 및 장신품제조업
(靴類, 衣服類 및 裝身品製造業)

구입한 각종직물류와 피혁, 기타재료를 재단, 재봉하여 화류, 의복류, 장갑, 모자 및 기타의 각종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편직공장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내의, 장갑, 양말등의 의복류를 제조하는 사업은 234 (편직업)에 분류한다.

241 화류제조업 (고무신류 제외)

피혁, 직물, 「프라스틱」, 목재 및 기타재료를 사용하여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고무신류, 운동화, 고무장화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3020 (고무신류 및 동부속품제조업)에 분류한다.

2411 혁제화류제조업

피혁제의 단화, 장화, 편상화, 「스립퍼」 및 「샌달」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피혁재단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도 여기에 분류한다. 단, 수선업 또는 제조와 수선을 겸한 사업은 2420 (화류수선업)에 분류한다.

○ 피화제조; 가죽「스립퍼」제조; 가죽「샌달」제조; 혁제장화 제조; 「혁제」발레-스립퍼 제조; 구두걸가죽제조; 피화부속품제조 (혁제)

× 고무제화류제조 (3020); 운동화제조 (3020); 훈련화제조 (3020)

2419 별개 이외의 화류제조업

피혁이나 고무제가 아닌 각종 화류제조 또는 각종 화류의 재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제조와 수선을 겸한 사업체는 2420 (화류수선업)에 분류한다.

○ 짚신제조; 유리구두제조; 「펠트」장화제조; 목제화류제조; 「비닐샌들」제조; 화류재료제조 (비피혁제)

× 구두끈제조 (2399); 고무제화류제조 (3020); 고무구두창제조 (3020)

242 화류수선업

2420 화류수선업

각종화류를 수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선과 제조를 겸하는 사

업도 여기에 분류한다.

243 의복류제조업

직물, 피혁, 모피 및 기타의 구입한 재료를 재단, 재봉하여 의복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각종 모자틀, 모자 및 대류틀 제조하는 사업도 여기에 분류한다.

2431 남자용 의의제조업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남자성인과 소년용의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432 여자용 의의제조업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여자성인과 소녀용의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433 소아용 의의제조업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소아용의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434 내의제조업

재료, 형태 및 남녀용을 가리지 않고 내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내의제조; 「샤스」제조; 「빤스」제조; 「즈로스」제조;
「쉬미즈」제조; 침의류제조; 「와이샤스」제조; 「페티코오트」제조; 「자켓」제조

2435 장갑제조업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구입한 재료를 재단, 재봉하여 장갑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편직공장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장갑을 편조하는 사업은 2342(장갑편조업)에 분류한다.

○ 직물제장갑제조; 피혁제장갑제조; 직물피혁혼용장갑제조

× 「메리야스」제장갑 편조(2342)

2436 우의 및 기타방수용 외의제조업

우의 및 기타방수용 외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각종우의제조; 잠수복제조

× 우산 및 양산제조(3991)

2437 모자제조업

「펠트」지를 포함한 각종 원료로 모자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일관작업에 의한 동일직업장에서의 「펠트」모제조업은 2399(별게 이외의 직물제품제조업)에 분류한다.

2439 기타장신품제조업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기타의 장신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넥타이」, 「칼라」, 「머플러」, 「브라지어」, 장신용 「밴드」, 손수건, 버선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각종 대류와 지팡이도 여기에 분류한다.

○ 허리띠제조; 「넥타이」제조; 「머플러」제조; 「스카프」제조; 손수건제조;

버선제조; 「칼라」제조; 「밴드」제조; 혁대제조

249 기타섬유제품제조업

2490 기타섬유제품제조업

구입한 직물 또는 편직물을 사용하여 「커튼」, 「시트」, 「베개」, 「나프킨」, 「테이블커버」, 이불, 침대 「커버」, 세탁대, 의자 「커버」, 직물대, 천막제품, 「트리밍」, 자수품류, 기류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침구제조; 이불제조; 침대보제조; 베개제조; 자수제조;
천막제조(범포); 「시트」제조; 마대제조; 면대제조; 「스프」대제조; 기제조
- × 섬유제가방제조(2922); 학생용가방제조(2922);차일품제조(2699)

5. 경제활동인구조사

차 례

1. 경제활동 인구조사 개요	107
가. 연혁	107
나. 목적	107
다. 범위	108
라. 방법	108
마. 시기	109
바. 집계	109
2.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관한 용어, 정의 및 해설	109
가. 조사단위와 통계단위	109
나. 가구란	109
다. 가족	109
라. 공가란	109
마. 상주자란	110
바. 농가란	110
사. 일이란	110
아. 취업자	110
자. 실업자	111
차. 경제활동 인구	111
카. 비경제활동 인구	111
3. 조사요령	111
가. 준비조사시에 하여야 할일	111
① 조사구 지도 작성	111
② 표본가구 일람표 작성	113

③ 취업시간 기입표, 인사말씀 배부	-----114
④ 준비조사완료 보고서 제출	-----114
나. 조사 주간	-----114
다. 실지 조사	-----114
4. 조사표 기입 요령	-----115
가. 난외사항	-----115
나. 난내사항	-----116
5. 질의 응답 요령	-----124
6. 조사구 작성상의 기호	-----132

경제활동인구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개요

가. 연혁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57년부터 지방행정기관으로 부터 행정통계의 일부로서 자료를 수집하여 왔으나 1962년 1월 15일 통계법이 공포되고 본 조사도 지정통계 제4호로써 1960년 인구센서스의 조사구에 근거를 두고 전국을 모집단으로 한 $\frac{1}{1,000}$ 크기의 표본조사란 현대 통계조사방법에 의하여 1962년부터 두차례의 시험조사를 거쳐 1968년까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 인구센서스의 조사구는 그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조사구의 경제계가 노후하고 조사구내의 특성치(인구수, 산업, 직업, 농가, 비농가 등등)가 바뀔에 따라 1966년 인구센서스의 조사구에 근거를 둔 다목적 표본에 의하여 표본이 재 설계되고 본조사도 새로운 지역에서 1969년부터 조사를 실시케 된 것이다.

나. 목적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인구의 수, 성별, 출생, 사망등의 제 특성치 자체보다는 인간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경제활동이란 측면을 관찰코저 하므로 실제 일(수입을 목적으로)하고 있는 취업자, 일을 않고 있는 실업자, 일할 수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등을 성별, 연령, 학력,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취업시간, 실직기간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이를 다루는 정부기관이나 기타 연구기관에 기초자료로서 이바지 하게 되는 것이다.

다. 범 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상주자로서 만 14세 이상인 자는 모두 조사대상자로 하되 다음 사항에 해당된 자는 제외된다.

1) 군 인

2)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3) 휴전선 일대와 도서에 거주하는 자

라. 방 법

1) 표본조사

표본조사(일부조사)라 함은 전수조사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전수로 조사하지 않고 그 일부를 조사하여 전수를 추정하는 추정통계학의 한 방법이다.

오늘날의 통계조사는 몇가지 조사(인구, 주택, 농업센서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표본조사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의 장점으로서는 경비, 인원, 노력, 시간등을 절약하면서도 전수조사 이상으로 자료의 신빙성(정도)을 높이는 데 있다. 본조사도 전국을 모집단으로 하는 크기의 $\frac{1}{1,000}$ 에 해당되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단기상태 및 가구단위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단기간 조사하는 경상상태와 장기간 조사하는 평상상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조사주간 1주간에 일어나는 단기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위를 가구와 사업체로 나눌 수 있는데 본조사는 가구를 단위로 채택하고 있다.

3) 타계식과 자계식의 병용

경제활동 인구조사표는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응답자로 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조사원이 기입하는 타계식방법을 사용

하고 취업시간 기입표는 응답자 자신이 기입하는 자계식 방법을 쓰고 있다.

마. 시 기

경상상태 조사는 자주(월간)할수록 효율도가 높다 하겠으나 경비 인원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년 4회 실시하되 조사시기는 지정된 달의 지정된 1주간을 조사한다.

바. 집 계

조사원 지도원을 통하여 수집된 조사표류는 경계기 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전자통계계산기에 의하여 집계되고 제표된다.

2.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관한 용어, 정의 및 해설

가. 조사단위와 통계단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통계단위는 가구(집)이고 조사단위는 사람이다. 따라서 본조사는 통계단위와 조사단위가 일치하지 않으나 가계조사와 같이 가구로서 조사단위와 통계단위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나. 가구란 (Household)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인구의 집단, 가구주란 가구의 가계를 사실상 주관하고 그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 가족 (Family)

혈연관계를 위주로 이루어진 인구의 집단, 가족과 가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라. 공가란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이 현재 주거하지 않고 비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마. 상주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거주한지 3개월이상이 되었거나 앞으로 3개월이상 거주할 예정인 자를 말한다。

바. 농가란

농업을 생업(생계와 경영)으로 하는 가구로서 다음 각항의 하나에만 해당해도 농가구이다。

- 1) 소유여하를 불문코 논, 밭 각각 300평이상 직접 경영할때
- 2) 대 가축(소 또는 말) 1마리 이상 농업을 목적으로 사육할때(단 운반용은 제외함)
- 3) 중 가축(돼지, 염소, 양등)을 도합 3마리 이상 사육할때
- 4) 가금(닭, 오리등) 30마리 소가축 40마리이상 사육할때
- 5) 5통이상의 양봉 6잠종 10g(2만입(万粒))이상을 소잠(消蚕)할때
- 6) 온실을 영리목적으로 경영할때
- 7) 고등원예채소 특용작물 100평 또는 과수 묘포등을 200평 이상 경작할때

사. 일이란

급료, 임금, 사업수익, 이윤등 수입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말하며 직접 개인의 수입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구단위로서 수입 또는 수익이 있을 때도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공공사회복지를 위하여 무보수로 일하거나 집을 수리하고 집안일을 돌보는 가사등 직접적 수입있는 행위가 아닐때는 일이라 보지 않는다。

아. 취업자

조사주간중 조금이라도 일한 자를 말한다。

자. 실업자

조사주간중 조금이라도 일하지 못하였거나 일하고져 한자를 말한다.

1) 구직실업자

일은 하지 못하였으나 일을 구체적으로 구하여 본자

2) 비구직 실업자

일을 구하여 보았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기불순 일시적 병등으로 부득히 구직활동을 못한 자와 자기에는 합당한 일거리가 없다고 믿는(포기)자

차.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경제활동인구

카.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을 안하거나 할 수 없는 자(연로, 학생, 주부, 불구 불로소득자등)만 14세이상 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3. 조사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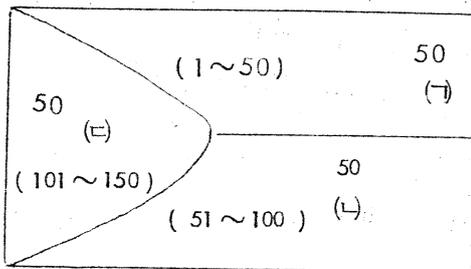
가. 준비조사시에 하여야 할일

1) 조사구 지도작성

먼저 1966년 인구센서스의 조사구를 찾아 내어야 하고 찾은 조사구는 조사구의 경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인접조사구를 침범하거나 자기 조사구를 축소시켜서는 안된다. 다음에는 간단한 약도를 작성하여 조사구내에 있는 모든 가구는 중복과 누락됨이 없이 일련번호를 붙인다. 이때 일련번호는 가급적 앞으로 조사구를 분할하기 용이하도록 붙인다. (조사구 분할 일람표 참조)

가령 예를들면 "갑"이란 조사구에 1966년 당시에 150가구가 있었다고 하고 조사구 분할 일람표에 의하면 3으로 분할하도

록 되어 있다면 첫째, 1966년 당시와 현재의 가구주에 변동이 없을 때 그림과 같이 지형 지물을 고려하고 가급적 지역을 균등히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구내 가구들이 고루 분포되지 않았을 경우는 가구수를 위주로 분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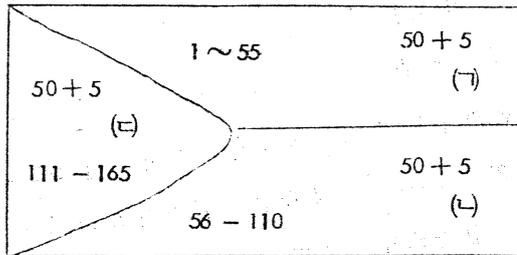
이때 일련번호는 분할된 작은 분할구 (가, 나, 다)를 그림과 같이 (가)은 1~50번까지 (나)은 51~100까지 (다)은 101~105과 같은 요령으로 붙인다. 그래서 가령 조사구 일람표에 의하면 "갑"이란 조사구는 100가구 조사하라

할 때 (가)과(나)의 분할구에 있는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가구로 하여 표본가구일람표를 작성하게 된다.

표본가구일람표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able>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rgin-left: 10px;"> <p>조사원번호</p> <p>층 번호</p> <p>조사구번호</p> <p>가구 번호</p> </div>																					
가구일련번호	성명	성별	양생년월일 음만	일월 세관	가구주와의 계	배우관계	학력	응답여부	비고												

둘째, 1966년 당시와 현재의 가구수에 변동이 있을 때 이번 준비조사기간에 파악된 가구수가 165가구로서 15가구가 증가하였다 하면 $15 \div 3 = 5$ 가구씩 각각 분할구에다 가산하면 되고 만일 15가구 감소되었다면 5가구씩 빼주면 된다. 4등분 할 경우도 3등분 하는 요령과 동일하다.



앞서 정의한 바와같이 가구는 그 성질상 가족단위로 구성된 가구, 혼자 사는 단독가구, 가족과 먼 친척, 가정교사, 하숙인, 식모, 점원등

과 같이 혈연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복합가구, 전연 혈연관계가 없이 서로의 이해관계로 함께 사는 기숙사, 합숙소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구들은 조사의 통일과 편의상 다음과 같이 규정을 두고 있다.

(가) 가족단위로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의 대소를 불문하고 하나의 가구로 한다.

(나) 복합가구는 4인미만인 경우는 주가구에 포함하여 하나의 가구로 보나 4인이상일 때는 주가구를 하나의 가구로 보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차지하는 방의 수와 같이 가구수를 정한다.

(다) 기숙사, 합숙소등은 방 하나하나를 가구로 본다. 주의공가는 가구로 간주하나 신축중인 건물은 가구로 인정하지 않음

2) 표본가구 일람표 작성

조사구 지도와 조사구 일람표를 작성하고 조사구 분할일람표에 의하여 조사구를 분할한 다음 표본분할구가 확정되면 표본분

할구내에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표본가구일람표를 작성한다.

(가) 성 명 (나) 가구주와의 관계 (다) 성 별

(라) 양음 생년월일 (만 세) (마) 배우관계

(바) 학력 등 경제활동과 관련있는 특성을 표본가구일람표에 작성한다.

가구원 상황이 변동되면 즉시 이를 보완하고 표본가구의 전출, 전입시는 이를 개치하고 신축가구는 새로 작성한다. 비고란은 방문회수, 실시예정일 등 업무수행에 도움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인, 수감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나 가구원 상황에는 기재해야 하며 상주 개념에 위배되는 사람은 가구원 상황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 단, 항공, 선박의 선원은 장기 출타자일지라도 가구일람표에 기입하여야 하며 또한 조사도 하여야 한다.

※ (표본가구일람표)

3) 취업시간 기입표, 인사말씀 배부

표본가구에 대해서는 표본가구일람표 작성에 앞서 인사말씀 취업시간표등을 배부하여 응답자의 협조와 정확한 취업시간을 기입하도록 촉구하여 철저한 실사에 임하도록 한다.

4) 준비조사완료 보고서 제출

이상의 작업이 완료되면 조사원은 중앙에 소정양식에 의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사주간

조사주간에는 해당조사구내의 표본가구를 순회하며 취업시간 기입을 지도하고 실사전 까지의 변동사항을 파악한다.

다. 실지조사

실지조사는 응답자의 정확한 정보를 조사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준비조사 완료 보고서

준비조사 완료보고서

조사원번호
층 번호
조사구번호

준비조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구내 총가구수 _____ 가구

표본 가구 수 _____ 가구

14세이상인구수 _____

14세미만인구수 _____

군인 및 수감자수 _____

조사원 _____ 인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장 귀하

4. 조사표 기입요령

조사표의 난외, 난내 사항은 모두 한글로 쓰되 뜻이 분명치 않을 때는 ()안에 한문으로 기입하여 불펜으로 기재한다.

가. 난외사항

조사원번호, 층번호

조사구 번호는 조사구 분할일람표 참조할것.

			조사원번호
			층 번호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0 가구번호는 표본가구일람표의 가구번호와 동일하며 이는 조사구 일람표의 가구번호와 동일하다.

0 가구원 번호는 표본가구일람표의 가구원 번호와 동일하다.

0 가구구분은 농가일 경우 ①농가 비농가일 경우 ②비농 농가일때는 농가 이유를 기입할것. 0 란내 사항은 연필로서 , 또는 사선 / 등으로 표시한다.

나. 난내사항

1 란부터 6 란까지는 표본가구일람표와 동일함. 즉

0 성 명

1 란 성명은 현재 통상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쓰고 이름이 없을 경우 성만이라도 기입한다.

0 관 계

2 란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 가구주의 "처" 또는 "남편" 장남, 차남, 장녀, 차녀, 부모, 형제등과 같이 기입하고 나이순으로 미혼자녀, 기혼자녀 그리고 직계존속 동거인등의 순서로 기입한다.

0 성 별

3 란은 남녀로 구분하여 해당사항에 으로 표시한다.

0 연 령

4 란은 호적나리와 관계없이 만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단 기준은 조사 주간 첫날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 출생자는 세는 나이에 한살 감하고 이후 출생자에게는 2살 감한다. (표본가구 일람표의 생년월일 참조)

특히 14세 전후의 나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하여야 한다.

0 배우관계

5 란은 호적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하여 해당하는 곳에 으로 표시한다. 사실상의 관계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과거는 불문에 붙인다.

① 유배우; 현재 처 또는 남편이 있는 자를 말함

② 사 별; 결혼후 배우자 한편이 사망하여 현재 독신으로 있는 자를 말함. 비록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별로 간주한다.

③ 이 혼; 호적과 관계없이 사실상 배우자와 영원히 살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자를 말한다.

④ 미 혼; 아직 한번도 혼인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0 교육정도

6 란 학력은 최종 졸업한 학교를 말하며 가령 고등학교 재학중이거나 중퇴한 자는 최종졸업이 중학이므로 (3) 중졸 에 해당된다.

① 불취학; 글을 알고 모르고에 관계없이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② 국 졸; 국민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학교 재학중 또는 중퇴자를 말한다.

③ 중 졸;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재학중 또는 중퇴자를 말한다.

④ 고 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대학교 재학중 또는 중퇴자를 말한다. (단, 구제 5년제 중학은 고졸로 간주함)

⑤ 대 졸; 대학교(2년, 4년)를 졸업하였거나 대학원 재학중 또는 중퇴자를 말한다.

학원 또는 학관을 이수한 자는 그 정도에 따라 학력을 구분한다

0 지난 1주간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7란은 조사주간중 주된 상태를 파악하고 아래 질문을 유도하는 항목이다.

나. 난내사항

① 일하였음; 아무리 가사를 하더라도 돈을 받고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하였음에 해당된다. 8란 17, 18, 19란은 사진을 갖고 9란부터 16란까지는 질문하여야 한다.

② 일시휴직; 직업은 가지고 있으나 일은 하지 않는 자로서 일시적명, 일기불순, 병가, 년가, 휴가등과 같은 사정이 틀리면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직장으로 돌아갈 사람을 말한다.

자영업주, 일고의 30일이상 휴직은 일시휴직이 아니며 가족종사자의 일시휴직은 있을 수 없다. 7란(2)의 일시휴직은 8란을 질문하고 8란(1) "있다"의 경우 7란(1)일하였음과 같이 조사하고 (2) "없다"의 경우도 9, 10, 11, 란을 제외하고는 12 ~ 16란까지 질문한다.

③ 가 사; 행위자체가 수입과 직결되지 않은 밥짓기, 빨래하기, 아이보기, 자가일감, 집수리등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므로써 보수를 받는 식모, 부모, 유모, 머슴등은 일한

자료 하여야 한다.

④ 통 학; 학교에 실제로 통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여
기서 학교란 정규적인 학교이외 미용, 이용학원, 요리학원, 양재학원,
자동차기술학원등 각종학관 학원을 포함한다.

대학에 적을 두고 학교에는 실제 나가지 않고 수업 있는 일을
했을 경우 이는 일하였음이 된다.

⑤ 실 직; 직업을 잃어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구직은
안했으나 놓고 있거나 새로 직업을 구하려는 (신규실업자) 자를
말한다.

⑥ 년 로; 자기 스스로 나이가 많아 경제활동을 포기한
자를 말함.

⑦ 불 구; 선천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후천적으
로 3개월이내에 완쾌될 가망이 없는 고질환자를 말한다.

단, 불구자일지라도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할때는 취업자
및 실업자가 된다.

⑧ 불로소득; 선천적으로 태만한 자, 많은 유산을 받아 일
하지 않고 노는자, 직접 경제행위가 아니고 얻는 수입 (주배당금,
논놀이, 집세등)을 가진자를 말한다.

⑨ 기 타; 이상으로서 분류할 수 없을때는 기타 이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0 지난 1주간에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8란에서는 7란의 조사주간중 주된 상태를 파악한데 대하
여 조사주간중 7란(1)일하였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일하였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항목으로서

(1) 있다가의 경우는 일한자로 간주하여 7란의 (1)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2) 없다가의 경우는 17, 18란을 조사하고 9란부터 16란까지 사선을 긋는다.

0 몇시간이나 일하셨습니까?

9란을 기입하기 앞서 준비조사기간에 표본가구에 배부한 취업시간 기입표를 대조하여 기입한다. 7란의 (1)일하였음과 8란의 (1)있다가에 해당된자만 9란을 질문한다.

0 평상시에도 이렇게 적게 일하셨습니까? (36시간 미만인자)

10란은 9란에서 36시간 미만인자에 해당되고 36시간이상 일때는 10란 11란은 사선이며 36시간 미만인자도 (1) 그렇다에 해당될때는 11란은 사선을 긋는다.

0 (그렇지 않다면) 왜 적게 일하셨습니까?

11란은 평상시에는 많은 일을 하였으나 조사주간중에는 일을 적게 하게된 이유를 찾는 항목으로서

(1) 더 많이 일거리가 없으므로 (2)더 하고 싶지만 가사나 통학 등 주로 하는 일에 지장이 있으므로 (3)일시휴직 (4)실적되었거나, 만 혹은 새로운 직업을 구하였으므로 (5)노동쟁의나 파업등등의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이상으로 분류될 수 없는 이유는 (6)기타에 해당되며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0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산업)

12란은 근무처 내지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판매할 때는 도매업 소매업을 명시하고 스스로 물품을 생산 제조하여 제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최종 소비

자에게 팔 때는 소매 또는 도매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제조로 한다.

2. 사업장이나 근무처의 명칭이 사업의 내용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때는 명칭 그대로를 간략히 기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 내에 사업내용을 기입하여야 한다. 기입할 때는 지방방언(사투리)을 피하고 표준어로 기입하여야 한다.

예,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대한석탄공사, 내가 경영하는 논, 남의 과수원, 세기상사(무역업), 한일기업사(토건업) 등등

0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담당 하고 계셨습니까? (직업)
어떤 일에 종사

13 란은 자기가 직접 종사하거나 담당한 일을 사무원, 공무원 등 막연히 기입하지 말고 통계조사공무원, 경리과장, 비료를 뿌렸음, 과일에 종이를 씌웠음, 이엉을 덮었음(지붕을 이었음) 등 구체적 표준어로 기입하여야 한다.

여러분이 대상가구를 방문할 때 응답자가 본인이 아니므로 가구원 중의 산업 직업을 잘 모를 때는 2차 3차 방문을 하여서라도 꼭 밝혀내어야 한다.

0 하셨던 일에서 지위는 어떠하셨습니까?
(종사상의 직위)

14 란은 종사상의 지위로서

(1) 고용주; 1인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자영업주; ①단독: 남을 두지 않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 하는 자
②행상: 자기자본만으로 일정한 위치가 없이 사

업을 운영하는 자

예를 들면 옛장사, 화장품장사, 라디오
월부판매자, 책월부판매자, 단 이들이 자
기자본으로 경영하지 않을 때는 피고용
자가 된다.

③노점 : 일정한 장소없이 혹은 같은 장소에서
자기자본으로 경영하는 자

예를들면 시장의 노점상, 구멍가게등

④내직 : 자가에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자를
말한다.

삯바느질, 봉투붙이기, 수편물등

(3) 가족종사자 ; 자영업주의 가족으로서 임금별급료를 받지 않
고 가구단위로 사업의 경영을 도우는 자를 말한다. 농사일도 포
함한다.

(4) 상용고용자 ;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자로서 고용주의 특별한
사정이나 사업체의 해체 개인의 자격상실등으로 해임이 되지 않는
한 계속 고용되어 임금 및 급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머슴, 식모, 음식점 종업원등 고용기간이 특별히 1년미만이 아닌
자는 상용고용자로 한다.

(5) 임시고용자 ; 고용기간이 1년미만 1개월이상인 자를 말한
다.

(6) 일고자 ; 나날이 혹은 1개월미만의 고용계약이 된자를
말함 (날품팔이 지게꾼등)

0 앞으로 현재하던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거나 다른 일로
바꾸고자 하십니까?

15 란은 전직 및 추가 취업희망 여부를 조사하는 항목으로

- (1) 더 많이 하고 싶다 (2) 다른 곳(일)로 바꾸고 싶다.
(3) 계속 그곳에서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구분하였는데 (1) 또는 (2)에 해당할 때는 16 란을 질의해야 하고 (3)에 해당된 때는 16 란은 사선을 긋는다.

0 왜 더 많이 또는 다른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16 란은 (1)수입(소득)을 더 높이기 위하여 (2)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3)직업의 장래성이나 직장분위기가 좋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4)기타에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입할것.

15, 16 란은 응답자 주관의 욕망이 크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극적인 질문은 삼가하고 학력, 연령, 산업, 직업등을 고려하여 응답자의 진의를 파악하여야 한다.

0 전연 일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7 란은 7 란의 (3)부터 (7)까지의 자로서 9 란에서 (2)없다와 17 란에서 재확인하는 항목이다. 17 위 (1)장기휴직과 (7)의 불로소득인 경우 18 란은 사선

0 조금도 일하지 않았는데 일거리를 구하여 보았습니까?

(1) 구체적으로 구하여 보았음

- 보았다면 경로는 { ① 친구 및 친지의 알선
② 직업소개소
③ 구직광고 및 보도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거리를 구하여 보지 않았음.

구하여 보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① 일기불순 ② 일시적 병 ③ 대기 ④ 구직단념

(3) 막연한 생각에 불가함。

(4) 구하여 보지 않았음。

18 란은 경제활동(실업자)과 비경제활동 인구를 구별시키는 최종적인 항목이므로 비록 지금까지 실직으로 인정된 자라 할지라도(2) 막연한 생각에 불가했을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되고 비경제활동인구인 가사 통학연로인 자가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을 때는 실업자로 조사됨으로 특히 이란을 중요시 하여야만 한다。

0 실직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19 란은 18 란에서 ①과 ②에 해당된자에게는 실업기간을 물어야 하고 일한 경험이 있는 자는 실직되기 전 12 란 산업과 13 란 직업을 물어야 하며 일한 경험이 없는(신규실업자)자에 대해서는 12, 13 란에 "없음"으로 기재해야 한다. 18 란의 (2)(3)에 해당될 때에는 19 란은 사선을 긋는다。

5. 질의 응답요령

가. 조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

「문」 외국에 유학중인 자 혹은 외지에 출장중인 사람은 조사하는가?

(답) 유학하여 3개월 이상되는 자 또는 3개월 이상 외지에 있을 예정자는 조사하지 않는다。

「문」 외국인이 상품구매차 한국에 3개월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사하는가?

(답) 조사하지 않는다。

나. 조사의 장소에 관한 사항

「문」 자택과 점포의 양쪽에 숙박하고 있는 자로서 점포에

숙박이 더 많은 사람은 어디서 조사할 것인가?

(답) 자택이 있는 자는 점포에서 숙박하고 있는 일수가 많
아도 자택에서 조사한다.

「문」 군속, 군인의 영외거주자는 어디서 조사하는가?

(답) 군인은 조사하지 않으나 군속은 대상가구에 상주하면
일반조사대상에 준하여 조사한다.

「문」 입원환자의 간호인은 어디서 조사하는가?

(답) 입원환자와 같이 자택이 있는 자는 자택에서 조사한다

「문」 사정이 있어서 시가로 부터 친정에 귀가한 경우에 있
는 자는 어디서 조사하는가?

(답) 3개월이내 귀가 예정자는 시가에서 3개월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친정에서 조사한다.

「문」 자택을 떠나 3개월이상 항해 또는 출어중인 자는 조
사 하는가?

(답) 자택을 떠난지 3개월이상이 되어도 자택에서 조사한다

• 취업(일)의 범위에 관한 사항

「문」 각 관공서에 소속된 직원양성소에서 강습을 받고 있는
자는 「수입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가?

(답) 관공서, 회사, 공장등에서 직원 또는 공원을 교육양성하
기 위해서 경영하는 학교, 양성소, 훈련소, 강습소등에서
강습을 받고 있는 자는 각기 소속하고 있는 관공서,
회사, 공장등에서 급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강습시간을 취업
시간으로 본다.

「문」 농가에 있어서 「일」의 범위여하?

(답) 농업경영에 필요한 작업 즉 농지의 경작, 개간, 탈곡, 조제에 출하 및 이에 부수되는 고품작업, 농구의손질, 수리, 비료 조제등 모든것이 농가에 있어서의 「일」이 된다.

<단> 자가용의 연료채취, 짚신만들기 등은 「수입 있는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문」 농가에 있어서의 동회나 혹은 상가의 동업조합회의등에 출석할 경우에는 「수입 있는 일」이라고 보는가?

(답) 이것은 농가경영 혹은 상업경영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있는 일」을 한것으로 본다.

「문」 품아시로 인자의 농사를 조력하였을 때는 일을 한 것으로 보는가?

(답) 한 것으로 본다.

「문」 농가에서 양계를 하여 생산된 달걀을 전부 자가에서 소비하고 가무원이 그 일을 하였을 경우 「수입 있는 일」을 한 것으로 보는가?

(답)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엔 「수입 있는 일」로 보지 않는다.

「문」 예금의 이자 고리대금업자 또는 주식의 배당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는 「수입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가?

(답) 「수입 있는 일」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문」 학교에서 단체로 봉사작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입 있는 일」로 보는가?

(답) 봉사작업에 보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입 있는 일」로

보지 않는다.

「문」 고용되어 있는 목공이 조사기간중에 직장의 작업에 취업하지 않고 자기의 가재도구등을 수리할 경우에 「수입 있는 일」로 보는가?

(답) 「수입 있는 일」로 보지 않는다.

「문」 개점의 준비가 완료되어 개점의 일자를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 있는 일」로 보는가?

(답) 「수입 있는 일」로 보지 않으며 조사표(18)란의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거리를 구하여 보지 않았음에 해당하며 그 이유로는 ③ 대기 에 속한다.

「문」 조사주간중 파업으로 전혀 취업하지 않는 경우는 「수입 있는 일」을 한 것으로 보는가?

(답) 장기적 파업은 「수입 있는 일」로 보지 않는다.

파업기간중 급료나 임금을 받을 때는 일시 휴직이 된다

「문」 생산물을 대부분 자가소비하고 있는 소규모 농업은 「수입 있는 일」로 보는가?

(답) 소위 가정야채원 같은 소규모의 자급농가는 「수입 있는 일」로 본다.

「문」 오락용 주점 또는 회전당구의 경품이나 경마등에서 도박성을 띤 행위로 벌어들인 돈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수입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가?

(답) 「수입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단, 오락시설의 경영주는 수입 있는 일로 한다)

「문」 조사기간중 수노 또는 원동력의 고장(사업체내의 사정)으로 전연 취업을 못했을 경우에 「수입 있는 일」을

한 것으로 보는가?

(답) 「수입 있는 일」로 본다. 일시 휴직에 속한다.

다. 실업자에 관한 사항

〔문〕 구직활동자로서 사업개시를 위하여 자본 및 자재를 조달 또는 사업개시의 준비활동을 행하고 있는 경우는 취업이나? 실업이나?

(답) 실업자로 간주한다.

라. 취업시간에 관한 사항

〔문〕 점포의 숙직때문에 가구원이 교대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하고 있는 시간을 「취업시간」에 기입하는가?

(답) 「취업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 농가에서 자가 생산물을 시장에 운반하거나 혹은 판매하는 시간은 「취업시간」에 포함되는가?

(답) 농업의 「취업시간」에 포함된다.

〔문〕 회사나 학교등의 직원이 숙직하였을 때의 수면시간은 취업시간으로 보는가?

(답) 수면시간은 취업시간에서 제외된다.

〔문〕 식량등을 운반하는 하역업자의 승선중의 시간은 취업시간으로 보는가?

(답) 승선, 승차하는 것이 「수입 있는 일」이 되는 직업에 있어서는 승선, 승차의 시간도 취업시간으로 한다.

〔문〕 관청, 회사등에서 직원친목을 위하여 개최되는 연극, 등산, 여행, 운동회등에 참가한 자는 취업한 것으로 보는가?

(답) 근무처의 행사로서 개최된 「오락」에 출석할 경우는

평소의 출근에 준하여 취급한다. 공휴일에 참가한 것은 취업시간에서 제외한다.

「문」 날품노동자가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임금의 지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경우의 근무처와 명칭을 XX직업소개소로 기입할 것인가?

(답) 날품노동자의 경우는 직업소개소 및 기타의 직업소개등을 통하여 일을 하게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고용되었던 사업소의 명칭을 기입한다.

「문」 영화관의 자가발전을 하고 있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의 근무처 사업의 종류는 「발전업」이라 하는가?

(답) 「발전업」이 아니고 「영화관 발전소」라고 기입한다. 이와같이 사업소 자체가 사용하는 발전소나 창고등은 그 사업목적에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소가 임지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주된 사업의 사업종으로 기입한다.

「문」 주부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가구주는 직장에 근무하고 일요일 휴일등에 조역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처의 종업상의 지위는 「자영주」라고 하는가?

(답) 「자영주」로 한다.

「문」 사원 주지의 종업상의 지위는 「자영주」로 하여도 좋은가?

(답) 법인조직체의 경우는 「상용고」라 한다.

(단, 법인체가 아닐 경우에는 「자영주」로 한다.

「문」 「임시고」와 「일고」의 구분은 여하히 구분할 것인가?

(답) 같은 직장에 1개월이상 1년미만의 계약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는 「임시고」라 하고 나날이 혹은 1개월미만의 계약으로 고용된 자는 「일고」로 한다.

또 일급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일지라도 동일한 사업
소에 1개월이상 1년미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자는
「일고」가 아니고 「임시고」로 취급한다.

「문」 도청·군·시·읍·면사무소의 일반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토목, 산림, 기원·기사 등은 직업란에 여하히 기입하는가?

(답)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이 아니고 조사기간중에 한
일을 구체적으로 그대로 기입한다.

「문」 유급의 가족으로서 종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고」
또는 「임시고」로 하는가?

(답) 「상용고」로 한다. 그러나 급료라기 보다 「용돈」같
은 정도는 「가족종사자」이다.

「문」 지계꾼, 품팔이꾼과 같은 날품노동자(단순 노동자)의
종사상의 지위는 「자영주」로 할 것인가? 일고로 할
것인가?

(답) 「일고」에 해당된다.

마. 기타의 조사사항에 관한 사항

「문」 근무처가 결정되어 있으나 조사주간중에는 아직 근무하
지 않은 자의 조사표 (8)란의 질문에 대하여 수입 있
는 일을 하였다고 하는가?

(답) 조사기간중에 아직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
계약이 성립되어 있을지라도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
은 것으로 한다.

「문」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경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보는가?

(답) 취직시험에 출원하여 공부하고 있는 경우는 구직활동으

로 본다. 그러나 진학을 위한 공부는 구직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바. 연령기입은 이렇게 한다.

1. 선생님 연령은 몇살입니까? 라고 묻는다.

2. 표본가구일람표 연령란을 본다.

3. 만나이, 세는나이, 양력, 음력이 확실치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한다.

4. 49세입니다. 라고 할때 출생년월일은 1920년 5월 25일로 기입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49세는 만인지 세는 나인지 또는 출생년월일이 호적상의 것인지 사실상의 것인지를 확인한다.

5. 49세라고 대답한 자의 사실상 출생년월일로서 양력으로 1920년 5월 25일이라고 기입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연령대조표를 본다.

만약, 1968년 2월에 실시하는 조사는 49세가 아니고 47세가 된다.

예 1968.2.20

-) 1920.5.25

47.8.26

만 47세 8개월 26일 되는 사람임.

주: 조사주간의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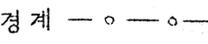
6. 14세에 해당하는 자는 상기 1의 요령을 특별히 주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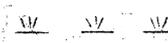
7. 출생년월이 불명이고 추정년령만 알 경우에는 (60) 라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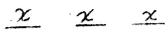
8. 서기, 단기중에 하나도 확실치 않으며 경신생이요라고 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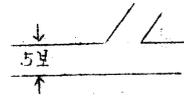
하였을 경우에는 연령대조표에 의거하여 서기 1920년으로 출생월일을 확인하여 연령을 기입한다.

6. 조사구 작성상의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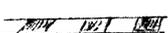
조사구의 경계  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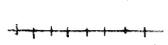
논(畓)  경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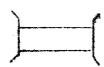
밭(田)  목욕탕 

노로(길)  산봉 

하천  초원지대 

철도  공원광장 및 묘지 

전차궤도 

교량  군용지 

교회  공장지대 및 철노용지 

학교 

관청 

우체국 

6. 가 계 조 사

차 례

I . 가계조사의 개요 -----	137
1. 가계조사란 어떠한 것인가? -----	137
2. 가계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	137
3. 조사대상은 무엇인가? -----	137
가. 조사단위 -----	137
나. 가 구 -----	138
4. 조사사항 -----	139
가.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	139
나. 가계의 저축에 관한 사항 -----	140
다. 가구원 및 주거에 관한 사항 -----	140
라. 가구구성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 -----	140
마. 집세에 관한 사항 -----	140
5. 조사는 언제 하는가? -----	141
6.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	141
7. 지도원 및 조사원이 하여야 할 일 -----	141
II . 조사표류 기입요령 -----	144
1. 가 구 표 -----	144
2. 보조조사표 -----	149
3. 식료품비 조사표 -----	151
4. 면접조사표 -----	155

부 록

1. 가계조사 실시 일정표	171
2. 가계조사용 수지항목 분류표	173
3. 직업분류표	208
4. 은행예금의 종류	220
5.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세 10% 포함) 계산표	230
6. 단위환산표	232
7. 조사대상 가구명부	233
8. 가계조사 가구표	235
9. 표본가구 변동보고서	237
10. 면접조사표 제출명세서	238

가 계 조 사

1. 가계조사의 개요

1. 가계조사란 어떠한 것인가?

가계조사는 국민소비생활의 실태를 통계적으로 관찰하는 조사다. 이 가계조사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32개 도시에 거주하는 전 가구 중에서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일정한 기간(3개월) 동안 어떤 물품을 얼마나 구입하고 어떤 용역에 얼마나 지불했는가 또한 얼마의 식료품을 소비하였는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표본가구에 대한 소득 및 지출을 조사하는 것이다.

2. 가계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조사의 목적은 도시가계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소비생활의 생활수준의 변동상황 및 지역별 차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첫째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필요한 지수가중치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둘째로, 소비수준 및 표준생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며

셋째로, 지출국민소득추계의 자료를 제공하며

넷째로, 구제사업, 임금기준의 결정, 영양분석등 위생적 목적을 위한 필요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3. 조사대상은 무엇인가?

가. 조사단위

가계조사의 조사단위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32개 도시의 전가구를 원칙적으로 대상으로 하나 조사대상으로 적합하지 못한 다음의 가구(부적격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로서

가) 논, 밭등의 총평수 300 평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나) 소, 말 1마리 (운반용제외) 돼지, 양 3마리, 토끼 40마리
닭, 오리 30수, 또는 양봉 5군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다) 누에알 10g 이상을 치는 가구

라) 특용작물 100평 이상을 경작하는 가구를 농가라 한다.

2) 어업 가구

어업에 직접 종사함으로써 가계를 유지하는 가구 단, 민물
고기를 기르므로 유지하는 가구도 이에 포함된다.

3) 단독 가구

1인이 가계를 독립하여 유지하는 가구

4)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가) 음식점, 여관, 하숙업 등을 경영하여 영업수지와 가계수지
를 분리하기 곤란한 가구

나) 연간소득액이 200만원이상 되는 고소득가구

다) 가족의 일부 또는 전원이 부정기적으로 출타하여 일정한
가계를 이루지 못하는 가구

라) 극빈가구로서 정상적인 가계를 이루지 못하는 가구

5) 외국인 가구

나. 가구란 ?

본 조사에서 가구라 함은 거주와 가계를 같이 하는 경제적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한사람이라도 별도로 점유하고 있고 독
립적인 가계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가구로 한다.

그리고 함께 기식 (가계를 위하여 고용한) 하는 식모, 찬모 등은

가구원으로 간주하나 종업상의 점원, 견습인 등의 고용원은 가구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조사대상가구의 구분

조사대상가구를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이외의 가구로 크게 나눈다.

가) 근로자가구는 가구주가 국가기관, 지방공공단체 기타 공사립의 단체(학교, 병원등) 및 회사 등에 고용되어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그 보수로서 봉급 또는 노임을 받음으로써 가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나) 근로자 이외의 가구는 위의 근로자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말한다. 여기서 가구주라 함은 호적상의 가구주와는 관계없이 가족중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원으로서 사실상 가계의 책임자를 말하며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그 가구의 직업을 분류한다.

2개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득이 가장 많은 직업을 가구주의 직업으로 한다.

4. 조사사항

이 조사에서 조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식량소비포함)

1) 수입

가) 소득

- (1) 근로소득
- (2) 기타소득

나) 기타수입(저축에 관한 사항)

- (1) 자산의 감소
- (2) 부채의 증가

다) 전기이월금

2) 지 출

가) 소비지출

- (1) 식료품비
- (2) 주거비
- (3) 광열비
- (4) 피복비
- (5) 잡비

나) 비소비지출

- (1) 조세 및 잡부금
- (2) 지급이자
- (3) 기타

다) 기타지출 (저축에 관한 사항)

- (1) 자산의 증가
- (2) 부채의 감소

라) 기말현금 잔고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부록 2 항목분류표 참조

나. 가계의 저축에 관한 사항

다. 가구원 및 주거에 관한 사항

라. 가구구성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

마. 집세에 관한 사항

조사 가구를 근로자가구와 근로자 이외의 가구로 분류하여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근로자의 가구에 대해서는 지출만을 조사한다.

가계수입지출에 관한 조사사항은 I.L.O.의 항목분류방법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가계수입 지출에 관한 조사사항)

5. 조사는 언제 하는가?

- 가. 이 조사는 매분기 지난 3개월분을 면접 조사한다.
- 나. 식료품비에 관한 조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전 표본가구에 대하여 가장 의뢰한다.
- 다. 식료품비를 제외한 기타품목은 매월 지정한 날자에 전표본가구를 보조조사한다. (P.171 부록 1 참조)

6.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32개 도시의 전가구중 표본으로 선정된 1,800 표본가구에 대하여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근로자가구에 대하여는 소득과 지출을, 근로자 이외의 가구에 대하여는 지출만을 품목별로 조사한다. 이 조사중 식료품비에 한해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조사하되 가계부기장식 방법에 의하여 조사가구는 식료품지출사항을 기입한다. 조사원은 이 기간 중에 수시 기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료품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원이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한다.

7. 지도원 및 조사원이 하여야 할 일

가. 조사용품류의 수령과 배부

조사원은 조사에 앞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사용품을 수령하여 본인이 보관 또는 조사가구에 배부한다.

- 1) 지정통계 조사원증 (조사원이 항시 휴대함)
- 2) 조사원명심서 (조사원이 항시 휴대함)
- 3) 인사장 (가계조사 취지서) (조사가구에 배부)

4) 조사대상가구 명부 (P.233부록 7 참조) (2부 작성하여 1부는 조사통계국에 제출하고 1부는 조사원이 보관한다)

5) 가계조사가구표 (P.235부록 8 참조)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조사통계국에 제출하고 1부는 조사원이 보관한다)

6) 가계조사면접 조사표

(매분기 면접조사가 끝나면 집계하여 지도원에게 제출)

7) 식료품비 조사표 (전담당 표본가구에 대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장시킨후 월말에 회수하여 집계한 결과를 식료품비 집계표에 기입하면서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식료품비 조사표와 지도원에게 소정기일에 제출)

8) 보조 조사표 (면접조사표에 집계 이기한후 면접조사표와 같이 지도원에게 제출)

9) 표본가구변동보고서 (P.237 부록 9 참조) (담당조사구내에 조사가구의 변동시 지도원에게 제출)

10) 조사표제출명세서 (P.238 부록 10 참조) (조사가 끝난후 조사표를 지도원에게 제출시 조사표 제출명세서 1부를 작성 첨부)

11) 표본가구가 전출하였을때 조사원이 변동보고서 (P.237 부록 9 참조) 에 기재하여 지도원에게 제출하면 지도원은 이를 확인한후 즉시 조사통계국에 제출한다.

12) 조사구내 새로운 가구가 전입하였을때

이를 조사통계국에 보고하고 조사적격 가구일 때는 즉시 조사하도록 한다.

나. 조사대상가구 명부작성

조사원은 표본정기교체시 조사통계국의 지시에 따라 담당조사

구의 조사대상가구 명부를 조사구별로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조사통계국에 지정일까지 반드시 도착하도록 한다.

다. 표본가구에 대한 조사의뢰

조사원은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자기가 조사원임을 밝히고 조사대상으로서 적격하면 인사장(취지서)에 주소와 가구주의 성명을 기입한후 조사의 취지를 친절히 설명하고 조사의 승인(기입응락서)을 받는다. 방문한 가구가 조사대상으로서 부적격한 경우와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도원 경유 본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라. 조사불능 가구에 대한 처리

다음과 같은 조사불능 가구가 발생하였을 때 현지조사원은 즉시 그 사유를 지도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조사가구변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도원을 통하여 본부로 부터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조사가구가 전출인 경우

조사가구가 실제 방문했을때 가구가 전출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기본조사시에 작성한 표본가구중 조사개시전에 이미 전출한 경우와 조사를 계속해 오다가 조사단위구외로 전출한 경우를 말한다.

2) 조사가구의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부적격가구로 된 경우, 조사를 계속하다가 조사가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여관, 하숙을 경영하게된 경우

나) 보리점, 음식점을 경영하여 가계수지와 영업상의 수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가구로 변동된 경우

- 다) 농가나 어가로 된 경우
- 라) 단독가구로 된 경우
- 마) 기타 부적격가구로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Ⅱ. 조사표류기입요령

1. 가 구 표

조사원은 조사가구에 대해서 지시된 날자까지 가계조사 가구표를 2부 작성한다. 이 가구표는 조사를 장기간 실시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기입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여 매가구당 2부씩 작성하여 조사통계국과 조사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그리고 조사도중에 조사가구가 타지역(조사단위구외)으로 이주하고 그 집에 타조사구로 부터 전입된 가구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가계조사 가구표를 작성한다.

기입요령 (P.235 부록 8 참조)

가. 난외사항

1) 가구의 구분

본 조사에서는 조사가구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이외의 가구로 구분한다. (P.208 부록 3 직업분류표참조) 그리고 해당난에 ○을 표시한다. (예 근로가구)

2) 조사구번호

소정 조사구번호를 기입한다.

3) 가구번호

본부에서 조사구별로 지정한 표본가구 번호를 기입한다.

4) 가구추출번호

본부에서 지정한 가구추출 번호를 기입한다.

5) 가구주 성명

가구주의 성명은 한자로 기입한다.

6) 작성년월일, 개시년월일 및 기입중지년월일

조사 가구에서 가구표를 작성한 날과 조사시작일 및 중지일을 기입한다.

나. 난내사항

1) 가구원난

가) 가구주와의 관계

첫난에는 반드시 가구주를 기입하며 그 다음에 배우자를 기입하고 다음 난부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방계 등의 순으로 기입하고 가구주와의 관계를 기입한다.

단, 동거인은 맨나중에 기입한다.

예 들면 「가구주」, 「처」, 「차남」, 「장녀」, 「장남」, 「자부」, 「모」, 「식모」의 순으로 기입한다.

나) 성 별

해당되는 곳에 ○으로 표시한다. (예 1남)

다) 연 령

사실상 연령으로 한다.

라) 건강상태

응답자의 주관에 의하여 건강한 경우는 「양」에 ○을 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에 ○을 친다.

마) 근무처, 사업체 또는 학교명

조사기간 평균소득이 많은 직장명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예. 근무처의 경우: 평화영화관, 애싸리미용원, 서울은행종로지점

학교재학생인 경우: 재학하고 있는 학교명 고려대학교 통계학

과 미동국민학교 등과 같이 명확하게 적는다.

사업체명인 경우 : 사업체명을 기입할 때 그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제일연탄공장, 경운물산주식회사, 이만유변호사 사무소

바) 직위와 일의 종류

가무원이 실제로 담당한 일의 종류와 근무처에 있어서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예를 들면 「서무과 인사계장」, 「판매과 사원」, 「동대문시장 지게품팔이」, 「운전수」 등

학생인 경우 학년을 기입한다.

사) 취업년수

주된 근무처에 또는 사업에 종사한 연월을 기입한다.

아) 급료지급 예정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날짜를 일일이 기입한다.

자) 부 업

주된 근무처 또는 사업 이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 근무처명 또는 사업명을 기입한다.

2) 주 거 난

가) 주거의 구별

주거의 구별난에 기재된 자가무상, 관공사택, 셋집중 해당하는 난에 월세 및 월세평가액을 기입한다.

무상의 관공사택인 경우에는 월세평가액을 기입하고 유상인 관공사택인 경우에는 관공사택의 유상월세난에 지급월세액을 기입한다.

셋집란중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액과 월세평가액을 각각 기입한다.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지급하는 집세인 경우에는 「전세 또는 보

증금」란에 보증금을 적고 매월 지급하는 집세란에 월세를 기입한다.

보증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방세의 경우에는 선세 또는 보증금란에 보증금액을 기입하고 「보증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방세」란에 매월 공제하는 금액을 기입한다.

보증금 없이 매월 지급하는 방세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방세란에 매월 지급하는 방세를 적는다.

나) 「셋집월세」란

전세의 경우 : 전세액을 「보증금 또는 선세」란에 기입하고 이를 간접 차가의 지출월세를 참작한 금액을 셋집월세란에 기입한다.

<기입 예 >

셋 집	보증금 또는 선	매월지급 또는 공제하는 집세	월세 평가액
전 세	80,000		6,000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지급하는 집세	30,000	3,000	
선세에서 공제하는 집	24,000	2,000	
매월지급하는 집세		7,000	

주 : 위의 4 가지 종류의 방세중 해당되는 난에만 기입한다.

다) 용도 및 건축년수

보통주택 및 겸용주택의 해당란에 ○표를 한다. 보통주택은 전가옥이 살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며 겸용주택은 살림살이와 사업을 위하여 점포, 양복점, 사무실, 병원등과 같이 겸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옥, 중고옥, 고옥의 해당란에 ○표시를 한다.

라) 대지 및 건평의 평수

대지 및 건평의 전체평수를 기입한다. 단, 주택전체를 세로 얻은 가구는 대지 및 건평의 평수를 기입하고 주택의 일부만을 세로 얻은 가구는 기입하지 않는다.

마) 방 평 수

방평수는 방전체의 평수를 기입한다. 단, 타인에게 세준 방은 제외하고 세든 가구는 세로 얻은 방의 평수만을 기입한다.

평수의 계산기준은 사방 6척 36평방척이 1평이다.

계산예를 들면

6척 4방의 방 2개와 세로 9척 가로 12척인 방이 1개가 있으면

$$6\text{척} \times 6\text{척} \times 2 = 72 \quad 9\text{척} \times 12\text{척} = 108$$

계 180평방척이 된다. 따라서 $180(\text{평방척}) \div 36(\text{평방척}) = 5$ (평)이 된다.

바) 설 비

전등, 수도, 우물, 복욕실의 해당란에 ○표시를 한다.

3) 전조사 가구란

조사진행중에 조사 가구가 전출하였거나 기타 조사불가능한 가구로 되었을 경우중 타조사구로 전출하고 그 집에 타조사구에서 전입된 가구의 가구표를 작성할 때 전조사 가구의 중지이유를 간단히 기입하고 조사중지 연월일을 「기입중지년월일란」에 적는다.

4) 비 고 란

상기 각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 혹은 상기 각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적는다.

예 : 자가의 일부를 타인에게 세준 경우 매월 받아 들이는 집세를 기입 (월평균소득 총액란) 한 지난 1개월의 소득을 각각 조사하여 1개월간 소득을 기입한다.

5) 조사 가구 소재지 약도란 (이면)

가) 전면에 가계조사 가구표 기입이 완료되면 가구표 이면에 조사 가구의 소재지 약도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나) 약도기입시 조사 가구 소재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중요한 표석을 기입하고 해당가구의 표시 (※)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보조조사표

보조조사는 가계를 위한 수입, 지출, 항목 중에서 주거, 광열, 피복, 잡비의 전소비지출과 지급이자 및 기타의 비소비지출 항목을 월 3회 (보조조사기간인 1일~10일, 11일~20일, 21일~30일의 다음달인 11일, 21일, 다음달 1일) 소득, 기타수지, 조세 및 잡부금의 조사는 월 1회 (다음달 1일)에 각각 보조조사 항목일람표 (조사표 참조)에 의해 조사한다.

가. 보조조사에 있어서의 일반적 유의사항

1) 보조조사 결과 (3권씩)는 매분기초의 면접조사시에 필히 지참하여 지나간 3개월간의 수입과 지출 조사에 참고 활용하여야 할 중요한 조사이므로 누락, 착오, 미비, 불성실등 조사상 잘못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할 것

2) 보조조사표는 조사구당 1개월에 1권씩 사용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보조조사표는 가구당 3 Page (지출조사란의 면과 소득 및 기타 수지조사란의 양면)를 가지고 1개월 3회 지정된 시일에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4) 보조조사 품목일람표의 조사항목중 부호 () () () 등 () 표지를 한 부호에 해당하는 「기타란」 또는 「이밖에 ○○란」 및 소득조사 항목의 기타란 조사에 있어서는 P.173~207 부록 2 「수지항목분류표」의 내용설명란에 설명되어 있는 나열품목의 구입 여부를 하나 하나 질문 조사하여 그 금액을 총괄 기입하여야 한다.

5) 월 3회 분기 9회의 보조조사에서 얻어진 전 조사품목의 구입량 및 금액을 각 품목별로 3개월간의 지출을 각각 집계하여 당해 분기 면접조사표의 각해당 동종 품목에 이기하여 면접조사시 재확인토록 한다.

6) 월 1회 조사의 소득 및 기타 수지조사와 조세 및 잡부금의 조사에 있어서 「근로소득」란의 가구주 및 기타 가구원의 소득조사는 수령봉급의 총액, 즉 원천과세(소득세) 각종 회비등의 잡부금등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기입하여야 하며 이 기입된 총액 중에서 소득세등의 원천과세 및 각종 회비, 잡부금등 공제액을 별도조사 파악하여 비소비지출의 「조세 및 잡부금」란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공무원인 경우 공제액중 국민저축, 기여금등은 면접조사표의 "기타수지"의 「보험」란에 포함시켜야 한다.
(P.230 부록 5. 갑종근로소득세 계산표참고)

7) 조사기입된 보조조사표는 편철하여 당해 분기 면접조사표의 제출시에 동봉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입요령

1) 가구번호

지정된 조사 가구의 번호를 기입한다.

2) 조사월일

지정된 보조조사 방문시일을 기입한다。

3) 부호 및 품목

정해진 보조조사 항목중에서 보조조사기간에 있어서 실제 구입한 물품이나 비소비지출 또는 기간내에 얻어진 소득액, 자산의 증감, 부채의 증감을 조사기입하고 해당부호를 부친다。

4) 수량 및 금액

수량은 부록 2 수지항목분류표의 지정단위에 의하여 구입수량을 기입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기입한다。

5) 합계란 : 현금 및 외상+현물지출+자가생산의 금액을 기입한다。

6) 현금 및 외상 : 현금으로 구입했건 외상으로 구입했건 현금 또는 자가생산품을 주고 구입한 물품을 자가에서 소비한 금액만 기입

7) 현물지출 : 현금 및 외상으로 구입한 것이나 자가생산물을 자가에서 소비하지 않고 현물로 타가구에 증여한 것을 기입

8) 자가생산 : 자기 집에서 생산한 물품을 자가에서 소비한 것으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입

9) 소득의 자가생산물 평가액은 자가에서 소비했건 타가구에 주었던 자가에서 생산한 것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입하고 기타소득의 현금에 포함토록 계산할 것

3. 식료품비 조사

수시로 구입하는 식료품을 1개월에 한번씩 조사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1개월간을 조사기간으로 하여 피조사가구로 하여금 식료품비 지출을 기장토록 하였다。

조사원은 식료품비 조사표를 해당표본 조사 가구에 조사개시전에 배부하여 기입 의뢰하고 그 기간중에는 적어도 4회 내지 5회 조사 가구를 방문하여 기입을 지도한다.

기입이 완료되면 조사 가구에서 동조사표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한 곳을 보충 수정하고 이를 회수한 다음 소청의 집계를 한다.

가. 식료품비 조사표의 기입지도

1) 조사표는 늦어도 조사기간 개시 2일전에 조사 가구에 배부하여 기입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조사원은 조사표를 배부하기 전에 표지에 「기입기간」과 「조사기」, 「조사구」, 「가구번호」 및 「가구구분」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조사표에는 조사 가구의 가구주 성명 또는 다른 표식을 해석하는 안된다.

4) 조사표 배부시는 기입기간을 조사 가구에 명시하고 기입요령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한다.

5) 「외식」은 보조조사표, 조사시기 11일, 21일, 다음달 1일에 반드시 기입누락이 없나 확인하여야 한다.

6) 기입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하여서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였을때 기입하여야 한다.

7) 주요품목 소비 및 재고량 조사에 있어서 「조사개시전 재고량」은 조사표 배부시에 나머지는 조사표 회수시에 기입한다.

나. 조사표의 기입내용검토, 회수 및 정리

지정된 조사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그 다음날에 조사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조사표의 회수가 늦어지면 분실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의 소멸로 기입불비에 대하여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조사가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2) 조사원은 조사표를 회수할 때 조사가구에서 기입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내용검토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기입기간의 상이 여부와 일자의 기입여부

나) 품목표시의 명확성

다) 자가생산물의 평가

라) 수량 및 단위의 정확성

마) 영업상 또는 사무실에서 쓰기 위해 구입한 품목의 포함 여부

이와같은 불명한 숫자의 유무를 검토한 후 틀린 점이 있으면 즉시에서 틀어 확인한 다음 수정 기입하여 조사표를 회수한다.

3) 식료품비 집계요령

회수된 조사표는 다음의 요령으로 집계한다.

가) 부호의 기입

조사표 뒷장에 있는 식료품비 집계표에 표시된 부호를 각 구입품목의 부호란에 기입한다.

나) 품목별 집계

부호의 기입이 끝나면 동일한 품목을 정리하여 다음 보기와 같이 집계한다.

<식료품비 지출의 품목별 정리 집계예시>

부호	11101 (쌀)		11201 (쇠고기)		11401 (배추)		12004 (비빔밥)	
	수 량	합 계 (금액)	수 량	합 계 (금액)	수 량	합 계 (금액)	수 량	합 계 (금액)
1 개 월 간 의 지 출	30 ℓ	1,500원	600 g	④ 400원	3.75 kg	40원	2 그릇	200원
	40 ℓ	2,000원	300 g	200원	7.5 kg	70원	1 그릇	100원
			600 g	380원	1.5 kg	⑤ 150원	5 그릇	500원
					3.75 kg	60원		
계	70 ℓ	3,500원	1,500 g	980원	30 kg	320원	8 그릇	800원

부호 11201의 쇠고기에 ④이라고 표시한 것은 현물지출로 이
가구가 쇠고기에 980원을 지출하여 1,500g의 쇠고기를 사서
900g의 580원 만큼은 자가에서 소비하고 600g(1근) 400
원 어치는 타가구에 증여한 것이다. 11401(배추)의 15kg의
배추는 자기 집에서 생산하여 소비한 것으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
여 150원 정도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위의 예시와 같이 한
달 간의 수량과 금액의 계를 계산한 다음 식료품비 집계표에 이기
하고 그중 1매는 조사원이 보관하여 분기 3매를 동종 품목끼리
수량과 금액을 합계하여 중분류를 계산하고 중분류를 합하여 식료
품비를 계산한다.

다) 가계조사 면접조사표로 이기

식료품비 집계표에 집계된 식료품비 집계표 3매를 품목
별로 합계하여 가계조사 면접조사표에 있는 지출집계표 소비지출의
식료품비 항목에 이기한다.

라) 식료품비 조사표의 처리

매월 말일의 식료품비 조사가 끝나면 소정의 집계를 마

친 다음 식료품비 집계표 1매를 뜯어 보관하고 다음달 7일까지 (P.171 부록 1 참조) 해당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면접조사

가. 조사원은 매분기초(1일~7일)에 조사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지난 3개월간의 식료품비 이외의 기타 가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표 순서에 따라 보조조사표를 참조하여 질문 조사한다.

면접조사에 있어서 일반적 주의사항

1) 조사원은 면접조사시 가구표, 보조조사표 및 식료품비 집계표(3개월분 3매)를 반드시 소지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야 한다.

2) 가계와 영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특히 주거비, 광열비, 잡비, 조세 및 잠부금지출중에 사업에 속하는 부분은 조사하지 않는다.

3) 조사표의 난이 「합계」, 「현금 및 외상」, 「현물지출」, 「자가생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합계」란은 현금 및 외상현물지출, 자가생산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4) 수량은 표시한 단위에 따라 환산한 후 기입한다.

5) 특히 지출조사에 있어서 주거, 광열, 피복 및 잡비의 기타란 조사는 부록 2 P.173 「가계조사수지항목분류표」에 있는 내용설명을 참조하여 질문 기입토록 한다.

6) 숫자는 아라비아(1, 2, 3.....) 숫자로 써야 하며 기입하는 모든 금액은 천단위에 반드시 단위를 표시하는 점을 찍어야 한다.

나. 기입요령

1) 표지 각란의 기입

가) 조 사 기

이 난에는 해당년도의 마지막 숫자에 해당하는 숫자에다 매분기 즉 1/4 분기는 1, 2/4 분기는 2, 3/4 분기는 3을 붙여서 기입한다. 예를 들면 1969년 1/4 분기에 관한 조사이면 01로 표시한다.

나) 조사원 번호

지정한 조사원 번호를 기입한다.

다) 조사구

지정한 조사구 번호를 기입한다.

라) 가구번호

지정한 조사가구 번호를 기입한다.

마) 가구원수

조사기간중의 월평균가구원수를 기입한다.

바) 취업인수

조사기간중 월평균 취업인수를 기입한다.

사) 가구주의 연령

만연령을 기입한다.

아) 가구구분

근로자 가구는 「근」, 근로자의 가구는 「외」라고 기입한다.

자) 14세 이상 가구원수 및 14세 이상 취업인수는 가구주를 제외한 인원수를 기입한다.

2) 가구실태란의 기입

가) 가구주 및 입주형태에 대하여

(1) 성 별 : 남녀의 구별을 해당사항에 표시한다. (예. 남)

(2) 연 령 : 만연령을 기입한다.

(3) 근무처 또는 사업체명 (산업) 및 직업 :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입한다.

(4) 종사상의 지위 : 사업체에 있어서 종사상의 지위를 기입한다.

(5) 가구주소득 : 소득란 (면접조사표)에 나타난 가구주의 3개월간의 소득을 기입한다.

(6) 입주형태 : 해당란의 숫자에 「○」으로 표시한다.

나) 가구원 전체에 대하여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를 연령계급별 및 성별로 해당란에 인원수를 기입한다.

다) 조사기간중 가구원의 변동

(1) 가구실태란에는 이미 작성한 가구표의 기재내용에 변동된 사항만을 조사 기입한다.

(2) 직업이 변동한 가구원은 「변동전의 직업」란에 전의 직업을 기입해야 한다.

(3) 조사기전의 것을 명확히 기입해야 한다.

(4) 가구원이 모두 직업이 없는 가구는 생계유지 방법해당란에 상세히 설명 기입해야 한다.

조사원은 가구구성에 변동이 발생하였으면 면접조사가 끝나는 즉시로 그 변동사항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가계조사 가구표에 정리 기록하고 지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방 세

방세조사는 가구표의 기재사항을 미리 이기한 후, 방세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수정 기입한다. 방세조사는 반드시 조사시점에 있어서의 월세 또는 평가한 월세 (1개월분)를 조사하여 기

입하고 주거비중 지출방식 및 땅세는 반드시 3개월분을 기입한다.

4) 용도별 지출조사

이는 용도별분류 (지출품목을 구입한 목적에 따라서)에 의한 지출품목으로서 이미 소비지출에서 조사 파악한 것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다.

가) 교제비

교제, 증여는 연말년시, 추석등의 하장(賀狀)을 포함한 선물 및 친교를 위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비용중에서 순전히 손님에게 소비지출된 것을 파악한다.

나) 관혼상제비

자가의 약혼, 결혼, 회갑, 제사, 장례 또는 이밖에 들, 생일 잔치등 관혼상제를 위하여 지출된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소비된 물품을 품목별로 조사한 다음 그 합계액을 해당란에 기입하고 관혼상제별로 구분 표시한다.

5) 항목별 집계표

가) 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

가계수입에 관한 조사는 피조사 가구에서 응답하기를 가장 꺼려하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본조사 취지의 상세한 설명을 하여 정확한 수입실태를 파악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기억하기 곤란한 항목과 고의로 응답하기를 거부하는 수입 항목의 누락으로 지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점을 유의하여 소득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근로소득 (가구주의 소득+가구원의 소득)

이는 원천과세, 각종 회비 및 물품대금등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으로 파악하여 「가구주의 소득」과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의 소득」으로 구분 파악하되 후자는 누락하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치료, 이발 또는 통근차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시점의 식가로 평가 환산하여 모두 소득으로 포함시키며 동시에 소비지출된 것으로 본다.

(2) 기타소득

근로소득 이외의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가) 수입이자 및 배당금

대여금, 예금, 저금, 권리금, 물품대여금 등에 의한 이자 및 국, 공, 사채 등의 증권투자에 의한 이익배당금을 기입한다.

(나) 수입방세 및 땅세

남에게 집을 세준 경우 매월 받아 들이는 월세 및 보증금을 받고 매월 받아 들이는 집세 및 보증금을 받고 매월 받아 들이는 집세 및 전세에서 공제하는 집세는 이 항목에 포함시킨다.

다만,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은 것은 기타 수입의 「개인 및 사설단체에서 빌린 금액」란에 포함시키고 반대로 조사기간중 전세금 및 보증금을 준 경우는 기타 지출의 「개인 및 사설단체에 빌려준 돈」란에 기입한다.

(다) 부업소득

가구주 및 가구원이 부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은 수입을 기입한다.

(라) 수증 및 보조

교제, 축의, 조의, 연말년시의 수증금 등과 생활보조를 위하여 부모, 친지등으로 부터 받은 보조금을 포함한다.

그러나 수증 또는 보조에 의한 현물수입은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마) 기 타

상기 이외의 소득으로서 예를 들면 헌신문을 판돈, 경품권, 경마, 오락 등의 상금 또는 습득금 기타 음성수입(예. 출장금 중에서 잔여금)은 이에 해당된다.

(바) 자가생산물 평가액

자기집 300평 미만의 전답, 하천, 바다, 산야 등에서 채소, 닭, 계란, 어개들, 고사리, 도라지 등을 재배, 생산, 채취, 수렴하여 얻은 수확물을 자가에서 소비할 경우에 시장가격에 의하여 그 평가액을 조사포 현물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자가소비가 아니고 영리를 위한 판매의 경우에는 부업수입으로 한다.

콩을 구입하여 두부, 콩나물, 간장, 된장 등을 만들거나 무연탄을 구입하여 19공탄을 만든것 등은 자가생산이 아니다.

나) 비용지출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 항목의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① 품종(1) 소비지출

식료품비 및 기타 품목지출 항목의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가) 식료품비

식료품비의 월간지출액 1개월분(조사기간)을 합산하여 각 품목마다 3배한 후 해당 각항목에 이기한다.

(나) 주거비

① 지출방세 및 땅세

매월 실제로 지급한 월세액을 조사하여 3개월 합

한 금액을 기입한다. 전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지급하는 집세」의 경우에 매월 지급하는 집세, 전세에서 매월 공제하는 집세의 경우 매월 공제하는 집세 및 「매월 지급하는 집세」의 3개월 합계액을 기입한다.

② 자가평가액

자가평가액은 자가, 전세 및 무상주택(관공서 또는 회사에서 공여하는 가옥)의 경우 이를 간접차가의 지출월세를 참작하여 그 월세를 평가하는 것이며(사용하고 있는 방안 평가할 것임) 총평가액 중에서 재산세, 화재보험료의 지불 및 가옥수리비용은 공제한다.

그리고 가옥의 일부를 남에게 빌려준 경우나 이밖의 사무실,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가계를 위하여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방안을 평가한다.

(다) 피복비

① 기타 피복비

장신구중 고가의 보석반지 등의 순수한 축재(畜財)의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기타 지출의 자산의 증가중 「토지, 가옥, 이밖의 재산구입」란에 포함시킨다.

(라) 잡비

① 교육비 및 교양오락비

유학(국내)중인 자녀에 대한 송금은 교육비, 교양오락비 및 하숙비로 나눈다. 이것중 교육비는 납입금, 가정교사료 수학여행비, 문방구, 교양오락비는 교과서, 신문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하숙비는 기타 잡비중 숙박료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② 기타 잡비중의 증여금

교회, 사찰, 절인, 기부금 등과 같이 타가구에 이전 되지 않는 금액을 증여금으로 잡고 생활보조를 위하여 타가구에 이전 지출되는 경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이전지출한 금액만큼 지출가구측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실제소득으로 한다.

또 이밖의 타가구에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 지출되는 현물증여는 그 품목분류에 따라 각 해당항목에 포함시킨다.

식료품을 증여한 경우에는 당연히 식료품조사시에 처리된 것으로 보고 이는 면접조사시에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2) 비소비지출

조세 및 잡부금중 주부가 알기 어려운 근로소득세(원천과세), 재산세 등은 수시로 조사하는 보조조사표를 참고로 하여 각 가구원의 근로소득세 및 기타 세금을 조사 기입하며 부록의 봉급계산표를 참조할 것

(3) 현물지출총액

소비지출중 5대비목에 있어서 지출한 총액을 기입한다.

6) 저축상황

가) 기타수입

(1) 자산의 감소

(가) 저금인출

「저금에서 찾은 금액」을 말하며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예금한 금액중에서 조사기간 동안에 찾아 쓴 금액을 각각 조사하고 이를 합산하여 저금인출란에 기입한다.

(나) 생명보험인출

조사기간동안 보험을 탄 경우 민영생명파 기타(국영 생명보험, 농협생명공제)로 분리하여 조사하고 이를 합산하여 생명 보험인출란에 기입한다.

(다) 유가증권매각

유가증권을 판 금액은 국채와 기타(주식, 금융채권 및 사채(社債))로 분리 파악하고 이를 합하여 유가증권매각란에 기입한다.

(라) 계 인출

조사기간 동안에 계를 탔을 경우 조사기간까지 실제로 계에 불입한 금액만 계잔 금액으로 기입하고 나머지 계잔 금액은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간주하여 「계에서 빌린 금액」으로 부채의 증가란중 「빌린돈」에 기입한다.

(마) 부동산매각

토지와 가옥을 판 금액만 조사한다.

(바) 기 타

다음 ①②③항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① 기여금 받은 금액

이것은 퇴직을 하였을 때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이다.

② 빌려준돈 받은 금액

개인 및 사설단체에 빌려준돈 중에서 받은 금액을 기입하고 이자는 소득란의 수입이자 및 배당금란에 기입한다.

③ 기 타

토지, 가옥을 제외한 기타 재산을 판 금액으로 순수한 축재목적이나 계속적인 사업이 아닌 일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구입 저장하였던 보석, 양곡, 기자재 등의 매각금액을 조사하며 행
우회비라든가 직장공제금을 받았을 경우도 이 난에서 파악한다。
또한 사내예금을 탄 금액도 포함된다。

(2) 부채의 증가

(가) 빌린 돈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빌린금액」 「개인 및
사설단체에서 빌린 금액」 「계에서 빌린 금액」 「보험에서 빌린
금액」 등을 모두 이 난에서 조사한다。 적금과 계에 있어서는 조
사기간중 적금이나 계를 탕을 경우 총 찾은 적금액과 계금액에서
조사기간 마지막 달까지 실제 불입했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
입한다。

(나) 월부 및 외상값

① 조사기간 전에 월부 및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중
조사기간에 갚은 것은 부채의 감소에 기입되나 갚지 못한 잔여액
은 이 난에 속하지 않는다。

② 조사기간중에 월부 및 외상값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조사기간 말까지 완불치 못한 나머지 금액을 기입한다。

특히 주의할 것은 조사기간중 외상값으로 구입한 물건의 수량과
금액이 반드시 소비지출중 해당 항목에 기입되어야 한다。

나) 전기이월금

전조사기말에서 다음 조사기로 넘어온 금액을 말한다。

다) 기타지출

(1) 자산의 증가

(가) 저 금

은행저금과 우체국저금으로 분리하여 조사 기입하고

저금란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입한다。

① 은행

은행저금에는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및 금전신탁이 포함된다。(별표 은행예금의 종류 참조)

② 우체국

우편저금의 종류에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국민저축조합예금, 대체예금 등의 4종이 있다。

(나) 생명보험

민영생명보험과 기타(국민생명보험, 농협생명공제)로 나누어 조사 기입하고 생명보험란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입한다。

① 민영생명보험

민영생명보험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저축성보험으로서 사망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생존보험, 양로보험 및 단체퇴직보험 등이 포함된다。

② 기타

기타에는 국민생명보험, 농협생명공제가 포함되며 국민생명보험은 정부(우체국)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액의 지불을 계약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대상으로 정부(우체국)에 보험료를 불입할 것을 계약함을 말하며 이의 종류에는 종신보험, 양로보험, 직장보험, 자립보험 등이 있다。농협생명공제는 농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민영생명보험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종류를 조합에다 공제금의 형식으로 불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 유가증권

국채(공채, 지방채 포함)와 기타(주식금융채권, 사채)

로 나누어 조사 기입하고 이를 합산하여 유가증권란에 기입한다.

(라) 계

계에 들고 있는 경우 타기 전에 불입한 금액만을 조사 기입한다.

(마) 부동산취득

토지와 가옥을 산 금액만 기입한다. 부동산 매입액에 부동산등기료와 취득세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이 난에서 주의 할 것은 주택의 세부적인 수리가 아닌 가옥의 원형을 변경한 대규모 증축이나 개축의 경우는 이에 소모된 비용을 이 난에 기입한다.

(바) 기 타

① 기 여 금

직장에서 봉급의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할 때 찾는 것으로 조사기간중 기여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조사 기입한다.

② 빌려준 돈

개인 및 사설단체에 빌려준 돈을 조사 기입한다. 또 전세를 얻었을 경우 전세금으로 준돈도 이 난에 해당된다.

③ 기 타

토지, 가옥 이외의 재산을 산금액이 이 난에 해당된다.

즉 장신구류중 고가의 보석을 순수한 축재의 목적으로 구입한 것과 계속적인 사업 (비법인) 과는 관계없이 일시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기재나 물품을 구입한 것이 이에 포함되고 직장공제금 (행우회비 포함) 의 지출도 이 난에서 조사한다.

또한 사내예금도 이 난에서 파악한다.

(2) 부채의 감소

(가) 빌린돈 갚은 금액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빌린돈 갚은 금액」 「개인 및 사설단체에서 빌린돈 갚은 금액」 「계에서 빌린돈 갚은 금액」 「보험에서 빌린돈 갚은 금액」을 모두 합하여 이 난에 조사 기입한다. 적금과 계는 조사기간 전에 돈을 탄 경우 조사기간중 불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나) 월부 및 외상값 갚은 금액

① 종전방법과 동일하며 조사기간(3개월)중에 월부 및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였다가 기간중에 모두 갚았을 경우는 저축상황에서는 파악치 않고 현금구입과 동일하게 소비지출중 해당란에만 파악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간 전에 월부 및 외상으로 구입하고 그 금액을 완불치 못하고 외상으로 넘어온 잔여액을 조사기간중 갚은 금액만 이 난에 기입한다.

③ 조사기간중에 월부 및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기간중에 완불치 못했을 경우는 그 금액중 갚은 금액은 기입치 않고 기간중에 갚지 못한 잔여액은 부채의 증가중 월부 및 외상값에 기입한다.

이때 특히 주의할 것은 기간중에 기입한 물건은 외상이전 완불이전 반드시 그 물건의 수량과 금액이 소비지출의 해당란에 기입되어야 한다.

라) 기말현금잔고

조사기말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을 말한다.

미) 용도별 조사 및 집계요령

용도별 조사는 조사기간중 소비지출 내용을 원칙적으로 품목별로 조사된 것을 다시 용도에 따라 교제비 및 증여비와 관혼상제비로 지출된 것을 조사 집계하는 것이다. 용도별 조사에서는 크게 둘로 구분 조사 집계한다.

즉 교제비 및 증여비와 관혼상제비로 나누어 각각 현금과 현물로 파악한 후 현물을 다시 품목별로 분류하여 5대 비목으로 집계한다. 단, 관혼상제비는 조사기간중 조사가구에서 결혼, 회갑, 약혼, 계사 및 장례를 치렀을 경우에 지출한 것을 말한다.

부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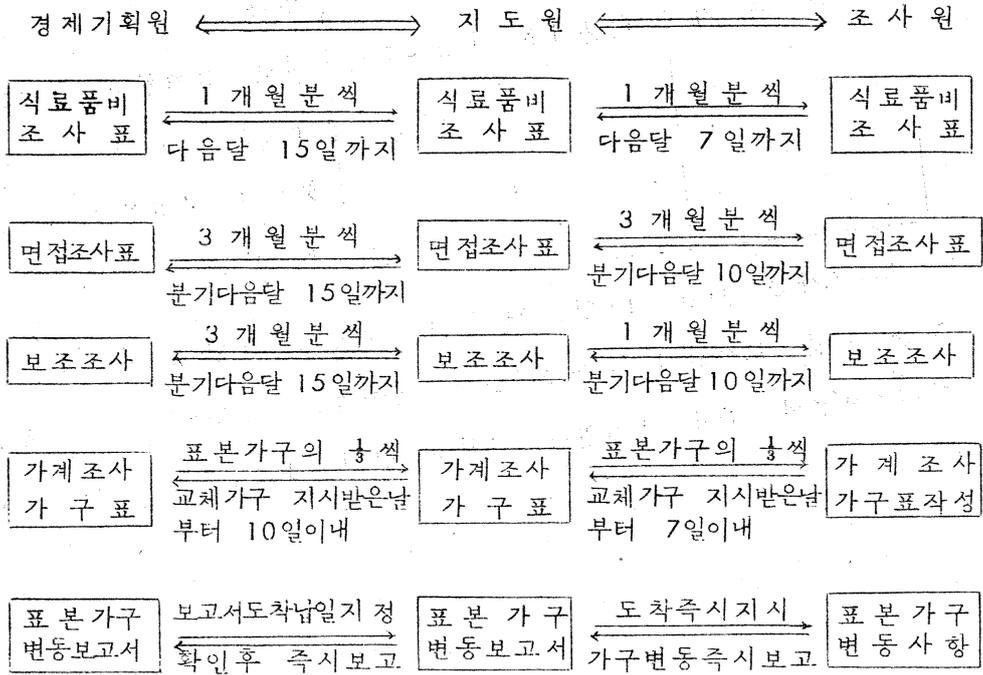
<부록 1>

가계조사 실시 일정표

조사구분	실시일자	비고
식료품비 조사	매월 1일~말일 (30일간)	조사 완료한 조사표를 매월 7일까지 지도원에게 제출한다.
면접조사	매분기초 1일~7일	지난 3개월간의 수입지출 사항을 조사완료후 분기 첫달의 7일까지 지도원에게 제출

보조조사는 매월 11일, 21일 및 다음달 1일에 각 해당조사구역을 방문 조사하여 보조조사표의 제출기일은 조사완료한 매분기 면접조사표와 같이 1개월에 한권씩 분기 3권을 제출한다.

가계조사업무의 관리제보



<부록 2> 가계조사용 수지항목 분류표

가계수지항목의 분류 요지

가. 이 가계수지항목의 분류는 국제노동기구 및 국제연합통계기구에서 추천하는 분류방법을 그 기저로 삼아 품목별 분류에 따라 또 우리나라 국민생활 실태에 적합하게끔 분류하였다.

나. 이 가계수지항목의 분류는 현금 및 현물의 수입지출에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다. 가계의 지출은 구입한 품목에 따라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의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및 기타 지출로 분류하였다.

라. 지출항목은 시세의 변화 수입증감에 따르는 일반 소비성향등 지출 weight의 증감을 참작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마. 수지항목 분류중 생활수준 측정을 위하여 자가소유일 경우에는 이를 인접 차가의 방세를 참작하여 수입 자가평가액 항목을 설정하고 동시에 지출 자가평가액 항목도 설정하였다.

수지항목 분류총괄표

부 호	항 목	부 호	항 목
500	소 득	114	채 소 및 해 초
510	근 로 소 득	115	과 실
511	가 구 주 소 득	116	조 미 료
512	기 타 가 구 원 소 득	117	가 공 식 품
520	기 타 소 득	118	과 자 및 청 량 음 료
521	수 입 이 자 및 배 당 금	119	알 쿨 음 료
522	수 입 방 세 및 땅 세	120	외 식
523	부 업 소 득	130	주 거 비
524	수 증 및 보 조	131	지 출 방 세
525	기 타	132	지 출 땅 세
526	자 가 생 산 물 평 가 액	133	자 가 평 가 액
		134	수 도 료
000	비 용 지 출	135	주 택 수 리
100	소 비 지 출	136	가 구 집 기
110	식 료 품 비	140	광 열 비
111	곡 물	141	전 기 료
112	육 어 개	142	연 료
113	유 량	143	기 타 광 열

부 호	항 목	부 호	항 목
150	피 복 비	163	문 방 구
151	의 복	164	교 육
152	직 들 면 사	165	교 양 오 락
153	양 말	166	교 통 통 신
154	신 발	167	담 배
155	장 신 구	168	기 타 잡 비
156	기 타 피 복	200	비 소 바 지 출
160	잡 비	210	조 세 및 잡 부 금
161	의 료	220	지 불 이 자
162	미 응 위 생	230	기 타
		400	※ 현 돌 지 출 총 액

저 축 상 황

부 호	항 목	부 호	항 목
600	① 기 타 수 입	300	② 기 타 지 출
610	③ 자 산 의 감 소	310	④ 자 산 의 증 가
611	저 금 인 출	311	저 금
612	은 행	312	은 행
613	우 체 국	313	우 체 국
614	생 명 보 험 인 출	314	생 명 보 험
615	민 영 생 명	315	민 영 생 명
616	기 타	316	기 타
617	유 가 증 권 매 각	317	유 가 증 권 매 각
618	국 채	318	국 채
619	기 타	319	기 타
620	계 인 출	320	계
621	부 동 산 매 각	321	부 동 산 취 득
622	기 타	322	기 타
623	기 여 금 받은 금액	323	기 여 금
624	빌려준돈받은금액	324	빌 려 준 돈
625	기 타	325	기 타
630	⑤ 부 채 의 증 가	330	⑥ 부 채 의 감 소
631	빌 린 돈	331	빌 린 돈 갚은 금액
632	월 부 및 외 상 값	332	월 부 및 외 상 값 갚은 금액
640	전 기 이 월 금	340	기 말 현 금 잔 고
650	수 입 기 입 누 락	350	지 출 기 입 누 락

용 도 별 분 류

부 호	항 목
700	교 제 및 증 여 비
710	현 금
720	현 둘
721	식 료 품 비
722	주 거 비
723	광 열 비
724	피 복 비
725	잡 비
730	관 혼 상 제 비
740	현 금
750	현 둘
751	식 료 품 비
752	주 거 비
753	광 열 비
754	피 복 비
755	잡 비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수 입	소득이외의 수입 및 전월이월금 지출되는 현금의 모든 원천은 물론 부채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에 의한 현금등 조사기 간중에 수입되는 전수입
500	소 득	근로자가 근무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이밖에 주로 재산소득 부업으로 부터의 수입과 같 은 실질적인 소득
510	근 로 소 득	가구주 및 가구원이 근무처에서 근무에 의 하여 받은 일체의 수입 즉 봉급, 노임, 수 당, 상여금, 가불금 등을 포함하여 세금 각 종 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511	가 구 주 소 득	가구주가 근로에 의하여 받은 일체의 수입
512	기타 가구원소득	가구주를 제외한 주부, 자녀, 기타 가구원이 근로에 의하여 받는 일체의 수입
520	기 타 소 득	근로소득 이외의 경상소득으로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 수입방세 및 땅세 구제보조로 받는 현금 집에서 생산한 물품 부업소득등 이밖의 근로이외의 일체의 경상소득
521	수입이자및배당금	대여금, 예금, 저금, 권리금, 물품대여 등에 의한 이자 및 국, 공, 사채 등의 증권과 신탁투자에 의한 배당금
522	수입방세및땅세	타인에게 대여한 가옥 및 토지의 임대료
523	부 업 소 득	가구주 및 가구원이 부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은 수입 (연초소매, 원고료, 편물, 구명가게

부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524	수 증 및 보 조	<p>샴바느질 등의 수입)</p> <p>교제, 축의, 조의품 등에 의하여 받은 현금 및 생활보조비로 받은 보조금 (현물수입은 일체 소득으로 간주치 않음)</p>
525	기 타	<p>상기 이외의 기타 소득으로서 헌신분 판매액 상품권을 받았을때 복권, 경품권, 경마, 기타 오락경기 등에 의한 상금 득금 또는 퇴직금등 음성수입 (출장비중 잔여금) 등 이밖의 경상수입 일체</p>
526	자가생산물평가액	<p>자기집 300평 미만의 전답, 산야, 하천, 바다에서 채취, 수렵, 재배 생산하여 자가에서 소비한 수확물 (채소, 어개물, 고사리, 닭고기, 계란등) 단, 자가소비가 아니고 영리추구를 위한 판매의 경우는 제외되며 부업수입으로 한다。</p>
600	기 타 수 입	<p>가구의 경제적인 재산상태에는 실질상의 증가 없이 다만 재산의 형태가 변화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수입</p>
610	자 산 의 감 소	<p>재산 및 채권 (유가증권) 을 매각 또는 처리함으로써 이를 현금의 형태로 전형하였을 경우</p>
611	저 금 인 출	<p>종전의 "저금에서 찾은 금액" 을 말하며 금융기관 우체국등에 예금한 금액중에서 조사기간에 찾아 쓴 금액을 각각 조사하고 이를 합산하여 저금인출란에 기입한다。</p>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612	은 행	
613	우 체 국	
614	생 명 보 험 인 출	조사기간동안 보험을 탄 경우 민영생명과 기타(국영생명보험, 농협생명공제)로 분리하여 조사하고 이를 합산하여 생명보험 인출란에 기입한다.
615	민 영 생 명	
616	기 타	
617	유 가 증 권 매 각	유가증권을 판 금액은 국채와 기타 주식, 금융채권 및 사채로 분리 파악하고 이를 합하여 유가증권매각란에 기입한다.
618	국 채	
619	기 타	
620	계 인 출	조사기간동안에 계를 탔을 경우 조사기간까지 실제로 계에 불입한 금액만 계탄 금액으로 기입하고 그외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입하지 않는다.
621	부 동 산 매 각	토지와 가옥을 판 금액만 조사한다.
622	기 타	① ② ③ 항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623	① 기여금받은금액	이것은 퇴직을 하였을때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이다.
624	② 빌려준돈 받은 금액	개인 및 사설단체에 빌려준 돈중에서 받은 금액을 기입하고 이자는 소득란의 수입이자 및 배당금란에 기입한다.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625	③ 기 타	토지, 가옥을 제외한 기타 재산을 판 금액으로 순수한 축재목적이나 계속적인 사업이 아닌 일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구입 저장하였던 보석, 양곡, 기자재 등의 매각금액을 조사하며 행우회비라든가 직장 공제금을 받았을 경우도 이 난에서 파악한다. 또한 사내 예금을 탄 금액도 포함한다.
630	부 채 의 증 가	① ② 를 합산 기입한다.
631	① 빌 린 돈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빌린 금액」 「개인 및 사설단체에서 빌린 금액」 「제에서 빌린 금액」 「보험에서 빌린 금액」 등을 모두 이 난에서 조사한다. 적금과 계에 있어서는 조사기간중 적금이나 계를 탔을 경우중 찾은 적금액과 계금액에서 조사기간 마지막 달까지 실제 불입했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한다.
632	② 월부및외상값	㉠ 조사기간전에 월부 및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중 조사기간에 갚은 것은 부채의 감소에 기입되나 갚지 못한 잔여액은 이 난에 속하지 않는다. ㉡ 조사기간중에 월부 및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조사기간 말까지 완불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기입한다. 특히 주의할 것은 조사기간중 외상 으로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구입한 물건의 수량과 금액이 반드시 소비 지출중 해당항목에 기입되어야 한다。
640	전 기 이 월 금	조사기초 가계의 현금잔고
650	수 입 기 입 누 락	
	지 출	조사기간중에 지출된 일체의 비용 (지출과 기타지출)
00000	비 용 지 출	소비지출과 조세 지급이자 등의 비소비지출 을 포함
10000	소 비 지 출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함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기 위한 지출
11000	식 료 품 비	
11100	곡 물	
11101	쌀	외미, 현미 포함
11102	참 쌀	
11103	쌀 보 리	
11104	늘 보 리	
11105	밀	
11106	콩	
11107	팥	
11108	두 두	
11109	조	
11110	수 수	
11111	밀 가 루	
11112	기 타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11200	육 어 개	
11201	쇠 고 기	
11202	돼 지 고 기	
11203	닭 고 기	
11204	기 타 육 류	오리, 토끼, 염소, 고래, 비둘기, 개고기, 각종 육류 내장 뼈등 이밖의 수조육 및 가공비 일체
11205	칼 치	
11206	생 명 태	
11207	조 기	
11208	정 갱 이	
11209	고 등 어	
11210	생 오 징 어	
11211	꽁 치	
11212	가 채 미	
11213	민 어	
11214	병 어	
11215	새 우	
11216	계	
11217	굴	
11218	조 개 류	
11219	기 타 선 냉 동 어 류	해삼, 홍합, 바지락, 전복, 미꾸라지, 대구, 삼치, 문어, 잉어, 도미
11220	건 명 태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1221	굴 비	
11222	건 멸 치	
11223	건 새 우	
11224	건 오 징 어	
11225	간 칼 치	
11226	간 정 갱 이	
11227	간 교 등 어	
11228	간 조 기	
11229	새 우 젓	
11230	멸 치 젓	
11231	명 란 젓	
11232	굴 젓	
11233	조 개 젓	
11234	오 징 어 젓	
11235	기 타 건 개 유	건 대구, 전홍합, 건해삼 등의 건어개류 일체
11300	유 란	
11301	달 갈	
11302	분 유	
11303	연 유	
11304	목 장 우 유	
11305	버 터	
11306	치 이 즈	
11307	기 타 유 란 류	오리알, 계란 가루, 빠-다 등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1400	채 소 및 해 초	
11401	배 추	
11402	양 배 추	
11403	파	
11404	시 금 치	
11405	상 추	
11406	콩 나 들	
11407	부 추	
11408	미 나 리	
11409	고 사 리	
11410	기 타 잎 소 술 기 채	
11411	무	열무, 청각무 포함
11412	당 근	
11413	양 파	
11414	도 라 지	
11415	고 구 마	
11416	감 자	
11417	기타뿌리채소	
11418	풋 고 추	
11419	오 이	
11420	호 박	
11421	도 마 도	
11422	가 지	
11423	기타열매채소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1424	김	
11425	미 역	
11426	다 시 마	
11427	기 타 해 초	
11500	과 실	
11501	사 과	
11502	배	
11503	복 송 아	
11504	포 도	
11505	밤	
11506	감	
11507	꽃 감	
11508	밀 감	
11509	바 나 나	
11510	참 의	
11511	수 박	
11512	딸 기	
11513	기 타 과 실	갓, 대추, 살구, 유자, 자두등
11600	조 미 료	
11601	고 추	
11602	고 추 가루	
11603	후 추 가루	
11604	마 늘	
11605	생 강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1606	깨	
11607	기타 향. 신료 조미	겨자, 카래분, 기타식용향신료
11608	천 일 염	
11609	암 염	
11610	간 장	
11611	된 장	
11612	고 추 장	
11613	식 초	
11614	설 탕	
11615	당 원	
11616	맛 나 니	미원등의 화학조미료
11617	메 주	
11618	기 타 장류	
11619	참 기 림	
11620	들 기 림	
11621	콩 기 림	
11622	낙화생기름	
11623	마 가 림	
11624	기 타 식 유	면실유, 돼지기름, 생선기름, 마요네-스등의 식유
11700	가 공 식 품	
11701	국 수	
11702	라 면	
11703	당 면	
11704	생선통조림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1705	육류통조림	
11706	과실통조림	
11707	두 부	
11708	단 무 지	김치포함
11709	베 이 콘	
11710	소 세 지	
11711	유 부	
11712	가 마 북 구	
11713	생선묵튀김	
11714	묵	
11715	가 공 임	
11716	기타가공식품	햄, 덴부라, 치쿠와 콘냐크등
11800	과자및 청량음료	
11801	식 빵	
11802	빵	
11803	건 빵	
11804	생 과 자	
11805	비 스 켈	
11806	크 래 카	
11807	셀 베 이	
11808	가 스테 라	
11809	드 룩 프 스	
11810	카 라 멜	
11811	쫄 코 렐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1812	낙 화 생	
11813	옛	
11814	곶	
11815	기타과자류	
11816	콜 라	
11817	사 이 다	
11818	쥬 스	
11819	카 피	
11820	홍 차	
11821	밀 크	
11822	코 코 아 분	
11823	분 말 쥬 스	
11824	아이스크림	
11825	아이스캔디	
11826	얼 음	
11827	기타청량음료	
11900	알 콜 음 료	
11901	청 주	
11902	약 주	
11903	탁 주	
11904	소 주	
11905	병 맥 주	
11906	캔 맥 주	
11907	포 도 주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1908	과 실 주	
11909	위 스 키	
11910	기 타	백알, 인삼주, 고량주, 매실주, 술찌꺼기등
12000	외 식	
12001	설 능 탕	
12002	곰 탕	
12003	육 개 장	
12004	비 빔 밥	
12005	냉 면	
12006	불고기백반	
12007	한 정 식	
12008	기 타 한 식	한식일체
12009	초 밥	
12010	덤 밥	
12011	왜 정 골	
12012	기 타 왜 식	왜식일체
12013	우 동	
12014	짜 장 면	
12015	기타중국식	중국식일체
12016	런 치	
12017	돈 까 스	
12018	함 박스 틱	
12019	오무라이스	
12020	카레라이스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2021	기 타 양 식	양식일체
13000	주 거 비	
13100	지 출 방 세	
13200	지 출 땅 세	
13300	자 가 평 가 액	자가소유의 경우는 이를 인접에 위치하고 비슷한 대가의 방세로 평가하여 자가의 지출방세로 간주한다. 단, 재산세 수리비를 공제한 평가로 해야 한다. 전세무상의 관공사택도 자가와 동일함.
13400	수 도 료	우물사용료 포함
13500	주 택 수 리	
13501	판 재	
13502	각 재	
13503	베 니 야 합 판	
13504	판 유 리	
13505	시 멘 트	
13506	벽 돌	적연외 포함
13507	시 멘 벽 돌	
13508	부 록 크	
13509	기 와	
13510	함 석	
13511	스 레 이 트	
13512	타 이 루	
13513	썬 라 이 트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3514	페 인 트	니스, 락카 포함
13515	니 스	
13516	못	
13517	벽 지	
13518	창 호 지	
13519	장 판 지	
13520	비 널 장 판	
13521	모 래	
13522	목 수 임	
13523	도 장 임	
13524	미 장 임	
13525	기 타	진흙, 플라스틱제품, 짐을쳐, 구들장 아궁이, 토관비너루등 설비수리용 전재용품 일체
13600	가 구 집 기	
13601	양 복 장	카비넷트 포함
13602	찬 장	
13603	거울 (대형)	
13604	밥 상	
13605	책 상	테이블 포함
13606	의 자	
13607	응 접 쉼	
13608	침 대	
13609	탁 상 시 계	
13610	벽 시 계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3611	재 봉 틀	
13612	자 전 차	
13613	모터싸이클	
13614	피 아 노	
13615	풍 금	
13616	석 유 난 로	
13617	연 탄 난 로	
13618	라 퇴 오	
13619	텔 레 비 존	
13620	전 축	
13621	녹 음 기	
13622	선 풍 기	
13623	냉 장 고	
13624	믹 사	
13625	전 화 기	
13626	전화가설비	
13627	전기아이론	
13628	곤 로	
13629	전 구	
13630	형 광 등	
13631	회 중 전 등	
13632	초 인 종	
13633	소 켈	
13634	코 드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3635	온 도 계	
13636	기 타 가 구	전기스탠드, 유모차, 화로, 신장등
13637	양 은 솔	
13638	냄 비	
13639	스 텐 주 발	
13640	사 기 주 발	
13641	접 시	
13642	컵	
13643	커 피 셸	
13644	주 전 자	
13645	수 저	
13646	바 켓 스	
13647	후 라 이 팬	
13648	도 마 . 칼	
13649	항 아 리	
13650	프라스틱집기	
13651	연탄용집기	
13652	가 구 집 기 수 리 비	
13653	기 타 집 기	도시락, 독, 톱, 망치, 세탁판, 가위, 호스, 이밖의 부엌용품 및 잡용품
14000	광 열 비	
14100	전 기 료	
14200	연 료	
14201	연 탄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4202	숯	
14203	깨 스	
14204	석 유	
14205	기 타 연 료	석탄, 코크스, 조개탄, 장작, 톱밥등
14300	기 타 광 열	
14301	성 냥	
14302	양 초	
14303	기 타	이 상에 서 분 류 되 지 않 은 광 열 비 일 체
15000	피 복 비	
15100	의 복	
15101	한 복	
15102	아동유아복	
15103	잠 바	
15104	학 생 복	
15105	남 방 사 쓰	
15106	바바리코트	
15107	기타기성복	
15108	맞출신사복	
15109	맞춤숙녀복	
15110	맞춤오바	
15111	맞춤코트	
15112	기타맞춤	
15113	면 내 의	
15114	화학사내의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5115	런닝샤쓰	
15116	와이샤쓰	
15117	스웨타	
15118	부라우스	
15119	스커트	
15120	파자마	
15121	팬스	
15122	속치마	
15123	세탁료	
15124	의복수선임	
15125	기타내의	털치마, 콜셀등의 내의류일체
15200	직물면및사	
15201	광목	옥당목 포함
15202	포프린	
15203	용	
15204	기타면직	소창직등 면직물상기의 일체
15205	양단	
15206	웃동	
15207	명주	
15208	기타견직	상기 견직외 일체
15209	모시	
15210	삼베	
15211	기타마직	
15212	나이롱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5213	메 크 롱	
15214	비 니 론	
15215	기 타 화 직	
15216	재 봉 사	
15217	모 사	
15218	화 학 사	
15219	기 타 실	
15220	솜	
15300	양 말 류	
15301	남 자 양 말	
15302	여 자 양 말	
15303	스 타 킹	
15304	어 린 이 양 말	
15305	버 셴	
15306	기 타	
15400	신 발 류	
15401	맞춤남자구두	
15402	맞춤여자구두	
15403	남자고무신	
15404	여자고무신	
15405	운 동 화	
15406	우 화	
15407	비 닐 화	프라스틱제품 포함
15408	신 발 수 선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5409	기 타	무용화등 상기 신발외 일체
15500	장 신 구	
15501	핸 드 백	
15502	반 지	
15503	팔 목 시 계	
15504	부 로 찌	
15505	라 이 타	
15506	도 장	
15507	안 경	
15508	백 타 이	
15509	백 타 이 편	
15510	장 갑	
15511	마 후 라	직물제목도리, (단털목도리, 솜은 제외)
15512	모 사 류	
15513	스 카 프	
15514	장신구수선임	
15515	기 타	털목도리, 솜, 허리띠 (단장, 지갑, 담뱃대 백카치프등)
15600	기 타 피 복	
15601	이 불	
15602	모 포	
15603	타 울	
15604	우 산	
15605	양 산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5606	가 방	
15607	재 료	
15608	염 색 료	
15609	기 타	숨재생산, 상기 서비스료외 피복서비스료 일체
16000	잡 비	
16100	의 료	
16101	감 기 약	
16102	위 장 약	
16103	영 양 제	
16104	흡 몬 제	
16105	구 충 제	
16106	항 생 제	
16107	안 과 용 제	
16108	외 용 제	
16109	탈 지 면	
16110	기 타	
16111	의 료 기 구	
16112	진 료 대	진찰료, 왕진료, 주사료, 부약료, 수술료등 의사로부터 진료일체
16113	조 산 료	조산료에 의한 조산료일체
16114	입 원 료	입원환자의 진료비일체 포함
16115	검 사 료	
16116	X-Ray 촬영 료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6117	기 타	
16200	미 용 위 생	
16201	화 장 비 누	
16202	화 장 크림	
16203	화 장 분	
16204	화 장 수	
16205	치 약	
16206	칫 솔	
16207	세 탁 비 누	
16208	가 루 비 누	
16209	포 마 드	
16210	면 도 날	
16211	살 충 제	
16212	화 장 지	
16213	기 타 용 품	
16214	이 발 료	
16215	고 대 료	
16216	파 마 료	
16217	목 욕 료	
16218	구 두 닦 기	
16219	청 소 대	오물 및 분료수거비
16220	기 타 미 용	
16300	문 방 구	
16301	만 년 필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6302	연 필	
16303	볼 펜	
16304	잉 크	
16305	노 트	
16306	갱 지	
16307	양 면 괴 지	
16308	봉 투	
16309	도 화 지	
16310	색 지	
16311	그 림 돌 감	
16312	크 레 파 스	크레용 포함
16313	주 판	
16314	필 통	
16315	기 타	분류되지 않은 학용품 및 사무용품일체
16400	교 육 비	
16401	유 치 원	
16402	국 민 학 교	
16403	중 학 교	
16404	고 등 학 교	
16405	전 문 학 교	
16406	대 학 교	
16407	교 파 서 대	
16408	참 교 서 대	
16409	가 정 교 사 료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6410	학 원 비		
16411	도 서 관 비		
16412	수 학 여 행		
16413	기 타	기타잡부금, 학급비등	
16500	교 양 오 략		
16501	신 문 대		
16502	주 간 지		
16503	월 간 잡 지		
16504	교 양 도 서		
16505	영 화 관 략		
16506	스 포 츠 관 략		
16507	유 원 지 입 장 료		
16508	당 구 료		
16509	바 둑 대 국		
16510	기 타 료		
16511	카 메 라	구입비에 한함	
16512	필 림	현상확대 인화 포함	
16513	사 진		
16514	악 기		
16515	레 코 드		
16516	운 동 기 구		
16517	낚 시 용 품		
16518	등 산 용 품		
16519	어 린 이 완 구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6520	어린이자전거	
16521	열대어류	
16522	애완조류	
16523	애완동물	
16524	골동품	
16525	기타	
16600	교통통신	
16601	항공료	
16602	버스료	
16603	고속버스료	
16604	합승료	
16605	택시료	
16606	기차료	
16607	선박료	
16608	기타	
16609	전화료	
16610	전보료	
16611	편지료	
16612	엽서료	
16613	소포료	
16614	기타	역입장권, 화물, 탁송임등의 교통일체
16700	담배	
16800	기타잡비	
16801	증여금	교회, 사찰, 절인등에 지출 증여되는 기부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6802	식 모	액이 타 가구에 이전되지 않는 금액으로 함
16803	숙 박 료	국내유학자녀의 하숙비 포함
16804	수 수 료	
16805	기 타	
20000	비 소 비 지 출	
21000	조세및잡부금	소득세, 가옥세, 상속세 등의 조사공과금 및 야경비, 적십자회비, 동회비 등의 잡부금 단, 사업상 이유로 지출되는 조세 및 잡부금은 제외
22000	지 불 이 자	가계를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23000	기 타	벌금, 과료, 변상금, 도난, 분실금품, 도박지출 기타 비소비지출
300	기 타 지 출	전술의 비용지출과 대립되는 비목으로 기타 수입과 반대되는 지출임
310	자 산 의 증 가	
311	저 금	금융기관과 우체국등에 예금한 금액을 종전 가계조사에서는 저금으로 통털어 파악하던 것을 은행예금과 우체국예금으로 분리하여 조사 기입하고 저금란에는 이를 합산 기입한다.
312	은 행	
313	우 체 국	
314	생 명 보 험	종전 조사에서는 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통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315	민 영 생 명	<p>털어 조사하던 것을 민영생명보험과 기타 (국민생명보험, 농협생명공제)로 나누어 조사 기입하고 생명보험란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입한다.</p> <p>단, 종전에는 기여금을 보험에서 파악하였으나 본 조사표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기타의 기여금란에 기입한다.</p>
316	기 타	
317	유 가 증 권	
318	국 채	<p>종전에는 국, 공, 사채 등의 증권을 산 금액으로 조사하였던 것을 국채 (공채, 지방채 포함)와 기타 (주식, 금융채권, 사채)로 나누어 조사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입한다.</p>
319	기 타	
320	계	<p>종전과 같이 계를 타기전에 불입한 금액만을 기입한다.</p>
321	부 동 산 취 득	<p>종전에 토지, 가옥 이밖의 재산을 산 금액중 토지와 가옥을 산 금액만 기입한다. 부동산 매입액에 부동산등기료와 취득세를 포함하여 조사한다.</p> <p>주의할 것은 주택의 세부적인 수리가 아닌 가옥의 원형을 변경한 대규모 증축이</p>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나 개축의 경우는 이에 소모된 비용을 기입
322	기 타	① ② ③ 항을 합산 기입
323	① 기 여 금	종전에 보험에 지출한 금액에서 파악하던 것을 분리하여 기입한다.
324	② 빌려준 돈	개인 및 사설단체에 빌려준 돈을 조사 기입한다. 또 전세를 얻었을 경우 전세금으로 준 돈도 이 난에 해당된다.
325	③ 기 타	종전에 토지, 가옥 이밖의 재산을 산 금액 중 이밖의 재산을 산 금액이 해당된다. 즉 장신구류중 고가의 보석을 순수한 축재의 목적으로 구입한 것과 계속적인 사업(비법인)과는 관계없이 일시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기계나 물품을 구입한 것이 이에 포함되고 직장공제금(행우회비포함)의 지출도 이 난에 조사한다. 사내예금도 파악한다.
330	부 채 의 감 소	
331	빌린돈값은금액	종전에 「금융기관 및 우체국등에서 빌린 돈 값은 금액」 「개인 및 사설단체에서 빌린돈 값은 금액」 「계에서 빌린돈 값은 금액」 「보험에서 빌린돈 값은 금액」을 각 난에서 파악하였으나 7.1일 부터는 모두 합하여 이 난에서 조사한다.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332	월부 및 외상 값 값은 금액	<p>적금과 계는 조사기간 전에 돈을 탄다음 기간중 불입한 금액을 기입한다.</p> <p>종전과 동일하며 조사기간(3개월)중에 월 부 및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였다가 기간 중에 모두 갚았을 경우는 기타 수지란에서 는 파악치 않고 현금구입과 동일하게 소비 지출중 해당란에만 파악한다.</p> <p>조사기간 전에 월부 및 외상으로 구입하고 그 금액을 완불치 못하고 외상으로 넘어온 잔여액을 기간중 갚은 금액만 기입한다.</p> <p>조사중 월부 및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기간중에 완불치 못했을 경우는 그 금액중 갚은 금액은 기입치 않고 기간중에 갚지 못한 잔여액은 부채의 증가중 월부 및 외 상값에 기입한다.</p> <p>기간중 구입한 물건은 외상이전 완불이전 반드시 그 물건의 수량과 금액이 소비지출 의 해당란에 기입되어야 한다.</p>
340	기 말 현금 잔고	
350	지출기입누락	

<부록 3>

직업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전문적, 기술적 직업종사자	건축기사, 측량 기사 및 기술자	근 (봉)	건축기사 측량기사 토목기사 전기 및 전기통신기기술자 기계기술자 채광기술자 화학야금기술자 농림기술자 수산기술자 요업기술자 식품기술자 방직기술자 타에 분류되지 않은 건축기사 측량기사 및 기술자
	자연과학자	근 (봉)	화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 농림학자 수산학자 타에 분류하지 않은 자연과 학자
	의사	근 (봉)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전문적, 기술적 직업 종사자		단, 개업의의 경우는 (외)가구	한 의 사
	간호원 및 조산원	근(봉) 외	간 호 원 조 산 원
	기타의 전문적의 료종사자 및 의 료기술자	근(봉) 단, 자기의 전문기술로 개업 하고 있을때는 (외)가구	약 사 의료기술자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문적 의료종사자 및 의 료기술자
	교 원	근 (봉)	대학교원 중, 고등학교교원 국민학교교원 유치원교원 타에 분류되지 않은 학교교원
	종교성직자	외	종교성직자
	사법관계종사자	근(봉) 단, 변호사는 (외)가구	사법관계종사자
	예술가, 저작자 및 유사종사자	외 단, 가자는 근(봉)	화가 및 조각가 음 악 가 무용가, 배우 및 연예가 작가, 평론가 및 언론인 (기자) 타에 분류되지 않은 예술가 및 저작가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기타의 전문적 기술적직업종사 자	외 단 도서취급및 보관인, 인문과 학자 고용된 제도사는 근(봉)	제도사 계리사 사회사업가 도서취급 및 보관인 인문과학자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 문적 기술적직업종사자
관리적직업 종사자	관리적공무원	근(봉) 단 장, 차관, 도지사급이 상의 관리적공무원은 (외) 가구로 함	관리적중앙공무원 (3급이상) 관리적지방공무원 (2급이상)
	사회단체의 상 임직원 및 개인 기업체의 경영주	외	사회단체의 상임직원개인 기업체의 경영주
	기타의 관리적 직업종사자	근(봉)	기타의 관리적직업종사자
사무종사자	사무종사자	근(봉)	회계 및 현금출납원 일반사무원 수금인 우체사무종사원 속기사 및 타자원
	기타의 사무종 사자	근(봉)	사무용 기계조종사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무 도매업경영주

대분류	중분류	가 구 구 분	내 용 예 시 (소분류)
판매종사자	상품판매종사자	외 단 판매원 및 점 원 상업외무원은 근(노)	소매업경영주 음식점주 판매원 및 점원 행상인 및 노점상인 상업외무원(보험을 제외) 타에 분류되지 않은 상품판매종사자
	보험외무원, 부동산중개인 및 유가증권 의 매매인	외 단 보험외무원, 보험대리인은 근 (봉)	보험외무원, 보험대리인 부동산중개인, 매매인, 유가증권의 매매인
	기타의 판매 종사자	외	기타의 판매종사자
교통체신업 종사자	철도기관사및 화부	근(노)	철도기관사 화부 전차운전사
	자동차운전사	근(노)	버스운전사 승용자동차운전사 화물자동차운전사 타에 분류되지 않은 자동차운전사
	선박, 항공기 운전종사자	근(봉)	선장, 갑판장 및 항해 사, 선박기관사 조종사, 항공사 및 항 공기관사
	전화교환원및 전보통신원	근(봉)	전화교환원 전보통신원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집배원 송달부
	기타의 교통 및 체신업종사자	근(노)	감판부원, 기관원 및 선 원 기차차장 및 검차원 기타차량차장 교통정비원, 배차원 및 발 신호원 통신검사원 및 정 리원 우마차부 타에 분류되지 않은 교통 체신업종사자
기능공, 생산 공정종사자 및 기타 단순노 무자	방직공, 직조공 편물공, 염색공 및 유사직공	근(노)	섬유준비공 방직공 및 권사공 직조공, 방직기설치수리공 및 방직기준비공 편물공 및 편물기설치수 리공, 직물조문판제작공 직물표백공, 염색공 및 완성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직 물 및 유사제품제조공
	재봉사, 재단사 모피제품제조공 및 유사직공	근(노)	양복재봉사 한복재봉사 모피, 피혁 의류재봉사 및 유사직공 모자제조공 직물, 피혁의류, 장갑의 지형공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 (소분류)
	피혁제품제조공 (장갑및의류제외)	근(노)	및 재단사 직물, 모피물, 피혁의류 및 장갑의 자수공 직물가구공 및 유사직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의류 및 유사제품제조공 제화공 화류수선공 가족백제조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피혁제품제조공
	금속재료제조공	근(노)	용광로공(금속제품) 비철금속계련공 주물공 하조공 금속열처리공 압연공 선선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재료제조공
	정밀기계제조공 시계제조공, 보석공 및 유사직공	근(노)	정밀기계제조공 및 수리공 시계제조공 및 수리공 보석공, 금세공 및 은세공공 보석류조각공
			기계완성공, 공구제조공 및 기계공구정비공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기능공, 생산공정종사자 및 기타 단순노무자	금속기계제품제조공 및 유사직공	근(노)	기계공구조작공 조립공 및 기계설치공(전기 및 정밀기계조립공제외) 기계수리공(전기 및 정밀기계수리공제외) 금속박판공 연관공 및 환류결합공 용접공 철판공 및 철근공 도금공 및 유사직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공
	전기공, 전력 및 전자력이용공	근(노)	전기공, 전기수리공 및 유사직공 전기 및 전자기구공 라디오, 텔레비존설비공 및 수리공 전신전화기설공 및 수리공 전선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전자 및 유사직공
	목공, 가구공 및 기타목, 축제품제조공	근(노)	목공 가구공 제재공, 제재기설치공 축제품제조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목축제품제조공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 (소분류)
기능공, 생산공정종사자 및 기타단순노무자	도장공 및 표구공	근(노)	건축도장공 표구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도장공
	토목(미장이) 및 기타건축종사자	근(노)	도공(미장이) 연와적공, 개와공 및 타일공 씨멘트완성공 및 테라조공 절연체취급공 유리삽입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건축관계직공
	인쇄공, 제본공 및 유사직공	근(노)	식자공 인쇄공 제판공 등사공 제본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인쇄제본관계직공
	도기공, 노공, 유리 및 점토성형공 및 유사직공	근(노)	유라성형공, 절단공, 연마공 및 완성공 도기공, 점토성형공 유리 및 도기노공 유리 및 도기장식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유리 및 절업관계직공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기능공, 생산공정종사자 및 기타 단순노무자	음식료품가공및 제조공	근(노)	도정공 및 제분공 제빵공 및 제과공 제당 및 정당공 주류제조공 및 유사직공 저장공, 냉동공 및 통조림제조공 도살자 및 정육공 낙농품제조공 된장, 간장 및 기타조미료제조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음식료품 가공공 및 제조공
	화학 및 화학 공정종사자	근(노)	단식 및 연식증유부관리부 화학제품가열공 화학제품원료분쇄가공공 팔프공 및 제지공 화학제품제조공 등식들유지공, 갱화유공 및 비 누제조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화학 및 화학공정종사자
	연초가공공 및 연초제품제조공	근(노)	연초가공공 연초제품제조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연초제품 제조공 제용공 및 유사직공 타이야제조공 및 고무제품제조 공 화선공 및 유사직공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기타기능공 및 생산품제조공	근(노)	제혁가공공, 모피공 및 유사직공 사진암실종사자 악기제조공 및 유사직공 조각공 및 석공 지류제품제조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기능공 및 생산품제조공
	포장공, 하역작업자 및 유사직업종사자	근(노)	포장공 및 유사직공 하역작업자 및 유사직업종사자
	고정기관굴착기기중기운전공 및 유사직업종사자	근(노)	고정기관 및 유사장치운전공 및 기관화부 기중기운전공 활차설치공 및 접선공 건설중기운전공 소운반기계운전공(돌뚎처리) 주유부(고정기관, 자동차 및 기타시설)
	기타의 단순노무자	근(노)	도로보수공 보선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단순노무자
	보안씨 - 비스종사자	근(봉) 단수위, 감시원은 근(노)	소방관 및 유사직업종사자 경찰관 해양경비원 수위 및 감시원 타에 분류되지 않은 보안씨 - 비스종사자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 (소분류)
서비스직업 종사자	가사 서비스종사자	근(노)	가사부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가정사 용인
	기타 서비스종사자	근(노) 단 체육가 운동가 및 유사직업종 사자는 (외)	보리인 (개인가정제외) 여관, 하숙 및 기숙사의 종 사자 배달부 접대부 및 사환 (개인가정제 외) 이발사 및 미용사 목욕탕종사자 구두담이 사진사 및 영사기사 세탁직 청소부 및 유사직업종사자 체육가, 운동가 및 유사직업 종사자 안내인 장의사 및 화장장종사자 접객부 및 기생 타에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 종사자
	국군	근(봉)	육군사병 육군장교 해군사병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 (소분류)
			해군장교 공군사병 공군장교 해병대사병 해병대장교
불류불능의 직업	새로이 직업을 구하는 자 (무직)	외	새로이 직업을 구하는 자 (무직)

< 부 록 4 >

은행예금의 종류

목적에의한 구분	예금종류	특 징	기 간	이 자 율	이자계산방법	최저예입액	취 금 용 기 관
생활자금을 보 관해 두고 쓰 며 이자를 받 을 수 있는 예금	보통예금	입출금에 제한이 없으며 어음, 수표, 우편환증서등 도 예입할 수 있는 편 리한 통장예금	제한없음	년 1.8%	매월을 상하 반월 1~15 16~말 로 구분 매일 최종잔액중 반 월중 최저잔액 에 대하여 반 월리로 계산반 월복리	1~10원 이 상(은행에 따 라 다름)	전금융기관 (한국은행 제외)
금전출납을 대 행시키는 예금	당좌예금	금전출납을 간단히 수표 로 할수 있는 상거래에 편리한 예금	제한없음	무이자	-	초입금 5~30만원 (지역에 따 라 다름)	

목적에 의한 구분	예금종류	특징	기간	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최저예입액	취급기관
현금거래의 위험과 번잡을 피할 수 있는 예금	별단예금	보증수표(자기앞수표) 또는 「쿠-폰」을 받아 거래를 간편히 할수 있는 예금	제한없음	무이자	-	자기앞수표는 5,000원이상 (경우에 따라 소액도 발행함) 「쿠-폰」은 1,000원이상	
고율의 이자로 재산을 안전하게 늘일 수 있는 예금	정기예금 1) 3개월이상 반기 2) 6개월이상 반기 3) 12개월이상 반기	미리 약정한 일정기간을 예치하면 가장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이며 이자를 매월 지급하므로 생계비 및 학자금 마련에는 물론 그 이자로 적금 및 적립식 정기예금을 할수 있는 유리한 예금	1) 3개월이상 2) 6 " 3) 12 "	월 1.2% (연 14.4%) 월 1.6% (연 19.2%) 월 2.1% (연 25.2%)	단리	50원~100원 이상 (은행에 따라 다름)	

목적에 의한 구분	예금종류	특정	기간	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최저차입액	취금융기관
	저치예금	미리 예입기관과 반기일을 정하여 예입기간중 2회이상 예입하고 기간 만료후 1개월이상 거치하는 예금으로서 정기예금의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예금	1) 3개월이상 2) 6 " 3) 1년 "	월 1.2% (연 14.4%) 월 1.6% (연 19.2%) 월 2.1% (연 25.2%)	단 리	1회 10원 이상	농업협동조합
	자립저축 정기예금	국가기관 및 정부관리 기업체로 부터 각종 인허가 등기 대금수령시 이행하여야 하는 예금	6 개 월	월 1.6% (연 19.2%)	단 리	100 원 이상 (100 원 단 위 로 단 수는 절 하)	전 금융 기관 (한국은행계 외)
	분돈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	적립식 정기예금 1) 고율 정기예금	매월 일정일에 일정액을 1년간 적립후 1년반 또는 2년 거치하면 총적립액의 1배액까지를 받	1) 1년적립 1년반거치 2) 1년적립 2년거치	총적립액의 65% 총적립액의 87%	월 복 리	1회적립액 200 원 이상 (100 원 단 위 임)

목적에 의한 구분	예금종류	특 징	기 간	이 자 율	이자계산방법	최저예입액	취 금 용 기 관
	2) 배 액 정기예금	올 수 있는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					
	정기예금	매월 일정액을 일정일에 계속 적립하면 만기일에 계약금액외에 고율의 특별금리를 받고 목돈을 받는데 유리하며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예금	6 개월 제 1 년 제 1 년 반 제 2 년 제	기한별로 월 부금 및 특별금리지급액이 정하여 있음 (별첨월 부금 및 특별금리액표 참조)	단 리	계약금액 및 기간에 따라 다름	전금융기관 (단 한국은행 및 한국산업은행 제외)
	상호부금	정기적금에 유사하나 급부전과 급부후의 월부금액이 다름	15개월반기 20 " 25 " 32 "	상 농	단 리	상 동	국민은행

목적에의한 구분	예금종류	특 징	기 간	이 자 율	이자계산방법	최저예입액	취 금 용 기 관
고율의 이자를 앞당겨 확보받아 할인매입할 수 있는 예금	할인식정기예 금 1) 1년 6개월 반기 2) 1년 6개월 반기	월복리에 의한 높은 이 자를 앞당겨 확인받는 예금으로서 이식률 목적 으로 하는 예금자에게는 이자를 받아 다시 예금 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주 는 예금제도임	1) 1년 2) 1년 6개 월	월복리로 산출 된 소정할인율 에 의하여 실 제매출액을 산 출함 (별첨매출 액표 참조)	월 복 리	1,000 원이상 (1,000원단위)	전금융기관 (한국은행 제외)
높은 이자와 행운을 기대할 수 있는 예금	복금부정기예 금	연 15.2%의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예금액 200원에 1개의 추첨 권을 부여하고 100만 원까지의 복금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이 붙어 있는 예금	6 개 월	연 15.2%	단 리	200 원이상 (200원단위)	

목적에 의한 구분	예금종류	특징	기간	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최저예입액	취급금융기관
각 직장, 학교, 지역별로 예금하는 이율이 높은 예금	국민저축조합예금	국민저축조합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국민저축조합의 단체대금	조합원의 조합탈퇴, 사망 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음.	연 25.2%	매월 최종잔액중 월중 (매월 16~납월 15) 최저잔액에 대하여 월리로 계산 반년복리		
	통지예금	자금용도 미정인 목돈불용도가 결정될 때까지 단기간 예치하는 이식에 유리한 예금	30일 이상 보저치 (3일전 통고요)	연 5%	단 리	50원~300원 (은행에 따라 다름)	
단기에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	새농민예금	농산물판매대금을 예입하는 단기고율의 농민을 위한 통장예금	일부는 3개월 이상 보저치	연 14.4%	월중 (1~말) 최저잔액에 대하여 월리로 계산 반년복리		농업협동조합

목적에의한 구분	예금종류	특 징	기 간	이 자 율	이자계산방법	최저예입액	취 금 용 기 관
	새생활예금	반기에 이자가 높아 자 선교육 및 종교단체등 비영리단체에 한하며 예 금의 출범위내에서 용자 도 받을 수 있는 예금	30일이상 보 거치 예금의 지급은 30 일전 서면예 고를 요하나 1개월이상 거치분은 수 시지급	연 12%	단 리	5,000,000 원 이하	전금융기관 (한국은행 제외)
관광에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예금	관광저금	내용은 정기적금과 대동 소이하나 그 계약금액이 5,000원이상 (2년제 10,000원이상) 1,000 원단위로 제한이 없음 이 적금으로 관광을 하 면 소정관광요금의 5% 20인이상 단체는 10% 를 할인함	6개월제 1년제 1년반제 2년제	일반정기적 금과 동일 함	단 리	5,000 원이 상 (1,000원 단위)	한일은행

목적에 의한 구분	예금종류	특징	기간	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최저예입액	취급기관
	저치식 전식	6개월 결산때마다 배당금(이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전신탁 생계비 학자금등을 위하여 배당금(이자)을 월불식으로 매월 지급하는 금전신탁				차회부터는 제한없음 (단 목적신탁은 매월 일정액)	
	신탁	자유적 적립 목적식 적립식 신탁 처음 1,000 원이상 적립하고 그후 자유로히 적립하는 금전신탁 최저 1,000 원이상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금전신탁 희망에 따라 목적과 기간을 정하여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소정		월불식이율 (거치식 감소이율 적용) 1년반월 2.2% 2년 연월 2.3%			

목적에 의한 구분	예금종류	특 징	기 간	이 자 율	이자계산방법	최저예입액	취 금 용 기 관
		기간과 목적이 달 성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금 전신탁					

참 고 일반정기예금, 할인식 정기예금, 복금부 정기예금을 비롯하여 보통 및 저축예금을 하실때 성명이나 주소를 밝히기 싫어하는 분을 위하여 무기명으로 통장증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부록 5>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세 10% 포함) 계산표

봉 급 액 (원)	세 율 (%)	공 제 액 (원)
20,000 까지	7.7	0
30,000 "	9.9	220
40,000 "	12.1	660
70,000 "	15.4	1,650
90,000 "	20.0	5,610
110,000 "	29.7	11,770
160,000 "	37.4	19,470
210,000 "	46.2	32,670
210,000 이상은	55.0	50,270

2. 봉급액의 합계에 기초공제액 10,000 원을 빼 액수에 위와 같은 비율을 승하여 해당금액을 빼면 소득세가 된다.

(예 1) 25,000 원 받는 경우

$$(25,000 \text{ 원} - 10,000 \text{ 원}) \times 9.9\% - 220 \text{ 원} = 1,265 \text{ 원}$$

(예 2) 37,500 원 받는 경우

$$(37,500 \text{ 원} - 10,000 \text{ 원}) \times 12.1\% - 660 \text{ 원} = 2,668 \text{ 원}$$

3. 봉급액별 공제액을 본다면

봉 급 (원)	세 액 (원)	봉 급 (원)	세 액 (원)	봉 급 (원)	세 액 (원)
10,000	면 세	27,000	1,463	44,000	3,586
11,000	77	28,000	1,562	45,000	3,740
12,000	154	29,000	1,661	46,000	3,894
13,000	231	30,000	1,760	47,000	4,048
14,000	308	31,000	1,881	48,000	4,202
15,000	385	32,000	2,002	49,000	4,356
16,000	462	33,000	2,123	50,000	4,510
17,000	539	34,000	2,244	55,000	5,280
18,000	616	35,000	2,365	60,000	6,050
19,000	693	36,000	2,486	65,000	6,820
20,000	770	37,000	2,607	70,000	7,590
21,000	869	38,000	2,728	75,000	8,680
22,000	968	39,000	2,849	80,000	9,790
23,000	1,067	40,000	2,970	85,000	10,890
24,000	1,166	41,000	3,124	90,000	11,990
25,000	1,265	42,000	3,278	95,000	13,475
26,000	1,364	43,000	3,332	100,000	14,960

<부록 6> 단 위 환 산 표

구 분	척 관 법	미 터 법
길 이	1 척	0.303 m (30.3 cm)
	1 촌	0.030 m (3.03 cm)
	1 야드 (바, Yd)	0.9144m (91.44 cm)
	1 인치 (촌, in)	0.0254m (2.54 cm)
무 계	1 관 (1000 돈)	3.75 kg (3,750 g)
	1 근 (160 돈)	600 g
	1 근 (100 돈)	375 g
	1 돈	3.75 g
	1 파운드 (Lb)	453.6 g
	1 온스 (oz)	28.35g
부 피	1 탈 (斗)	18.04 ℓ
	1 되 (升)	1.804 ℓ
	1 홑 (合)	0.1804 ℓ

<부록 7>

서울 시 종로 구 시 조사구번호 019호

조사대상 가구명부

작성자 박 순 자 ㉠

※ 표본가구번호	가구주성명	직업 (구체적으로)	가구원수	주소	비고
	김갑동	구명가계	7	신당동 13통 2반 45번지	
	이영기	농업	8	75-1	
	권영수	지계꾼	5	75-2	
	유정일	육군중령	3	83-23	
	김성호	재무부행정사무관	8	83-24	
	김기성	무직	4	83-25	
	박태수	자유노동	3	24-45	
	임영길	한국대학교통계학교수	8	24-46	
	이원호	행상	3	24-47	
	정인상	무역회사 사장	11	47-1	
	이인철	학생	1	47-1	
	원성구	한일약방 주인	5	47-2	

이상 12 가구

주의: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말것

(비)	가구 1. 근로 가구 구분 2. 근로외 가구	조사구 번호 142호	가구 번호 제458호	주소	서울특별시성동구신당동 가 327번지 7.통 3 반	가구주 성명	김 성 호						
	I. 가 구 원					II. 주 거							
	① 가구주와 의 관계	② 성 별	③ 연 령	④ 건 강 상 태	⑤ 근무처 사업체 또 는 구체적 학교명	⑥ 직위와 일의 종 류	⑦ 취 업 년 수	⑧ 급료지급 예정일	⑨ 부 업	① 자 가 월 세 평 가 액 2,000 원	무 상 월 세 평 가 액 원	관 공 무 상 월 세 평 가 액 원	사 택 유 상 월 세 원
	가구주	1. 남 2. 여	34 세	1. 양 2. 부	재 무 부 총 무 과	인 사 계 사 무 관	4 년 5 월			세 집 보증금또는 전	매월지불또는 공제하는집세	원 세 평 가 액	
	차	1. 남 2. 여	30 세	1. 양 2. 부			년 월			전 세			
	장 남	1. 남 2. 여	9 세	1. 양 2. 부	광 회 국 민 학 교	3 학 년	년 월			보증금을내고매 월지급하는집세			
	장 녀	1. 남 2. 여	7 세	1. 양 2. 부		1 학 년	년 월			전 세 에 서 공 제 하 는 집 세			
	차 남	1. 남 2. 여	3 세	1. 양 2. 부			년 월			매 월 지 급 하 는 집 세			
	모	1. 남 2. 여	62 세	1. 양 2. 부			년 월						
	동 생	1. 남 2. 여	28 세	1. 양 2. 부	재 건 은 행 조 사 부 통 계 과	행 원	2 년 월	21 일					
식 모	1. 남 2. 여	16 세	1. 양 2. 부			7 년 월			② 대 지 전 평 방 평 수	1. 보 통 주 택 2. 겸 용 주 택	1. 전 옥 (10년 이하) 2. 중 교 옥 (11년~20년) 3. 고 옥 (21년 이상)		
차 녀	1. 남 2. 여	0 세	1. 양 2. 부			년 월			③ 대 지 전 평 방 평 수	대 지 (45평) 전 평 (22평)	방 평 수 (5평) 세 준 방 (평)		
지도원	1. 남 2. 여	세	1. 양 2. 부			년 월			④ 설 비	전 등 (중량) 정액 공동 무 우 들 수도 (전용) 공동 무 목욕실	전용, 공동, 무 ⊕ 무		
조사원명	1. 남 2. 여	세	1. 양 2. 부			년 월			⑤ 가 계 를 따 르 하 는 가 구 원	방 을 빌 려 서 동 거 하 는 사 람 (명) 방 을 빌 리 지 않 고 동 거 하 는 사 람 (명)			
박 순 자	1. 남 2. 여	세	1. 양 2. 부			년 월			III. 전 조 사 가 구				
조사원인	가구원수		남 4 명	여 4 명	계 8 명	취업원수		2 명	① 중 지 이 유 전 출	② 전 가 구 주 성 명 손 재 철	③ 기 입 중 지 년 월 일 1964.11.18		
비 고						월 평 균 소득 총 액	16,450		작 성 년 월 일	기 입 시 작 년 월 일	기 입 중 지 년 월 일		
									1967.11.20	1967.11.21	196 . . .		

서 식 제 1 호

<부록 9>

표본가구변동보고서

서울시마포구 조사번호 142

조사원 성명 박순자 ㉠

표본가구번호	가구주성명	조사불능이유	동장 확인인	※ 대체될 표본가구		
				가구주성명	추출자인	
323	유정일	조사구외로 전출	신당동 동장인			

-237-

- 주 1. ※ 표시의 대체될 표본가구란은 중앙에서 기입한다.
 2. 조사불능 이유란은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지도원	1970. 1. 15
확인인	김일규인

<부록 10 >

조사기	조사구
01	121

가계조사면 접조사표제출명세서
1970년 1월 11일

조사원인	인	지도원인	인
------	---	------	---

정	구 분	조사가구수	제 출 수	미제출수	미제출조사가구번호
기 제 출	근로자 가구	14	13	1	323 전출 가구
	근로자이외의가구	18	15	3	354, 476 (전출) 512 (거부)
	계	32	28	4	
비 고					

주	조 사 가 구 분	제 출 수	조 사 가 구 번 호
송	월분 근로자 가구		
	근로자이외의가구		

7. 전국소매물가 조사 및 기준시 소매물가조사

차 례

一. 전국소매물가조사	245
1. 전국소매물가조사의 개요	245
가. 의의	245
나. 목적	245
다. 조사지역 및 대상	245
라. 조사품목 및 조사시점	245
(1) 갑 품목	245
(2) 을 품목	246
(3) 병 품목	246
(4) 중앙조사품목	246
(5) 방세조사품목	246
2. 조사원이 하여야 할 일	246
가. 조사대상처 선정	246
(1) 조사대상처 선정요령	247
(2) 조사대상처 명부작성	247
(3) 조사대상처 변동보고서 작성	247
(4) 조사대상처 변동에 따른 신, 구 가격조사	247
나. 조사가격 기록부 작성비치	248
(1) 갑 조사표 조사가격 기록부	248
(2) 을 및 병 조사표 조사가격 기록부	248
다. 지정상표 열람표작성	248

라. 조사 가격 질의조회 응신서제출	249
3. 실사상의 유의사항	249
가. 품질규격	249
나. 단 위	250
다. 가격조사	250
라. 품질품목에 대한 유의할 점	251
마. 조사시점에 대한 유의할 점	252
바. 조사표류의 접수 및 발송	252
4. 조사표 기입요령	253
5. 각품목별 유의할 점 (품질규격용어해설)	255
부 록	
1. 조사지역 일람표	262
2. 조사대상처 명부	263
3. 조사대상처 변동보고서	264
4. 지정상표 일람표	265
5. 지정상표 변동보고서	267
6. 갑 조사표 조사 가격 기록부	268
7. 을 및 병조사표 조사 가격 기록부	269
8. 조사 가격 질의조회 응신서	270
9. 납입금 확인서	271
10. 조사구 번호일람표	272
11. 계량단위 환산대조표	274

二. 기준시 물가조사	276
1. 의 의	276
2. 조사방법	276
3. 조사대상처 선정방법	277
4. 조사표 사용방법	277
5. 조사대상처 명부작성 및 변동보고서 작성	277
6. 지정상표일람표 작성보고	277

一. 전국소매물가조사

1. 전국소매물가 조사의 개요

가. 의 의

전국소매물가 조사는 일반소비자가 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의 소매가격 및 서비스(用稅)에 대한 요금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목 적

소비자가 최종으로 구입하는 상품의 소매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전국규모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물가지수편제와 기타 물가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나아가서는 국민 소비생활에 필요한 경제시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다. 조사지역 및 대상

전국 32개시의 조사지역에서 지역의 크기와 가격형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58개조사구를 선정하고 각 조사구내의 조사대상처는 규모 및 위치로 보아 소비자나 이용자의 출입이 가장 빈번한 소매점포, 사업체 및 기관을 유의 선정하여 조사대상처로 한다.

라. 조사품목 및 조사시점

식료품, 수거, 광열, 피복 및 잡비중에서 가계지출상의 중요도 ($\frac{1}{10,000}$ 이상)와 가격변동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300개 품목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 병, 증양 및 방세조사 품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갑" 조사품목(부록 12, 13)

소비자의 수요가 크고 가격변동이 비교적 심한 곡물류, 어개류, 채소류, 과일류 및 조미료등의 품목으로서 서울과 지방에서

같이 58개 품목을 선정하여 매월 3회(5일, 15일, 25일) 조사한다. 또한, "갑" 조사표는 2개월 조사시점마다 교대로 사용하여 2개월간 6회의 조사에 사용토록 되어있다.

(2) "을" 조사 품목(부록 14, 15)

가격변동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품목으로서 서울은 200개 지방은 191개 품목이며 매월 1회(15일) 조사한다. 조사표는 6회(6개월)의 조사에 사용토록 되어있다.

(3) "병" 조사 품목(부록 14, 15)

국민학교·공사립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납입금(7개 품목)으로서 매분기 말월 15일(매년 4회)에 조사한다.

조사표는 "을" 조사표 후면에 있으며 2회(2분기)의 조사에 사용토록 되어있다.

(4) 중앙조사 품목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는 품목(서울, 지방공동 품목 24개, 지방품목 2개)으로서 중앙에서 공문이나 전화로 매월 1회(15일) 조사한다.

(5) 방세조사 품목

방세(월세, 전세) 조사의 표본은 시장이 아니고 일반가구이므로 현재 가구단위 표본인 다목적 표본에 의하여 조사하고 있는 가계조사대상가구에서 방세조사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매분기 말월 15일을 시점으로 하여 가계조사원이 가계조사시 동시에 조사토록 한다. 따라서 물가조사원은 방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2. 조사담당자(조사원)가 할일

가. 조사대상처 선정

(1) 조사대상처 선정요령

조사원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조사대상처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소비자 고객이 가장 많은 소매점포로서 계속적으로 경영 유지가 가능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 동일 조사구내에 타조사원이 선정한 대상처와 중복이 되지 않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 다음에 기재하는 점포는 본조사의 조사대상처가 될 수 없다. (부적격 대상처)

- ① 도매점포
- ② 통신판매점
- ③ 중고품 판매점
- ④ 영업상태가 극히 불량한 점포
- ⑤ 백화점 등
- ⑥ 노점

(2) 조사대상처 명부작성

조사대상처 선정이 끝나면 조사원은 조사대상처 명부를 소정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명부는 각 2부를 작성하여 중앙에 1부를 송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3) 조사대상처 변동보고서 작성

조사대상처에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사원은 즉시 조사대상처 선정요령에 의하여 새로운 대상처를 선정하고 조사대상처 명부에 변동사항을 정정기입하여 조사에 착오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조사대상처 변동보고서" 2매를 작성하여 중앙에 1매를 송부하고 1매는 보관한다.

(가) 조사대상처가 폐업하는 경우

(나) 조사대상처가 전업하는 경우

(다) 조사하여 오던 품목중 그 일부를 취급하지 않게된 경우

(라) 현재의 대상처 보다 규모가 더 크고 또 영속성을 지니고 더 많은 고객을 가진 동업중의 점포가 개업하여 성업중인 경우

(마) 조사품목의 변동은 없으나 그 대상처의 상호 또는 사업주의 변동이 있을 경우

(4) 조사대상처 변동에 따른 신, 구가격조사

조사대상처를 변경하였을시는 "음" 품목의 경우는 서울 지방 공회 1회에 한하여 신, 구 대상처에서 신, 구가격을 동시에 조사하며"잡" 품목에 있어서는 서울은 1회, 지방은 3회(1개월)에 걸쳐 신, 구가격을 조사한다.

나. 조사가격 기록부 작성비치

조사원이 조사한 전 품목에 대하여 가격의 변동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조사가격 기록부"를 작성 비치하고 그 변동상태와 변동원인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 갑조사표 조사가격 기록부(부록 6)

갑 품목에 대한 순기별(旬期別) 조사가격을 기입하고 품목별 가격변동율이 5%이상 등락한 경우에는 그 변동원인을 규명하여 간명히 기재한다.

(2) 을 및 병조사표 조사가격 기록부(부록 7)

을 품목 및 병 품목에 대하여 월별 및 분기별 조사가격을 기입하는 것이며 그 기재요령은 갑조사가격 기록부와 같다.

다. 지정상표 일람표 작성

(1) 품질규격은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 통일이 불가능한 품목에 있어서는 이미 결정한 품질규격의 상품으로서 그 지방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상표를 조사지역별(각 시)로 통일지정하여 계속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상표지정」이라 한다.

(2) 따라서 조사원은 지역별로 결정될 상표지정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가 가장 많이 거래하는 상품의 상표를 지정하여 「상표지정 일람표」에 기재한후 1통은 중앙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1통은 보관한다.

(3) 소비패턴의 변화, 상품의 다양화로 지정상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지역별로 대표성이있는 상표로 변경하여 신, 구가격별 조사함과 동시에 지정상표 변동보고서를 2통작성, 1통은 중앙에 송부하고 1통은 조사원이 보관한다.

한 지역에 2개이상의 조사구가 있는 경우는 각 조사원이 사전에 지정상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각조사원의 합의에 의하여 공통의 지정상표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조사가격 질의조회 응신서 제출(부록 8)

중앙에서 조사표류의 내용을 검사한 결과 잘못 조사되었거나 또는 가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조사원별로 조사가격에대한 질의조회(서면 또는 전화)하게 되는 바 이때 해당조사원은 지적된 품목에 대하여 지체없이 재 조사하여 반송기일내에 반드시 중앙에 필착토록 하여야 한다.

3. 실사상의 유의사항

가. 품질규격

품질 규격이라 함은 상품의 질, 크기, 무게, 모양, 출산지, 상표등을 말한다. 이 품질규격의 결정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출입

하는 점포에서 같은 상품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표의 상품을 조사한후 이를 전국적으로 종합하여 공통적인 것을 찾았으며 또한 각 상품의 생산공장에서 품질, 크기 및 상표등을 대조확인하여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품질규격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결정된 품질규격이나 지정상표를 임의로 바꾸어 조사하여서는 안되며 항시 지정된 품질규격을 확인하여 정확한 가격을 계속 조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품질규격의 상품이 시장에서 일반적 대표성이 없거나 저서 조사품목으로 적당치 못한 경우에는 곧 중앙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단 위

(1) 거래되는 각 상품의 단위를 전부 조사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위를 선택하고 이를 「미터법」을 적용 환산하여 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대상처에서 척관법으로 거래되는 단위는 본조사 단위로 정확히 환산하여 그 가격을 기입하여야 한다.

(2) 상기한 품질규격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항목인 단위를 정확하게 적용치 않으면 조사가격이 10 배, 100 배로 크게 나타나거나 반대로 10 분지 1 또는 100 분지 1 등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다. 가격조사

(1) 소매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누리」 후의 실제로 매매된 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며 호가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가격조사는 반드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동일한 품질규격을 항상 조사하여야 하며 대상처는 특별한 사유없이 절대로 변

경시켜서는 아니되고 또한 응답자가 일정하여야 함은 물론 가능한 조사원의 변동도 없어야 정확한 가격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2) 조사대상처에서 평상시에 실제로 거래되는 정상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가격은 조사하지 않는다.

(가) 재고정리나 자금회수를 위한 염가 대매출 가격

(나)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다량으로 판매하는 특별할인 가격

(다) 재해, 폐업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이상가격

(라) 중고품가격 또는 월부 판매가격

(3) 일정한 조사대상처와 일정한 응답자로 부터 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현금거래와 외상거래간에는 가격에 차가 있으니 반드시 현금거래가격을 조사한다.

라. 품질품목에 대한 유의할점

(1) 조사대상처만이 조사시기에 일시적으로 품질되고 다른 점포에는 그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이 될 수 없음으로 타점포에서 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며 타점포에도 없는 경우는 품질로 취급, () 안에 품질직전 조사가격을 기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타점포라 함은 조사대상처 부근에서 동일상품을 취급하는 비슷한 점포를 말한다.

(2) 어떤 품목이 영구히 품질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중앙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어개류, 야채 및 과실류등 계절품목은 가능한 한 계속 조사하여야 한다.

(4) 품질품목에 대하여 조사원 자신이나 또는 피조사자가 추정

한 가격을 조사기입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마. 조사시점에 대한 유의할점

조사담당자가 유의할 조사시점(1의 라항 참조)은 아래와 같다.

구분 표별	조사일	조사기간	발송일시
"갑" 조사표	매월 5일	1일	5일 오후중
	15일	1일	16일 "
	25일	1일	25일 "
"을" 조사표	매월 15일	2일	16일 "
"병" 조사표	분기말월 15일 (3, 6, 9, 12)	2일	16일 "

단, (1) 조사일이 공휴일이거나 조사일 다음날(6일, 16일, 26일)이 명절(추석, 구정, 성탄절)인 경우 조사일 전일에 조사한다.

(2) 조사일이 명절인 경우 2일앞당겨(3일, 13일, 23일) 조사한다.

(3) 조사전일(4일, 14일, 24일)이 명절인 경우는 3일 앞당겨(2일, 12일, 22일) 조사한다.

(4) 위의 경우와 같이 명절을 피하여 조사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하루씩 앞당겨서 조사한다.

바. 조사표류의 접수 및 발송

본 조사는 시간을 다투는 조사이고 신속, 정확성을 그 생명으로 하는 만큼 조사표류의 접수 및 발송은 지정된 일시를 꼭 지킬것.

(1) 접수

중앙에서 발송되는 모든 조사표는 직접 조사원이 접수하게 된다.

(2) 발송

(가) 조사표(갑)

해당조사일의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로 중앙으로 직송한다.

(나) 조사표(을)

조사표 갑에 비하여 품목이 많은 만큼 조사시점인 15일부터 2일간 조사하여 16일 오후에 중앙으로 직송한다.

(다) 조사표(병)

매분기 말월의 15일에 조사하여 조사표(을)과 동시 중앙으로 직송한다.

4. 조사표사용 및 기입요령

(1) 「갑」 조사표 사용방법

「갑」 조사표는 월 3회 조사함으로 조사원이 송부한 조사표를 집계완료하여 다음 조사일까지 조사원에게 도착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음으로 조사표 2매를 교대로 사용하여 조사원과 중앙사이에 왕복토록 하였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중앙으로 송부한 조사표(전순)의 도착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미 도착되어 있는 조사표(전전순)에 가격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순가격을 먼저 이기한 다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꼭 같은 내용(가격)이 기재된 2매의 조사표(갑)가 작성되는 것이다.

(2) 조사표 기입요령

가. 시, 도지구

조사 지역명(시, 도)을 기입한다.

나. 조사구 번호(부록 10)

각 조사구별로 부여한 고유 번호를 기입한다.

다. 조사 책임자 및 조사 담당자(성명)

관할지역의 조사 책임자와 조사 담당자(조사원)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라. 전순(월) 가격

전순(월) 가격은 가격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순(월) 가격을 기입한다.

마. 조사월, 일

조사표(갑)에는 조사시점의 월일을 기재하고 조사표 을 및 병에는 월만 기입하여도 무방하다.

바. 가격란

(1) 금순(금월 또는 금분기)에 조사한 가격을 기입한다.

단, 조사금액이 원단위 이하까지 나올때는 소수점이하 한단위에서 반올림한다.

(2) 조사시에 일시품절(대상처에도 없을뿐 아니라 타 점포에도 없을시)된 품목은 ()안에 품절 직전가격을 기입한다. (품절품목에 대한 조치중 (1)항 참조) 조사구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예, 시내버스, 납입금(국대))은 가격란에 "해당없음"이라 기입한다.

사. 등락사유란

등락사유란에는 전조사시점 가격과의 차가 5% 이상의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변동 원인을 간명히 기입한다.

아. 상표지정 품목의 상표 기입은 품질규격란 우측 ()안에 기입한다.

자. 각 조사표 말미의 비고란(을표)

여기에는 품질품목에 대한 상세한 사유 기타 건의사항을 기

입한다.

5. 각 품목별 유의할 점 (용어해설)

보리쌀: 국내산 쌀보리를 조사한다.

밀가루: 밀가루 제분률은 3종으로써 70% (일등급), 77% (이등급), 85% (삼등급)가 있다. 이중 77% (이등급)제품만 조사대상이 된다.

새우젓: 가을에 담은 주젓을 조사하는데 봄에 담은 백화젓, 유월에 담은 육젓, 그리고 동백젓은 조사대상이 안된다.

칼치: 길이 70cm 되는 아가미부터 꼬리지느러미 끝까지 전장을 말한다.

기타 어물류 길이는 전장을 말함.

배추: 호(胡)배추로써 개당 3.75kg (1관)인 완전결구품을 조사한다.

호박: 조선휘박 애호박을 말한다.

간장: 판매를 목적으로한 공장제품을 말한다. 이때 일반 가정에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파는 것은 조사대상이 안된다.

커피: 대중적인 다방에서 파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특수건물 또는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다른 다방보다 비싸게 또는 싸게 파는 곳은 제외한다.

밀크: 목장우유를 말한다.

탁주: 양조장 제품으로써 병에 담지 않은 뒷술을 말하며 주류판매점 판매가격이라 함은 대포집에서 판매하는 순술값(안주 기타 포함치 않음)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주류 판매점에서 마실때 가격이 아니고 술을 사가는 가격이다.

단무지 : 일명 닥광을 말한다.

외 식 : 외식 (外食) 품목에 있어서 대중식사 1급이라 함은 대중식당으로서 특수지역 또는 특별한 설비를 한 영업장소가 아니고 그 조사구내에서 제일 나은 음식점을 말한다. (과거 위생등급 A급에 해당되는 음식점) 그리고 순양식 또는 순일식 음식점이 없는 지방은 위에서 설명한 일급, 대중식당에서 판매하는 양식 또는 일본식의 가격을 조사한다.

각 재 : 미송이나 나왕이 아니고 육송이다.

부록크 : 통칭 4 인치 부록크를 말하며 특제가 아닌 보통품만 조사대상이 된다.

스텐주발 : 스텐의 두께가 1.5mm 인 것으로서 조사지역별로 통일성 있게 지정된 상표를 조사하여야 한다.

석 유 : 유공제품 등유로서 배급가격이 아닌 지정판매소 가격을 말한다.

연 탄 : 배달료 (직매점에서 가정까지의 운임) 를 제외한 점두판매 가격을 조사하되 잠화상이 아닌 연탄직매점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모 사 : 선염 순모사라 함은 먼저 원모에 염색을 해서 뽑은 것을 말하며 실을 뽑은후에 염색한 것과는 다르다.

면직물 : 면직물에 있어서 "수" (手, S) 라 함은 원면 1 파운드 (1 LBS = 453.6 g) 을 가지고 길이 840 야드 (YDS) 의 실로 뽑았을 때의 실의 굵기를 말한다.

모직물: 모직물에 있어서 모사의 수(S)는 면사의 경우와는 달리 1Kg의 원모를 가지고 1,000m의 길이로 뽑았을 때의 실의 굵기를 말한다.

그리고 48수2합사(48S/2)라 함은 48수의 모사 두 줄을 꼬아 방적했다는 뜻이다.

나이론직물: 나이론직물에 있어서 데니엘(Denier)이라: 함은 면사 모사와는 달리 1Kg의 섬유를 9,000m의 길이로 늘어냈을 때의 굵기를 말한다.

금반지: 3.75g의 금반지를 조사하되 금반지를 만드는데 소요된 수공임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밀: 국내산 참밀을 말한다.

명란젓: 용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좁쌀: 차조를 말한다.

수수쌀: 차수수를 말한다.

술비: 완전 건조품을 말한다.

미역: 길이 140cm, 폭 13cm정도 미역을 조사하되 지역별로 소비되는 미역의 종류(양양각, 삼척각, 울산각등)가 다르므로 지역별로 산지별 미역종류를 지정하여 조사한다. 규격에 맞는 미역이 없을시는 정확하게 환산한다.

고추가루: 완전히 도정한 것이 아닌 거친 중가루(고추씨가 조금 있음) 상품을 조사한다.

꽃감: 한 꽃이당 10개의 1꽃이 중품을 조사한다.

밤: 신되 소두1되의 고봉을 조사한다.

낙화생: 신되 소두1되(1ℓ)를 말한다.

- 초 밥 : 일본식 식당의 "김" 초밥을 조사한다.
- 창호지 : 각 지방산이 아니고 "전주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 수저 : 같은 스텐레스 강철제 수저도 주물(鑄物)(쇠를 녹여서 만듦)과 방자(강철판을 두들겨서 만듦) 제품이 있는데 주물로 만든 상품 성인용 젓가락 포함하여 조사한다.
- 뭇 : 2인치(5.1cm)를 말한다.
- 라디오 : 표면이 호마이카로 칠된 금성사제품을 말한다.
- 책상 : 위에 설함이 1개있고 편측설함이 4개내리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재봉틀 : DA형(보급형 가정용)으로서 위에 설함이 한개 양측 내려 설함이 2개씩 도합 5개, 발틀로써 호마이카 칠한 드레스표를 말한다(5개추라함)
- 맞춤코트 : 일명 스프링(Spring)코트라 하는데 성인남자가 양복점에서 맞추는 가격을 말한다.
- 한복 : 여기서 상표지정은 복지의 생산회사명을 말하며 조사 지역별로 통일되게 지정된 상표이다.
- 잠바 : 잠바기지에는 나이론지, 레드론지, 공군지, 나단지등이 있는데 레드론기지로 만든 기성품을 말한다.
- 자녀복 : 여아 7세정도의 레드론으로 만든 반소매 원피스로 단조로운 색이 있는 상품을 말한다.
- 와이샤스 : 긴소매를 말한다.
- 벡타이 : 폴리에스타 100% 제품으로서 최신형을 말한다.
- 모시 : 세직(細織)아닌 보통 모시중에서 상품을 말한다.
- 항생제 : 크로루마이신 250mg이라 함은 개당 단위를 표시한 것이다.

관목시계 : 남자용 2.1 석으로서 요일없이 날짜만 나오는 국내 조립품을 말한다.

조산료 : 종합병원 또는 A급산부인과위원의 2등입원실에서 입원하는 경우다.

이발료 : 일급이라 함은 특수지역 또는 특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이용소보다 비싸게 받는 곳이 아닌 즉 예를들면 호텔, 백화점 기타 특수건물내의 설치된 점포를 제외한 과거 위생등급 A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이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무허가는 대상이 안된다. 고대료, 과마료 및 목욕료도 이와같다.

도화지 : 마니라지라 함은 앞뒤 양면이 매끈한 도화지를 말하며 45.4 Kg 이라 함은 마니라지 1연의 무게를 말한다. 1연이란 전지 500 장을 말함.

방화관람료 : 2 시간 정도 (뉴스나 약품선전은 제외)

야간상영하는 성인의 요금으로 입장세를 포함한 기본 요금을 말한다. 단, 서울은 개봉관 외화관람료도 이와같음.

필 림 : 카메라용으로써 20 장 외국제 재포장된 보통품을 말한다.

수도료 : 가정용으로 총량, 전용선 (專用栓), 월간 기본요금 포함 10 m³ (10 t) 가격인데 지역별로 기본료 지정이 다르므로 기본용량이 10 m³를 초과시는 10 m³ 요금을 환산하여 기입하며, 수리비, 시설비, 기타 용선료부과 징수는 제외하며 대상처는 관할 관청에서 조사한다.

국민 학교 기성회비 : 국공립학교에서 1개학교에 1인이 재학할때 매월 납입하

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단,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이때 1년분이나 1개월씩 징수하면 분기로 환산하여
조사기입한다.

납입금 : 납입금이라 함은 매학기마다 납부하는 수험료, 실험실
(공중) 습비, 기성회비, 자율적 경비 네가지를 합한 금액이며
도서비나 저축비는 제외한다.

단, 년초에 보고한 납입금 조사표에 의해 조사하되
분기별로 추가 징수액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
기하여 보고한다. 이때 조사대상처는 인문계 주간학
교이며 인문계학교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실업계학교
를 조사대상처로 한다.

납입금(사중) 납입금(공고) 및 납입금(사고)도
이와 같다.

납입금 확인서(보조표) 작성 (부록 9)

납입금 조사는 조사표 병표에 있는 만큼 매분기 연 4회 조사하
나 그에 대한 보조조사로써 비목(수험료, 기성회비, 실험실습비, 자
율적경비)별로 연간 총액을 년초 3월 15일을 조사기준일로 하여
별표와 같이 조사하여야 하며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조사원이
보관하고 남은 1통은 병표와 동봉하여 중앙으로 직송한다.

품질규격상의 유의점

레코드 : LP형 레코드로서 직경 27cm 스트레오(입체적인 음
향) 국내 인기있는 일급가수가 최근 취입한 신곡을
말한다. 이때 하이파이는 제외된다.

오락기구 : 배드민턴 라켓트 2개인데 라켓트는 철근이 자루에
삽입되고 카바가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은수저 : 남자성인용으로 무게 2량 (75 g) , 70 % 은젓가락 포함 가격을 말한다.

용어해설

기 모 : 털이 일어남

순모사 : 다른것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털실을 말한다.

교 직 : 명주와 무명실로 날과 씨를 합하여 짠것 또는 두가지 이상의 실로 서로 합하여 짠것.

하이힐 : 뒷굽이 높은 여자구두

문 직 : 무늬가 있게 짠 옷감

인 견 : 인조견의 준말

수 직 : 손으로 짠

도 금 : 어떤 물질 (주로 쇠붙이) 의 표면에 얇은 막으로 올린것.

본 견 : 명주실로 짠 비단·인조견이나 교직에 상대하여 일컬으는 말.

수 불 : 쇠붙이를 녹여서 만든 물건

방모사 : 공장에서 카드미루 기계를 통하여 나온 실로써 꼬임이 굵고 오바나 코트지에 쓰임.

소모사 : 공장에서 정방계통 방적기계로 만들어진 털실

종 량 : 제량기를 장치하고 소모량에 따라 값을 내는것.

전용전 : 집안에 가설해 놓고 그 주인만이 쓰는 수도

범포지 : 천막기지와 비슷한 가방기지를 말함.

부록 1

조사 지역 일람표

지역부호	조사 지역 명	지역부호	조사 지역 명
01	서울특별시	30	진해시
02	부산광역시	31	울주군
03	대구광역시	32	제주시
04	대전광역시		
05	대구광역시		
06	광주광역시		
07	전라북도		
08	전라남도		
09	충청북도		
10	충청남도		
11	경기도		
12	경기도		
13	강원도		
14	충청북도		
15	충청남도		
16	전라북도		
17	전라남도		
18	경기도		
19	경기도		
20	경기도		
21	경기도		
22	경기도		
23	경기도		
24	경기도		
25	경기도		
26	경기도		
27	경기도		
28	경기도		
29	경기도		

부록 4

전국소매물가조사
지정상표 일람표

조사구

조사원성명

①

품명	지정상표	회사명	품명	지정상표	회사명
밀가루			콩치통조림		
설탕			복숭아통조림		
사이다			콜라		
베니야판			쥬스		
시멘트			청주		
스텐주발			사기주발		
냄비			주전자		
양은솔			탁상시계		
연탄			전기아이롱		
광목			전구		
포푸린			형광등구		
솜			캐비넷		
남자교무신			성냥		
여자교무신			양초		
운동화			맞춤속녀복		
세탁비누			맞춤코트		
된장			맞춤오바		
뉴슈가			한복		
라면			동내의		
마카린			런닝샤쓰		

품 명	지정상표	회 사 명	품 명	지정상표	회 사 명
용			빅 타 이		
양 단			해독강장제		
나이론다후다			항 생 제		
재 봉 사			노 트 (소)		
타 을			노 트 (대)		
우 화			그 림 물 감		
남 자 양 말			크 레 파 스		
여 자 양 말			구 두 약		
미 역					
비 고					

부록 6

감 조사 표 조사 가격 기록부

No	순기별 월 별 품 명	월				월							
		5 일		15 일		25 일		5 일		15 일		25 일	
		가 격	등 락 원 인	가 격	등 락 원 인	가 격	등 락 원 인	가 격	등 락 원 인	가 격	등 락 원 인	가 격	등 락 원 인
1	쌀												
2	보 리 쌀												
3	밀 가 루												
4	콩												
5	쇠 고 기												
6	돼 지 고 기												
7	칼 치												
8	조 기												
9	생 명 태												
10	콩 치												
11	건 명 태												
12	건 멸 치												
13	건 오 징 어												

부록 9

공사	립구분
----	-----

납입금할인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시 . 구
도 시

조사원 _____ 인

구분 \ 기 별	년 간 총 액	1 / 4	2 / 4	3 / 4	4 / 4	비 고
수험료						
기성회비						
실험실습비						
자율적경비						
계						

12711

위와 같이 확인함

1970 년

월

일

학 교 장

인

부록 10

조사구번호일람표

도 별	조 사 구 명	조 사 구 번 호	도 별	조 사 구 명	조 사 구 번 호
서울	종 로 구	0101	경 기	수 원 시	1001
"	중 구	0102	"	"	1002
"	동 대 문 구	0103	"	의 정 부 시	1101
"	마 포 구	0104	강 원	춘 천 시	0801
"	영 등 포 구	0105	"	"	0802
"	서 대 문 구	0106	"	원 주 시	1201
"	성 동 구	0107	"	강 릉 시	1301
"	성 북 구	0108	"	속 초 시	1401
"	용 산 구	0109	충 북	청 주 시	0901
"	슈 퍼 마 켈 트	0110	"	"	0902
부산	부 산 진 구	0201	"	충 주 시	1501
"	영 도 구	0202	충 남	대 전 시	0501
"	중 구	0203	"	"	0502
"	서 구	0204	"	천 안 시	1601
"	동 구	0205	전 북	전 주 시	0701
"	동 래 구	0206	"	"	0702
경 기	인 천 시	0401	"	군 산 시	1701
"	"	0402	"	이 리 시	1801
"	"	0403			

도 별	조 사 구 명	조 사 구 번 호	도 별	조 사 구 명	조 사 구 번 호
전 남	광 주 시	0601	경 남	삼 천 포 시	3001
"	"	0602	"	울 산 시	3101
"	목 포 시	1901	계 주	재 주 시	3201
"	여 수 시	2001			
"	순 천 시	2101			
경 북	대 구 시				
"	남 구	0301			
"	중 구	0302			
"	북 구	0303			
"	동 구	0304			
"	서 구	0305			
"	포 향 시	2201			
"	경 주 시	2301			
"	김 천 시	2401			
"	안 동 시	2501			
경 남	마 산 시	2601			
"	진 주 시	2701			
"	충 무 시	2801			
"	진 해 시	2901			

부록 11

조사표에있는 제량단위 환산대조표

조사표별	대분류별	미터법	척관법	비고
갑		20 l	1 말 (10 되)	
		600 g	1 근 (160돈)	
		3.75 Kg	1 관	
		375 g	1 근 (100돈)	
		0.18 l	1 홑	구 되
		2 l	1 되	
		0.324 l		2 홑들이 병에 넣은양
		1.2 cm	4 분	
		181.8 cm	6 척	
		3.31 m ²	1 평	
		918 cm ²	1 평	유리평수
		90.9 cm	3 척	
		1.8 l	1 되	구 되
		88.9 cm	35 인치	
		91.4 cm	1 마	
		91.4 cm	36 인치	
		255 mm	10.7 문	남자용
		250 mm	19 호	여자용
		225 mm	9.5 문	남자용
		3.75 g	1 돈중	
37.5 g	1 량중			
0.9 l		5 홑들이 병에 넣은양		
을	식료품	1.8 Kg		약반관의 무게 (0.5관)

조사표별	대분류별	미터법	척관법	비고
	주 거	1 ℓ	5 홉	4 홉들이 병에 넣은양
		0.64 ℓ		
		272.7 cm	9 척	
		3,338 cm ³	1 재	
		0.3 cm	1 분	
		10.2 cm	4 인치	
		40.6 cm	16 인치	
		20.3 cm	8 인치	
		5.1 cm	2 인치	
		3.79 ℓ	1 갈론	
		121 cm	4 척	
		57.6 cm	1.9 척	
		106 cm	3.5 척	
		75 cm	2.5 척	
	광 피 열 복	18 ℓ	1 말(10되)	구 되
		48 cm	19 인치	
		22.5 Kg	6 관	
		152.4 cm	60 인치	
		88.9 cm	35 인치	
		73.7 cm	29 인치	
		94 cm	37 인치	
		38 cm	15 인치	
		50 cm	1 척	
		7.5 Kg	2 관	
		80 cm	2 척 6촌 4분	
		35 cm	14 인치	
		32 cm	1 척 3분	
		75 g	2 량중	
	잡 비	31.8 Kg	70 파운드	명주, 모시에 한함
		45.4 Kg	100 파운드	
		1.4 Kg	3 파운드	
		10 m ³	10 톤	

二. 기준시물가조사

1. 의 의

전국소매물가 조사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소매물가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위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Service) 요금도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조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소비자 물가조사에 의하여 얻어진 자료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산출의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어느 일정시점 즉 기준년도를 설정해 놓고 조사에서 얻어진 가격계열을 기준년도에 대비하여 산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1970년은 매 5년마다 변경되는 기준년도가 되는 해이므로 기준년도의 품목선정과 가격을 얻기위하여 현행 조사품목 (300개) 이외 118개 품목을 추가예상품목으로 선정, 현행 품목조사와 함께 조사하는 것이다.

2. 조사방법

기준시 물가조사품목은 총 118개로 갑 (22개), 을 (89개), 중양 (7개) 조사품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중양조사품목은 현행과 같이 중양에서 조사하며 갑, 을 조사품목 역시, 조사지역, 조사시점, 조사방법에 있어서 현행 소매물가조사와 동일하다. 단지 을조사품목 조사시에 있어서는 현행 품목과 추가품목을 동시에 할 시 업무량이 너무 많음으로 추가품목은 조사일 1일 또는 2일전에 조사 하였다가 현행 조사표와 함께 중양으로 송부하여도 무방하다.

3. 조사대상처 선정방법

조사대상처 선정방법은 현행 품목의 조사대상처 선정방법과 동일하다. 단, 다음 품목의 대상처 선정은 각별 유의하여야 한다.

가. 목장우유: 협동조합이나 목장에서 생산하여 매일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것으로서 다방이나 상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아니다.

나. 전화가설비: 신설비로서 체신부에 전화가설 신청을 하고 불입하는 공탁금이며 조사대상처는 체신청(또는 전신 전화국)이 된다. 그리고 조사원이 2인이상 있는 도시에서는 "01"번 조사원이 조사하여 각시의 조사구 「01」조사표에 기입보고 한다.

다. 고궁입장료: 고궁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처로 하되 유원지나 박물관을 대상처로 정할 수 있다.

4. 조사표 사용방법

기준시 물가조사표는 현행조사표와 같은 왕복식제도가 아니므로 매 조사시마다 새조사표를 사용, 조사하여 중앙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전순가격은 현행조사표와 마찬가지로 기준시 물가조사 가격기록부에 기입되어 있는 전순가격을 이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격기록부에는 매 조사시마다의 가격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아야 한다. 품절처리도 현행조사와 동일하다.

5. 조사대상처 명부작성 및 변동보고서작성

현행조사와 동일하다.

다만, 지정한 대상처가 현행품목에 대한 대상처가 아니고 새로 지정된 대상처인 경우 대상처명부 "비고"란에 "신설"이라고 기입한다.

6. 지정상표 일람표 작성보고

중앙에서 정한 상표지정 품목에 대하여서는 품질규격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지역에서 거래가 많은 순으로 상표를 2, 3 개 선정하여 상표지정일람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이 선정된 상표의 가격을 전부 조사하여 조사표와 가격기록부에 각각 기입하여야 한다. 그러면 중앙에서 전국 각지역의 상표를 가능한한 동일 상표로 통일하여 지정해주게 되며 그후 부터는 한 상표에 대한 가격만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에서 결정한 상표이외의 가격 (가격기록부 기재) 은 삭제하게 되는 것이다.

8. 도매 물가 조사

차 례

1. 가격조사	283
가. 도매가격이란	283
나. 조사범위	284
다. 조사시점	285
라. 조사방법	285
(1) 가격의 결정요소	285
(2) 조사요령 및 유의사항	289
(3) 조사표의 기입방법	290
마. 가격불연속의 해결	291
(1) 가격불연속의 실예	291
(2) 가격의 불연속보고표의 기입방법	295
2. 합성가격산출 및 가격보고	296
가. 합성가격산출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	296
나. 합성가격산출표의 기입방법	297
다. 가격보고	298
부 록	299

1. 가 격 조 사

가. 도매가격이란?

가격은 일반적으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으로 구분된다. 도매가격이란 상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소매가격(소매상→최종소비자)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상품이 집약적으로 거래될 때 이루어지는 가격을 말한다. 그러나 한 상품이 생산자로 부터 소매상까지 이르는 동안에 몇 단계의 도매(제1차 제2차.....등)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이와 반면에 생산자로 부터 도매상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소매상에 거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도매가격의 정의를 내리는데는 첫째로 거래단계에서 어느것이 도매물가 조사가 대상으로할 시장인가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본 조사에서 말하는 거래단계는 제1차 도매상이며 이곳에서 조사하는 가격은 판매가격이다.

둘째로 고려하여야 할것은 거래조건이다. 같은 도매상에 있어서도 거래조건을 달리함으로써 상품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을 생각할 수 있다. 거래되는 상품의 수량이 한 개 두개와 같이 소량을 거래하는 경우와 한 상자 혹은 한트럭분을 거래하는 경우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다른것이 통례이다.

그러므로 본 조사에서는 상품별로 거래단위를 미리 지정하여 실사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매품목의 거래량은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도매가격은 어디까지나 대량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1차 도매상이 대량으로 판매하는 가격(생산자가 도매상에 판매하는 경우에 가격도 포함) 혹은 도매상이 타도

매상 또는 소매상에게 도매를 목적으로 대량 거래하는 가격을 포착하면 된다.

또한가지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결제방법이 있다. 한 상품을 거래하는 데는 현금거래와 외상거래 혹은 기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결제방법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장부상에 나타난 현금거래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조사원은 본조사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인식하여 실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조사범위 ...

(1) 본조사는 국민소득 발생과정에 있어서 기업면에 거래되는 국내생산품(수출품 포함) 및 수입상품 즉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도매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의 변동 추세를 파악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본 조사의 대상은 기업(생산자 혹은 도매상)이며 기업간에 거래되지 않는 상품, 예를 들어 생산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전기료금과 같은 것은 본 도매가격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업이 구입한 동력은 당연히 조사대상에 포괄되어야 한다.

(2) 도매물가 조사의 대상은 상품에 한한다.

(3) 도매가격은 제1차 도매가격(생산자 가격포함)임을 전제로 하여야 함으로 각 도시마다 전상품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며 제1차 거래의 비중이 큰 지역에서만 조사된다.

(4) 본 조사는 다음 10개 도시를 포괄한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목포	청주
인천	춘천		

다. 조사 시점

가격조사는 월 3회로 하고 있다.

매월 5일, 15일, 25일에 각각 순별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3개 시점의 평균가격을 가지고 그 달의 물가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위의 가격조사일이 휴시일이라던가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전날도 휴시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조사일 다음날을 택한다.

라. 조사방법

(1) 가격의 결정요소

각 조사원은 본부에서 미리 지정해준 대상사업체를 상대로 지정된 상품의 가격을 조사하게 되는데 실사에 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가격 결정요소를 엄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가) 품질 규격

품질 규격이란 상품의 물리적 성질, 형태적 규격 또는 품질 등급을 말한다. 개개 상품에 대하여 취급업자가 품질규격을 판정함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요소만을 지정했으며 가격조사의 기술적인 제안을 고려하여 업계가 고려의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요소를 전부 포함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품질 규격의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품질 내용이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립될 때 비로소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기술의 부단한 혁신이 행해지고 있을 경우에는 위의 조건이 성립될 수 없으며 생산기술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떤 지정된 품질 규격이 변화되지 않고도 상품의 품질이 변화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이와같은 품질상의 향상 또는 저하에 비례해서 가

격이 상승 또는 하락한다면 가격조사로서 별문제는 없으나 대개의 경우 품질의 근소한 변화는 가격의 인상 인하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 통례이며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품질의 변화가 누적되면 물가지수의 수준은 실제와 상당한 「갭」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품질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심한 차이가 발견될 때에는 마땅히 지수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포장 또는 용기대

거래의 관습상 포장과 용기가 포함되어 거래되는 것은 포장 또는 용기대를 포함한 가격으로 조사해야 하며 포장 및 용기가 제외되어 거래되는 것은 포장 및 용기대를 제외한 가격으로 조사해야 한다. 거래의 관습이 포장 및 용기를 제외하고 가격을 결정하는가 또는 포장 및 용기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는 특수한 경우만을 지적 하였으므로 그 밖의 것은 전부 보통의 포장 또는 용기대를 포함한 가격으로 조사한다.

(다) 가격의 종류

상품이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로 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므로 그 중에서 어느 거래 단계의 가격을 조사하여야 할 것인지를 지정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본 도매물가지수는 거래의 제일단계의 가격 즉 제일단계 도매가격(생산자 판매가격포함) 또는 수입업자 판매가격을 조사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가까운 거래단계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가격조사 담당자로서는 개

개상품에 대하여 대리점 판매가격(생산자 판매가격 포함) 도매상 판매가격(대량도매상의 가격을 말함) 위탁상 판매가격 도착역 가격 부두가격 공장매입가격 등과 같이 본부에서 지정한 거래단계의 가격을 조사해야 한다.

상품에 따라서는 공정가격 또는 협정가격과 시장실세가격이 서로 다른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서는 사실상 거래에 적용된 가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정된 거래단계에서 공정가격 또는 협정가격제도가 지켜지고 있고 또 그것이 대량으로 거래되는 한 일부 예외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일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지정된 거래단계에서 공정가격 또는 협정가격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거래가 근소하다면 사실상의 시장실세 가격을 취급하여야 한다.

단, 이와같은 경우에는 그 사정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인도조건

공장인도, 수입업자창고인도, 대량도매상, 역두 인도와 같은 것은 주로 인도장소 또는 운송비 부담조건등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상관습상 운송비를 포함치 않은 가격을 취한다.

따라서 품질규격표에 명시되어 있지않는한 운송비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말한다.

(마) 대금결제조건

선물거래가격과 외상거래가격은 현물 및 현금가격과 차이가 있는것이 보통이다.

가격조사 담당자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현물 및 현금거래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며 대량거래에서 현금할인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현금할인후의 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바) 최소거래단위

일부 기계류와 같이 대량으로 거래되지 않는 특수한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량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대량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표현이므로 상품에 따라 개념이 일정하지 않겠지만 예를들면 한 「트럭」분의 쌀, 한 화차의 석탄을 대량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량으로 판매될 경우에 그 호가단위는 소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지만 가격이 거래량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에 대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량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취하여야 한다.

(사) 간접세

간접세라 함은 주세 물품세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말하며 보통가격에 대하여 몇 「퍼센트」의 세율로서 부과된다. 이러한 간접세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포함한 가격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위에 말한 몇가지의 가격결정요소를 고려하여 본부에서는 개개의 조사상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품질규격 및 거래조건등을 지정해 두었으므로 가격조사 담당자는 거기에 쫓아서 해당되는 조건하의 상품을 조사할것은 물론 지정되어 있지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 말한 기본원칙에 따라야 할것이며 한번 적용한 원칙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정된 품질규격 및 거래조건은 고정불변인 것이아니라

대부분 유동적 성격의 것이 많다. 그러므로 가격조사 담당자는 지정된 품질규격 및 거래조건외 상품중에서 완전히 거래가 없거나 유사품이 생겨서 시장에서의 대표성이 없어질 경우에는 각자의 임의 판단으로 변경하지 말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부로 알린 다음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조사요령 및 유의사항

가격조사를 하는 때는 대상처를 조사원이 일일이 순방하면서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질문조사와 전화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전화조사의 두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방법중 어느것을 택하여도 무방하나 조사원 자신의 편의에 의하지 않고 대상처의 사정과 실사의 긴급성등을 고려하여 택하여야 한다.

전화조사를 할경우라 하더라도 조사원은 그 대상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가격자료제공자로 하여금 제공되는 가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또 어느 방법을 택하여 조사를 할지라도 가격조사담당자는 응답자의 직책(또는 직위) 성명을 암기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친밀감을 갖고 질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응답자를 선택하여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응답자의 변경에서 오는 부당한 가격보고를 피할 수 있다.

가격을 조사할때 (XX값이 어떻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하면 (그저 그렇습니다) 또는 (마찬가지입니다)와 같은 대답이 나올 때가 많으며 이것을 그대로 믿게되어 가격의 근소한 변동을 파악하지 못하게된다. (XX일 현재 어떠한 품질의 XX의 도매가격이

얼마입니까?)와 같이 문의하여 가격을 알고난 후에 그 가격과 전기가격을 비교해서 차가 있으면 특히 유의해서 시황 또는 그 등락원인을 질문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부지중에 품질규격이나 거래조건이 다른 가격이 보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격조사담당자가 특히 명심하여야 할 것은 응답자와의 대인관계에서 사무적인 태도보다는 인간적 신뢰가 유지되도록 언어 행동에 조심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차 강조할것을 일정한 대상처에서 일정한 사람을 상대로 동종품목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3) 조사표의 기입방법

가격조사표는 부록 2에 예시한 바와 같이 대상처명부와 함께 철하여 기재하는 원시기입표이다. 그러므로 설령 가격조사가 정확히 되었다 하여도 이표에 잘못 기입을 하게되면 이후의 가격이 전부 틀리게 되어 합성 가격이 잘못 산출되므로 지수에 실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대상처에서 수집한 가격을 정확히 이 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처 명부의 내용(상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상품명, 품질규격 및 거래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는 곧 정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사표는 조사 대상처별로 기입하게 되는데 먼저 조사일 해당란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조사된 가격을 해당상품의 아래 란에 적는다.

만약에 한대상처에서 두개 이상의 품목을 조사할 경우에는 조사표의 해당란에 줄을 맞추어 기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 및 참고사항을 확

인한 다음에 해당란에 적는다.

가격조사 담당자는 조사된 가격과 그 수집대상처에 대하여서는 어떤 외부인사이거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체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마. 가격불연속 (Incomparability) 의 해결

지수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사되는 개개의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과 상태하의 가격을 조사해야 하는지를 지정하였으므로 가격조사 담당자는 거기에 쫓아서 조사를 하면된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되어온 상품의 품질규격의 변화 신 상품의 출현 또는 기존 상품의 소멸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거래량의 변동으로 시장에서 가격변동의 대표성을 잃게되거나 시장에서 거래가 희소해질 때는 지수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품목을 대체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품목대체로 인한 지수에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부의 지수 편제담당자는 특수한 수속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상품 자체의 변동이 아닌 거래관습의 변화 가격자료수집대상처의 변동에서 생기는 가격의 단층적인 변동도 기술적으로는 위와같이 취급한다.

(1) 가격계열불연속의 실례

가격의 직접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를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품질규격의 변동

i) 조사해 오던 1 등품의 쌀이 시장지배의 대표성을 상실했으므로 대표성 있는 이등품의 것으로 바꾸어 조사할 경우

ii) 황색이고 연당무계가 45Lb 의 선화치를 조사해 왔는데 그 생산이 중단되어 백색 42Lb 의 것으로 바꾸어 조사할 경우

(나) 포장방법 및 용기의 변동

i) 조사해 오던 유리병 포장의 구루타민산소다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대신 비닐포장의 것이 공급량이 많아져서 그것으로 바뀌어 조사할 경우

ii) 조사상품인 참기름이 용기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오다가 용기를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다) 거래단계의 변동

i) 도매상판매가격을 조사하던 면사에 대하여 실수요자 직배제를 실시함에 따라 생산자 직배가격으로 바꾸어 조사할 경우

ii) 도매가격을 조사하던 합판 스투트에 대하여 도매단계의 가격포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직접 생산자 판매가격을 조사하게 되었을 경우

(라) 거래단위의 변동

i) 필당가격을 조사하던 아세테이트 양단에 대하여 생산자 별 필당의 마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당가격으로 조사하게 될 경우

ii) 드람당 가격을 조사하던 양젯물이 드람당 무게가 660 Lb 에서 735Lb 로 바뀌었을 경우

(마) 조사대상처의 변경 추가 삭제

i) 역두대량도매상의 판매가격을 조사하던 쌀에 대하여 역두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도매상의 판매가격을 조사할 경우

ii) 가격조사 대상처인 "대동연탄공장"에서 연탄생산중단으로 말미암아 그가격조사를 할수없어 조사대상처에서 제외했을 경우

iii) 간장가격을 두개의 생산공장에서 조사해 왔는데 새로 "샘표간장 공장"이 설립됨으로써 조사대상처로 추가했을 경우

(바) 신 품출회 및 신형제품의 생산으로 인한 가격변동

i) 보리쌀의 신곡이 출회됨에 따라 신곡의 가격이 각각 다른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이와같이 신 품출회기에 신구 두 상품이 동시에 거래되며 가격차의 폭이 클 경우에는 시장출회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그 상품의 대표가격으로 하는것이 이상적이다。

ii) D - 306 호의 선풍기를 조사하던중 그 생산이 중단되고 D - 307 호의 신형선풍기가 생산공급됨으로 그 가격을 조사할 경우

(사) 계절적요인에 의한 가격의 극심한 변동

i) LD 당 가격이 ₩ 450 원이던 얼음이 겨울철 비수요기에 접어들자 재고정리를 위하여 150 원의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ii) 단경기에 접어들어 사과가격이 상자당 1,000 원에서 1,400 원으로 극히 일부의 소량거래가 형성될 경우 (이와같이 계절적인 생산 또는 계절적인 소비 또는 단경기의 품귀에 따른 가격의 극단한 등락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조사담당자는 가격등락의 정도 거래량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수준에서 보합가격을 취하여야 한다。

위와같은 문제들은 가격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동안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조사담당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은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격의 불연속보고표」에 상세히 기입하여 본부에 알린 다음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부에서는 조사현지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법중에서 사정에 적합한 것을 골라서 가격의 불연속을 해결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두기 바란다.

직접대체법 (Direct Substitution)

이 방법은 품목의 사소한 부수적인 특징의 변화 예컨대 약간의 위장방법의 변화등 가격의 결정요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때에는 실질적으로 품질규격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수정절차를 밟지 않고 두 품목의 가격차 전부가 물가지수에 반영되도록 한다.

접속법 (Splicing)

직접대체를 할 수 없는 실질적인 품질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신구품목이 동시에 한 시장에서 거래되며 또한 충분히 경쟁적일 때 쓰인다. 이 방법은 접속할 시점에 있어서 시장에서 성립된 신품목의 가격 (P_{a1}) 과 구품목의 가격 (P_{b1}) 의 비가 (P_{a1}/P_{b1}) 로 구품목의 기준시가격 (P_{b0}) 을 조정하여 신품목의 가상기준시가격 (P_{a0}) 을 계산 ($P_{a0} = P_{b0} \times \frac{P_{a1}}{P_{b1}}$) 하고 그 시점부터는 신품목의 기준 및 비교시가격을 지수계산에 쓴다.

생산비접근법 (Production cost approach)

접속법은 신구 양품목이 동시에 한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합당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경쟁적이 아닌 조건하에서 일제히 신품목으로 대체될 때가 있다. 이런 때에는 품질의 차는 생산비의 차에 비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신품목의 생산비의 (C_{a1}) 와 구품목의 생산비 (C_{b1}) 의 비가 (C_{a1}/C_{b1}) 로 구품목의 기준시가격 (P_{b0}) 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위와 같은 세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기준시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년중에는 구품목의 가상비교 시가격을 산출하여 지수계산을 하고 익년초에 일괄하여 신품목의 가상기준시가격을 산출하여 그때부터 신품목의 비교시가격을 써서 지수계산을 하고 있다.

(2) 「가격의 불연속보고표」의 기입방법

「가격의 불연속보고표」는 가격조사중에 위에 설명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이전의 가격계열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가격자료를 얻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이 표에 정확히 기입하여 곧 본부의 지수편제담당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변경된 새로운 품질규격 및 거래조건하의 상품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받게되면 그 시점에서는 조사된 가격계열에 대해서 「△」의 부호를 가격앞에 표시하여 이전의 가격계열과 비교될 수 없음을 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격자료의 이용상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 표는 상술편로 작성하며 품질, 규격, 가격의 조사단계 거래단위 조사대상처에 관해서 변경된 사항을 변경 전후의 해당란에 적는다. 그 이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타 사항의 변경 전후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는다.

가격란에는 조사시점에 있어서 신구상품이 동시에 한 시장에서 거래되며 또한 충분히 경쟁적일때는 두류의 가격을 조사하여 변경 전후의 해당란에 적는다.

그리고 위와같은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즉 일제히 신상품으로 대체되어서 구상품의 가격을 조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추정생산비를 조사하여 생산비란의 변경전후의 해당란에 적는다.

2. 합성 가격산출 및 가격보고

선정된 조사대상처로부터 수집된 가격 자료는 그 조사지역의 대표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각 상품별로 단순 산술평균 가격을 산출한다. 이것을 그 상품의 합성가격이라고 하며 각 지역별로 보고되는 합성가격을 다시 평균하여 전국합성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이 가격이 전국의 가격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개별상품가격이며 이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지수를 산출한다.

가. 합성가격산출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

합성가격산출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일부조사대상처의 품질 기타의 원인으로 가격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부당한 합성가격의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 일시적 품질등의 이유로 거래가 없어 가격자료를 얻을 수 없으면 전기와 같은 보합가격으로 처리하며 이 사유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물론 계속해서 가격조사를 할 수 없으면 그 조사대상처는 삭제하고 새로운 대상처를 선정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동북지의 필당가격이 전기에 A대상은 7만원, B대상처는 6만9천원, C대상처는 7만2천원으로 합성가격이 $70,333$ 원 $\frac{70,000 + 69,000 + 72,000}{3} = 70,333$) 이었을 경우에 금기의 조사결과 A대상처는 70,500원 B대상처는 70,000원이고 C대상처는 일시중절 상태이어서 가격자료를 얻지 못하였다면

$$\textcircled{1} \quad \frac{70,500 + 70,000}{2} = 70,250 \text{ 원}$$

$$\textcircled{2} \quad \frac{70,500 + 70,000 + (72,000)}{3} = 70,833$$

①의 방법을 사용하면 안되며 ②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합성가격의 단위 이하의 처리에 대해서는 계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고 있다.

① 산출된 합성가격이 100원 이상일 때는 「원」이상을 취하며 「원」미만은 버린다.

예를들면 사과가격이 상자당 각대상처별로

$$\frac{770 + 800 + 820}{2} = 796.66 (\text{원}) \text{ 이면 } 796 \text{ 원으로 한다}$$

② 산출된 합성가격이 100원미만일 때는 전 미만만 버린다.

예 $\frac{65 + 63 + 60}{3} = 62.666 \text{ 원이면 } 62.66 \text{ 원으로 한다.}$

나. 「합성가격산출표」의 기입방법

「합성가격산출표」는 각각의 조사대상처에서 수집된 가격자료를 정리하며 상품별로 합성가격을 산출하는 표이다. 따라서 이 표는 조사지역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란에 상품번호, 상품명 단위를 기입하고 그 상품의 가격을 조사한 조사대상처를 대상처란에 각각 적는다. 그리하여 조사일자별로 「가격조사표」에 기재된 각 조사대상처의 아래란에 적은 다음 합성가격을 산출하여 합성가격란에 적는다.

3개의 합성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월평균가격을 산출한 다음 평균가격란에 적고 12개의 월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연평균을 산출한 다음 연평균가격란에 적는다. 합성가격의 산출요령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설명한바에 따라야 한다. 합성가격의 산출은 후에 정정하는 일이 없도록 계산의 정확성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며 만약 오산되었음이 발견되면 곧 그 내용을 본부에 알려서 지수를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격보고

가격조사담당자는 가격조사일에 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조사표」에 기입하고 정리하여 「합성가격산출표」에 의해서 합성가격을 산출한 다음 「도매가격보고표」에 의해서 본부의 지수편제담당자에게 가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격보고는 늦어도 해당조사일의 익일까지는 하여야 한다。「도매가격보고표」는 산출된 합성가격을 금기 평균가격란에 적고 전기의 합성가격을 전기평균가격란에 적어서 그 차이를 차란에 적는다。

그리고 전기와 비교해서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품별로 그 변동요인을 기입하여야 한다。그리고 전반적인 시황 및 물가동향과 장래의 물가에 대한 전망등을 파악하여 동향 및 비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 록

(각종조사서식)

1. 품목및 품질규격

2. 가격의불연속보고표

부록 1

품 목 및 품 질 규 격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1	식 료 품		
011	농산식용품		
0111	미 곡		
011101 - 20	쌀	각지방산 2 등품 도매상판매가격	100ℓ
0112	백 류		"
011201 - 20	보 리 쌀	" 2 등품 "	"
011202 - 20	밀	" 1 등품 "	"
0113	잡 곡		
011301 - 20	좁 쌀	" 1 등품 "	100ℓ
011302 - 20	슈 수	" 조곡 도매상판매가격	"
0114	두 류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11401 - 20	콩	각지방산 1 등품 백태 도매상판매가격	100ℓ
011402 - 20	팥	각지방산 1 등품 적두 도매상판매가격	"
011403 - 20	녹 두	각지방산 1 등품 도매상판매가격	"
011404 - 20	낙 화 생	생실 상품 도매상판매가격	가마(75kg)
0115	서 류		
011501 - 20	고 구 마	중급품 도매상판매가격	관
011502 - 20	감 자	" "	"
0116	축 산 물		
011601 - 20	닭	재래종 암닭 약 3근 도매상 판매가격	수
011602 - 20	달 갈	중급품 도매상판매가격	10 개
011603 - 20	최 고 기	정육 상등육 정육점판매가격	근
011604 - 20	퇴 지 고기	" "	"
011605 - 20	소 세 이지	포오크소세이지 300g 생산자 판매가격	개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11606 - 20	분 유	국산품 서울우유협동조합판매가격	L b
0117	과 실 류		
011701 - 20	사 과	홍옥 또는 국광 상품 상자당 18.75Kg 80 ~ 90 개입 도매상판매가격	상 자
011702 - 20	배	만삼길 및 금촌추 상품 상자당 18.75Kg 50 ~ 60 개입 도매상판매가격	//
011703 - 20	복 송 아 통 조 립	4 호관 (425g) 48 관입 종이인쇄 만 생산자판매가격	//
012	수산식품		
0121	가 공 어 류		
01201 - 20	복 어	길이 약 35 cm 중태 도매상판매 가격	짝(30매)
012102 - 20	멸 치	중우 길이 약 4 ~ 6 cm 황백색 중품 도매상판매가격	10 관
012103 - 20	오 징 어	몸무게 350 ~ 400 톤매 중품 도매상판매가격	100 측
012104 - 20	굴 비	길이 약 24 cm 중품 도매상판매 가격	20 미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12105 - 20	염정갱이	길이 약 35cm 석간 상자당 약 60미 상품 도매상판매가격	상자
012106 - 20	새우젓	동백젓 육젓 상품 도매상판매가격 용기포함	독(8관)
012107 - 20	조개젓	상품 도매상판매가격	말(두)
012108 - 20	멸치젓	" "	"
0122	해초류		
012201 - 20	김	개량해태 등외중품 도매상판매가격	상자(100속)
012202 - 20	미역	삼척산 소중자 길이 약 150cm 단당 40장 도매상판매가격	10속
012203 - 20	한천	천연한천 일등품 생산자판매가격	1b
0123	통조림		
012301 - 20	콩치	4호관(425g) 상자당 48관입 검사합격품 중품 생산자판매가격	상자
013	기타식용품		
0131	분류및국수		
013101 - 20	밀가루	중력분 제분율 77% 생산자판매 가격	대(22kg)
013102 - 20	국수	순소맥분 2급이상 100문매 포장 생산자판매가격	관
013103 - 20	전분	고구마전분 일등품 도매상판매가격	"
013104 - 20	라면	상품 개당 120g 생산자판매가격	상자(50개)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132	식 용 유 류						
013201 - 20	참 기 림	상 품	도매상판매가격	용기제외		20 L	
013202 - 20	콩 기 림	"	"	"		"	
013203 - 20	채 종 유	"	"	용기포함		드 램	
013204 - 20	미 강 유	식 용	"	"		"	
0133	조 미 료						
013301 - 20	천 일 염	1 등 품	도매상판매가격	가마니포함		60Kg	
013302 - 20	재 제 염	"	생산자	"	"	"	
013303 - 20	간 장	2 "	"	용기제외		두(18L)	
013304 - 20	된 장	2 "	"	용기포함		5 관	
013305 - 20	고 추 장	2 "	"	"		"	
013306 - 20	고 추	마른 것	적색 출회 많은 것	중 품		100근	
			도매상판매가격				
013307 - 20	설 탕	정백당	A 당	생산자판매가격		포(30Kg)	
013308 - 20	사 카 린	용성	검사합격품	생산자판매가격		1b	
013309 - 20	구 루 타 민	99% 이상	100g 포장	생산자판매		포(100g)	
	산 소 다		가격				
013310 - 20	깨	각 지방산	일 등 품	도매상판매가격		100L	
0134	과 자 류						
013401 - 20	카 라 멜	20 갑 포장	생산자판매가격			상 자	
013402 - 20	드 룽 프 스	엿 25%	설탕 65%	표준	생산자판매	관	
			가격				
013403 - 20	비 스 켓	중급품	생산자판매가격			500몬매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13404 - 20	건 빵	상품 상자당 6.3Kg 생산자판매 가격	상 자
013405 - 20	엿	1 급품 용기대포함 생산자판매가 격	통(24Kg)
013406 - 20	껌	상품 개당 3.2g 생산자판매가격	상자(20갑)
0135	기 타		
013501 - 20	두 부	묵판당 800분매 생산자판매가격	묵 판
013502 - 20	얼 음	식용 생산자판매가격	개(300lb)
013503 - 20	마아가린	450g 포장 생산자판매가격	개
02	음료및연초		
021	주 류		
021001 - 20	약 주	약 11 도 상품 생산자판매가격 용기제외	누(18ℓ)
021002 - 20	탁 주	약 6 도 상품 용기제외	"
021003 - 20	소 주	1 급 30 도 640mL 24 병입 생산자판매가격	상 자
021004 - 20	청 주	주정 50% 곡주 50% 10 합 10 병입 생산자판매가격	"
021005 - 20	맥 주	양조주 640ml 24 병입 생산자 판매가격	"
021006 - 20	위 스 키	30 도 상품 640ml 24 병입 생산자판매가격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21007 - 20	인삼주	알콜 30% 검사합격품 인삼 1 본입 생산자판매가격	병 600cc
021008 - 11	누룩	순소맥 상품 생산자판매가격	100 장
021009 - 11	에틸알콜	9.4% 생산자판매가격 용기포함	드럼(200ℓ)
021010 - 11	맥아	순맥 생산자판매가격	M/T
022	청량음료		
022001 - 20	사이다	1 급품 360ml 30 병입 생산자 판매가격	상자
022002 - 20	콜라	360ml 30 병입 생산자판매가격	"
022003 - 20	쥬우스	1 급품 360ml 30 병입 생산자 판매가격	"
023	연초		
023001 - 20	권련금관	20 본입 필터부 전매청지정소매 상판매가격	갑
023002 - 20	" 아리랑	20 본입 필터부 전매청지정소매 상판매가격	"
023003 - 20	" 백조	20 본입 전매청지정소매판매가격	"
023004 - 20	" 금잔디	" "	"
023005 - 20	" 파랑새	" "	"
023006 - 20	" 파고다	20 본입 필터부 전매청지정소매 상판매가격	"
023007 - 20	" 신탄진	20 본입 필터부 전매청지정소매 상판매가격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3.	섬유및동체품		
031	소 재		
031001 - 11	누에고치	생춘견 2등급 또는 추견 1등급 농협공판가격	관
032	직 사		
032001 - 11	면사 (20S)	Cone 권 middling white 15/16" 70% 이상 도매상판매가격	Kg
032002 - 11	면사 (23S)	Cone 권 middling white 15/16" 70% 이상 도매상판매가격	"
032003 - 11	면사 (30S)	Cone 권 middling white stand- ard grade 15/16" 70 및 1" 30% 도매상판매가격	"
032004 - 11	스 프 사	30S Cone 권 1.5" ~ 2" 도매상판매 가격	"
032005 - 11	생 사	21 중 A 격 생산자판매가격	포(16관) 60Kg
032006 - 11	인 견 사	Viscose 120 denier 30 filam- ent bright cone 권 도매상판매가 격	인 (200lb)
032007 - 11	나 이 룬 사	70 denier 34 filament cone 권 도매상판매가격	lb
032008 - 11	화 섬 사	76S 2 합염색기편사 생산자판매가격	"
032009 - 11	소 모 사	18S 4 합염색편사	"
032010 - 11	마 사	아마사 14S 생산자판매가격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33	직 물		
033001 - 20	광 목	36" × 40yd 면 16S 비표백 도매상 판매가격	필 "
033002 - 20	내 광 목	"	"
033003 - 20	당 목	35" ~ 36" × 40yd 면 24S 비표백 도매상판매가격	"
033004 - 20	옥 양 목	35" ~ 36" × 40yd 면 30S 표백품 도매상판매가격	"
033005 - 20	포 들 린	36" × 30yd 면 40S × 36S 표백품 도매상판매가격	"
033006 - 20	용	면사 20S × 13S 밀도 40 × 47 35" × 40yd 1호 용 생산자판매 가격	"
033007 - 20	특수 양단	29" ~ 30" × 40yd 본견 40% 인견 60% 5색단상품 생산자판매가격	"
033008 - 20	견 뉴 똥	29" × 35yd 단색 중품 도매상 판매가격	35Yd
033009 - 20	견 양 단	29" ~ 30" × 40yd 상품 생산자판매 가격	40Yd
033010 - 20	아세테이트 양 단	30" ~ 40yd 경 acetate 75 denier 위 viscose 120 denier 도매상 판매가격	Yd
033011 - 20	아세테이트 뉴 똥	30" × 35yd 순 acetate rayon 75 denier 도매상판매가격	35Yd

Co 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33012 - 20	인견시 루바	27" × 30yd 120 denier 유색 도 매상판매가격	30Yd
033013 - 20	나이론다후타	36" × 40yd 36" 70 denier 염색 가공 생산자판매가격	Yd
033014 - 20	동 복 지	60" × 30yd 순모 48S/2 유색 생산자판매가격	30yd
033015 - 20	하 복 지	60" × 30yd 모 50% 데크론 50% 유색 생산자판매가격	"
033016 - 20	외 투 지	60" × 30yd 순모 외투용 유색 생산자판매가격	"
033017 - 20	모 포	아크릴섬유 60" × 22yd 생산자 판매가격	장
033018 - 20	혼방복지	Vinylon 50% S F 50% 혼방사 48S ~ 54S crepe 60" × 31yd 생산자판매가격	31Yd
033019 - 20	모 시	세저 우량품 30cm × 37.5척 도매상판매가격	"
034		메리야스	
034001 - 20	메리야스동)	면사 23S 동내의상하기모품 착당 180문매 유색 생산자판매가격	착
034002 - 20	" (하)	면사 25S ~ 30S 하계용T샤스 남 자용 백색 죽당 300문매 생산자판매가격	죽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34003 - 20	양말 (동)	남자동계용 순나이론 타당 96본매 생산자판매가격	타
034004 - 20	양말 (하)	남자하계용 순나이론 타당 85-90본매 생산자판매가격	”
034005 - 20	스 타 킹	여자용 나이론 full fashioned 8분 70~75cm 생산자판매가격	”
034006 - 20	면 장 갑	면사 23S 130본매 생산자판매가격	죽
035	기타섬유제품		
035001 - 20	학 생 북	면 흑색 5호 생산자판매가격	착
035002 - 20	와 이 샤 쓰	백색 면 35% 데드론 65% 생산자 판매가격	장
035003 - 20	우 의	나이론 우면수지가공 신사용 생 산자판매가격	착
035004 - 20	타 을	면사 23S 유색 35"×13.5" 10 장 180본매생산자판매가격	죽
035005 - 11	재 봉 사	면 30S/3 공장용 권당 5,000yd 생산자판매가격	권
035006 - 20	재 봉 사	면 30S/2 (가정용) 권당 5,000yd 생산자판매가격	권
035007 - 11	범 포 지	36"× 50yd 면 20S 6호 백색 생산자판매가격	마
035008 - 19	마니라로우프	아비카 어업용 6분 (보통용) 생산자판매가격	관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35009 - 11	어 망 사 (나이론)	나이론 210 denier 24 filament 도매상판매가격	관
035010 - 11	어 망 사 (면)	20S/6 생산자판매가격	〃
035011 - 19	어 망	나이론 210 denier 24F 50 목 × 500 척 덩태용 필당 21b 생산판매가격	필
035012 - 20	모 자	중고학생용 흑색 모직 크기중 생산자판매가격	개
035013 - 20	가 방	남자중학생용 스폰지내사 생산자판매가격	〃
035014 - 20	탈 지 면	상품 생산자판매가격	1b
035015 - 20	면 가 제	30S 18"×30yd 생산자판매가격	필
04	목 재		
0411	소 재		
041001 - 11	원목 육송	직재중재 (말구직경 5 ~ 6 촌) 역두판매가격	세
041002 - 11	원목 라 왕	반물 부두판매가격	〃
041003 - 11	원목 미 송	수입품 부두판매가격	〃
042	제 재		
042001 - 12	각 재 육송	9 척 제재소판매가격	세
042002 - 12	〃 미 송	〃 〃	〃
042003 - 12	〃 라 왕	만각 제재소판매가격	〃
042004 - 12	판 재 육송	6 척 × 5 촌 × 5 분 제재소판매가격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42005 - 12	판 재 라 왕	7 분 ~ 8 분 제재소판매가격	세
042006 - 12	〃 미 송	제재소판매가격 길이 6척	〃
043	기 타		
043001 - 12	소 활 재 라 왕	7 ~ 9 척 1 촨 5 분 각 제재소판매가격	〃
043002 - 12	후 로 랑 라 왕	9 척 × 3.5 촨 × 6 분 〃	〃
043003 - 12	합 판 〃	요 소 합 판 1 분 × 3 척 × 6 척 생산자 판매가격	장
043004 - 12	〃 〃	요 소 합 판 2 〃 × 3 〃 × 6 〃 3ply 생산자판매가격	〃
043005 - 12	보 오 드	2 분 × 4 척 × 8 - 9 척 생산자판매 가격	〃
05	지 류		
051	펄 프 밧 지 설		
051001 - 11	펄 프	아 유 산 펄 프 표 백 부 두 창 고 가 격	LT
051002 - 11	갱 지 설	인 쇄 안 된 것 공 장 구 입 가 격	관
051003 - 11	모 조 지 설	〃 〃	〃
052	인 쇄 용 지		
052001 - 11	신 문 용 지	일 반 용 SKP 30% GP70% 31" roll 생산자판매가격	MT
052002 - 11	〃	실 수 요 자 용 SKP30% GP70% 31" roll 생산자판매가격	〃
052003 - 11	모 조 지	m ² 당 70g 4 6 판 (26척 × 36 척) BSP 70% GP30% 유 광 생 산 비 판 매 가 격	연

Code	분 류	품 질 가 격	단 위
053	기 타 지 류		
053001 - 11	선 화 지	백 42lb 46판 (26척 × 36척) 지설 100% 생산자판매가격	연
053002 - 11	박 엽 지	1516 46 판 (26 척 × 36 척) BKP 100% 생산자판매가격	"
053003 - 11	유선하드롱지	47lb 3척 × 4척 크라프트펄프 80% 지설 20% 생산자판매가격	"
053004 - 11	보 드 지	차 375lb 46판 (26 척 × 36척) 지설 70% 질 30% 생산자판매가격	"
053005 - 11	크라프트지	폭 36-40 촌 권당 455-500Kg 생산자판매가격	MT
053006 - 20	창 호 지	3척 × 1.9척 중품 저피 70% 백색 피당 2,000장 도매상판매가격	피
053007 - 20	백 각 지	4 배 3.8척 × 3.6척 도매상판매가격	권
053008 - 20	장 판 지	4 각지중품 (4 합) 도매상판매가격	장
054	지 류 계 품		
054001 - 20	공 책	국민 학교용 21cm × 15cm 중질지 26 장 (표지포함) 생산자판매가격	권
054002 - 20	모조지노트	(중학용) 21cm × 15cm 70lb 46 장 (표지포함) 생산자판매가격	"
054003 - 20	"	(대학용) 26.5cm × 19cm 70lb 30 장 (표지포함) 생산자판매가격	"
054004 - 11	대 형 지 대	일반용 4 합 27.5" × 16" × 3" 생산자판매가격	장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54005 - 20	벽 지	필벽지 중품 18척 × 20척 생산자 판매가격	필
054006 - 20	갈포벽지	세태 (Regular) 일반용 국내용 36"×8yd 생산자판매가격	권
054007 - 20	인 화 지	밀착지 상품 4.5"×6" 생산자판매 가격	타 (12장)
06	생고무및 고무제품		
061	고무소재		
06001 - 11	생 고 무	RSS No, 3MT당 9bale 도매상판 매가격	MT
061002 - 11	재 생 고 무	흑색상품 생산자판매가격	"
061003 - 11	합 성 고 무	1778 호 또는 1712 호 도매상판매 가격	"
062	고 무 신 류		
062001 - 20	고 무 신	남자용 백색 텔백태 10~11.5문 상품 K.S 아닌것 생산자판매가격	100 족
062002 - 20	"	여자용 백색 15~22 문 상품 텔 백태 K.S 아닌것 생산자판매가격	"
062003 - 20	운 동 화	흑색남자용 10~11.5문 생산자판매 가격	"
062004 - 20	고 무 장 화	흑색남자용 10~11.5문 에나멜 도내면메리야쓰첨부 상품생산자판매 가격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63	타이야및 튜우브		
063001 - 19	자동차타이야	천연고무레이온코오트 750"X20" 12 푸타이 상품 도매상판매가격	본
063002 - 19	"	천연고무레이온코오트 600"X 16" 6 푸타이 상품 도매상판매가격	"
063003 - 19	자동차튜우브	750"X 20" 도매상판매가격	장
063004 - 19	자전거타이야 및 튜우브	천연고무 먼코오트 26"X 13/8" 튜우브포함 상품 생산자판매가격	조
064	기타고무제품		
064001 - 19	고무벨트	K.S 2형 평형보급품 흑색 도매 상판매가격	촌푸라이
064002 - 19	"	V형A형 K.S 도매상판매가격	촌
064003 - 19	현미용고무 롤러	Noda 식 도정기용 내경 6.6" 외경 8.5" 길이 6.5" 황색 2개 1조 도매 상판매가격	조
07	화학제품		
071	화학비료		
071001 - 11	유 안	암모니아 20.5% 질소 21% 농협판매가격	대(45Kg)
071002 - 11	노 소	질소 46% 농협판매가격	"(25 ")
071003 - 11	중 과 석	"	"(40 ")
071003 - 11	염 화 가 리	수용성가리 60%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71005 - 11	복 합 비 료	전질소 22% 가용성 인산 22% 수용성 가리 11%	25Kg (대)
072	공 업 약 품		
072001 - 11	양 젖 물	고형알카리성환산 98% 이상 수입 품 도매상판매가격	드 램 (300Kg)
072002 - 11	카아바이드	No. 2 란괴 개스 발생 Kg당 220ℓ 이상 1 급품 생산자판매가격	드 램 (225Kg)
072003 - 11	염 소 산 가 리	공업용 98 이상 생산자판매가격	MT
072004 - 11	유 산	공업용 66 도 Be 용기체외 생산자 판매가격	"
072005 - 11	초 산	공업용 42 도 Be 수입품 도매상 판매가격	"
072006 - 11	염 산	공업용 35% 용기체외 생산자판매 가격	"
072007 - 11	초 산	공업용 99% 수입품 도매상판매가격	"
072008 - 11	포 백 분	유효염소 60% 이상 수입품 도매상 판매가격	"
072009 - 11	소 오 다 탄	경탄 99.8% 수입품 생산자판매가격	
072010 - 11	메 틸 알 콜	98% 수입품 도매상판매가격	드 램(150Kg)
072011 - 11	카아본블랙	코스모빌 66 번 미제 도매상판매 가격	MT
072012 - 11	유 황	분말 국산 도매상판매가격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72013 - 11	포르말린	38% 국산 직매점판매가격	MT
072014 - 11	적 린	98% 이상 5kg 관 6개입 생산자 판매가격	상자
072015 - 11	염화칼슘	60% 이상 고체 수입품 도매상판 매가격	드 램 (300kg)
072016 - 11	탄산칼슘	96% 생산자판매가격	kg
072017 - 11	탄산마그네슘	40% 분말 공업용 특 생산자판매 가격	MT
072018 - 11	유화촉진제	98% 황색분말 생산자판매가격	"
072019 - 11	탄닝엑스	미모사 62% 고체 수입품 도매상 판매가격	대(50kg)
072020 - 11	유산석토	공업용 16% 생산자판매가격	MT
072021 - 11	중탄산소다	" 99% 이상 생산자판매가격	"
072022 - 11	유산소오다	공업용 99.3% 이상 생산자판매가 격	"
072023 - 11	규산소오다	3호용기제외 생산자판매가격	드 램
072024 - 11	수 은	99% 수입품 도매상판매가격	관(34.5kg)
073	의 약 품		
073001 - 20	비타민제	B 지아민주사액 50mg × 10 앰플 생산자판매가격	갑
073002 - 20	종합비타민정	생산자판매가격	병(100정)
073003 - 20	포도당	20% 20cc × 10 앰플 생산자판매 가격	갑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73004 - 20	오일페니시린	300 만단위 생산자판매가격	병 (10cc)
073005 - 20	스트렙토마이신	생산자판매가격	" (1g)
073006 - 20	A . P . C	"	" (1000정)
073007 - 20	효 소 제 제	종합영양제 생산자판매가격	" (")
073008 - 20	건 위 축 진 제	생산자판매가격	" (20")
073009 - 20	설 퍼 구 아 니 진	"	" (1000 ")
073010 - 20	구 급 위 장 약	"	상 자
073011 - 20	옥 도	수입품 도매상판매가격	Kg
073012 - 20	구 충 체	생산자판매가격	병
074	농 약 품		
074001 - 11	D . D . T	100% 분말 국산 농협납품가격	대(50 lb)
074002 - 11	B . H . C	14% 분말 국산 생산자판매가격	"(25Kg)
074003 - 11	유 기 린 제	Diazinon 40% 1,000cc 입 도매상판매가격	관
074004 - 11	유 산 동	96% 이상 생산자판매가격	MT
075	염료빛도료		
075001 - 11	아 연 화	특급 99.5% 생산자판매가격	MT
075002 - 11	산 화 지 단	Anatase 형 98~99% 분말 수입품 도매상판매가격	
075003 - 11	리 도 폰	30 % 분말 수입품 도매상판매가격	
075004 - 11	레이크안료	Hansa red B 형 수입품 도매상판매가격	드람(25Kg)
075005 - 11	유 화 염 료	흑색 용기제의 생산자판매가격	Kg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75006 - 11	직 접 염료	흑색 상품 생산자판매가격	Kg
075007 - 12	페 인 트	백색 광택내부용 중품 생산자 판매가격	5gal
075008 - 12	에 나 멜	백색 광택외부용 중품 생산자 판매가격	"
075009 - 12	와 니 스	페놀 수지 70% 중품 생산자 판매가격	"
076	유 지		
076001 - 11	우 지	수입품 도매상판매가격	드람(195.35 Kg)
076002 - 11	야 자 유	순분 60% 공업용 생산자판매가격	" (180Kg)
076003 - 11	아 마 인 유	생산자판매가격	" (")
076004 - 11	파 라 핀	왁스 140 ~ 150 도	MT
076005 - 11	그 리 세 린	94% 생산자판매가격	드람(250Kg)
076006 - 19	그 리 스	기계용 KOCO 서울판매가격	관 (35 lb)
076007 - 19	모 빌 유	기계용 KOCO 서울판매가격	드람(55gal)
077	기타화학제품		
077001 - 11	산 소	99.8% 용기제외 생산자판매가격	톤
077002 - 11	P.V.C 수지	Uncom pound # 800 국산도매 상판매가격	대 (25Kg)
077003 - 11	인쇄용잉크	흑색 활판용 중품 생산자판매가격	Kg
077004 - 20	성 냥	대형 생산자판매가격	짝(20갑)
077005 - 12	다이나마이트	니트로그리세린 30% 생산자 판매가격	상자(22.5Kg)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77006 - 12	초안 폭약	니트로화합물 7% 니트로그리세린 5% 생산자판매가격	상자(240개)
077007 - 20	세탁비누	상품 개당 450g 63개입 생산자판매가격	" (64개)
077008 - 20	화장비누	순비누분 89% 중품 생산자판매가격	" (240개)
077009 - 20	포마아드	중품 생산자판매가격	타
077010 - 20	콜드크림	중품 생산자판매가격	"
077011 - 20	치 약	보통치약 50g 튜우브입 생산자판매가격	"
077012 - 20	양 초	12시간용개당약 65g 생산자 판매가격	상자(56포)
077013 - 12	아 교	국산품 상품 도매상판매가격	3.75Kg
08 181	요업밧「시멘트」계품 유리밧동제품		
081001 - 12	판 유 리	2mm 두명 51"~60" 평방도착역 인도가격	100 평
081002 - 12	"	3mm 두명 51"~60" 평방도착역 인도가격	"
081003 - 20	주 사 기	200용 경질상품 도매상판매가격	타
081004 - 11	유 리 병	2합입 청량음료용 생산자판매가격	개
082	시멘트밧동제품		대(42Kg)
082001 - 12	시 멘 트	수경성 국산특약점판매가격	개
082002 - 12	시멘트부록크(8)	강도 6Kg 생산자판매가격	"
082003 - 12	" (6)	강도 6Kg "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82004 - 12	시멘트벽돌	7촌×3.5촌×2촌 강도 40Kg 생산자판매가격	개
082005 - 12	시멘트관	직경 5촌 5분×2척 생산자판매 가격	본
082006 - 12	기 와	시멘트계 흑색 생산자판매가격	장
082007 - 12	콘크리트전주	9m×170mm 설계하중 300Kg 생산자판매가격	개
082008 - 12	휴 울 관	C.R 75mm×25mm×2.5m 생산자판매가격	개
083	점토제품		
083001 - 12	적 벽 돌	소품 1등급 생산자판매가격	"
083002 - 12	토기항아리	3.5두입 생산자판매가격	"
044	기 타		
084001 - 12	소 석 탄	1등급 도착역인도가격	대(18Kg)
084002 - 12	내 화벽돌	SK # 34 보통형 생산자판매가격	개
084003 - 12	"	SK # 32 " " " "	"
084004 - 12	도 제 타 일	백색 내장용도기 할광 3.6각 108mm×108mm×264장 생산자판매가격	평
084005 - 12	스 레 이 트	합판스레이트 백색 91cm×182cm ×6mm 생산자판매가격	장
084006 - 12	"	감형 백색 40cm×40cm×48mm ×31장 생산자판매가격	평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84007 - 12	애 자	# 296 자기제 못포함 생산자판매 가격	개
084008 - 12	위 생 번 기	비수세소편기 A 급일 반용 국산품 자뚜껑없는것	"
084009 - 20	도 자 기	사발과 매첩중품 생산자판매가격	조
09	금속및동제품		
091	소 재		
091001 - 11	선 철	주물용 1 호 제련소판매가격	MT
091002 - 11	재 생 선 철	제강용 4 호 서선 생산품판매가격	"
091003 - 11	고 철	상 급품 (3 mm 이상) 공장구입가격	"
091004 - 11	고 철	중급품 (1.6 mm ~ 3 mm) 공장구입가격	"
091005 - 11	"	하급품 (1.6 mm 미만) 공장구입가격	"
091006 - 11	고 주 철	기계철 공장구입가격	"
091007 - 11	"	남비철 공장구입가격	"
091008 - 11	"	백철 공장구입가격	"
092	철강반제품		
092001 - 11	강 괴	일반구조용 압연강괴 생산자판매 가격	100Kg
092002 - 11	비 렛	50 mm S.S 1 호 (일반구조용) 생산자판매가격	MT
092003 - 11	"	65 mm S.S 4 호 (") 생산자판매가격	"
092004 - 11	"	75 mm S.P (스프링용) 생산자판매가격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92005 - 11	비 렛	S.R.연강선재 생산자판매가격	MT
093	철 강 제 품		
093001 - 2	철 근	19 mm (3/4촌) 연강 20' ~ 30' 생산자판매가격	"
093002 - 12	"	12 mm (1/2촌) 연강 20' ~ 30' 생산자판매가격	"
093003 - 12	"	9 mm (3/8촌) 연강 20' ~ 30' 생산자판매가격	"
093004 - 11	와이어롯드	6 mm 생산자판매가격	"
093005 - 12	산 형 강	50 mm (50 mm × 6 mm 2" × 2" × 1/4) 20' ~ 30' 생산자판매가격	"
093006 - 12	"	38 mm × 38 mm × 3 mm (1½" × 2" × 1/8") 20' ~ 30' 생산자판매가격	"
093007 - 11	강 판	USG No. 11 (3.2 mm) 3' × 6' 1 급품 생산자판매가격	"
093008 - 11	"	USG No. 23 (0.714 mm) 3' × 6' 1 급품 생산자판매가격	"
093009 - 11	"	USG No. 31 (0.278 mm) 3' × 6' 1 급품 생산자판매가격	"
093010 - 12	강 판	900 mm 6m 상수도용직영 생산자 판매가격	개
093011 - 12	"	400 mm 6 m 상수도용직용 "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93012 - 12	강 판	1 촌 두께 2.642 mm (척당 613g) 배관 용직영 K S 아연도백관 생산자판매 가격	m
093013 - 12	"	1/2 촌 두께 2.032 mm(척당 292g) 배관용직영 K S 아연도백관 생산자판매가격	"
093014 - 11	주물 (일반)	남비철 백철사용 생산자판매가격	판
093015 - 11	" (기계)	기계철사용 생산자판매가격	"
094	철강 2차제품		
094001 - 11	흑 철 선	# 8 (SWG 40.6 mm) 개당 50Kg, 생산자판매가격	MT
094002 - 11	"	# 20 (SWG 0.89 mm) 개당 50Kg 생산자판매가격	"
094003 - 12	아연도철판	# 31 국산원판 피형 2.7척 × 6척 생산자판매가격	장
094004 - 11	아연도철선	# 8 (SWG 4.06 mm) 생산자판매가격	50Kg
094005 - 12	양 정	2 촌 # 12 생산자판매가격	가마 (50Kg)
094006 - 12	"	4 촌 # 8 생산자판매가격	"
094007 - 12	철 강	# 30 아연도 40목 3척 × 100척 생산자판매가격	개
094008 - 12	"	# 31 아연도 20 목 3척 × 100척 생산자판매가격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94009 - 12	철 강	# 17 아연도 4분 3척 × 50 척 생산자판매가격	개
094010 - 12	"	# 15 아연도 6분 3척 × 30 척 생산자판매가격	"
095	비철금속		
095001 - 11	금	99.98% 이상 생산자판매가격	g
095002 - 11	은	99.98% 이상 "	"
095003 - 11	전기동	99.96% 이상 한국광업제동공사공판가격	MT
095004 - 11	석	99.99% 이상 수입품 도매상판매가격	"
095005 - 11	알루미늄	99.81% 이상 도매상판매가격	"
095006 - 11	아연	99.99% 이상 "	"
095007 - 11	연	재생 95% "	"
095008 - 11	동판	98-99% 1mm × 1.5척 × 6척 도매상판매가격	"
096	금속제품		
096001 - 19	삽	환삼 1/16 촌 중품 생산자판매가격	타
096002 - 19	꼭쟁이	날 800 손잡이포함 "	개
096003 - 19	낫	생산자판매가격	타
096004 - 19	작크	10" 4호 생산자판매가격	개
096005 - 19	줄	철공용평형황 120 촌 생산자판매가격	"
096006 - 20	철솔	1.5말 (27ℓ) 들이 "	"
096007 - 20	직유제품	식기 중품대 생산자판매가격	조
096008 - 20	알루미늄솔	24 cm 뚜껑제외 "	10 개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096009 - 20	알루미늄납비	14cm 청색 알마이트 생산자판매가격	10 개
096010 - 20	" 식기	주물제 16.5cm 대접 및 12.8cm 주발	조
096011 - 20	" 주발	뚜껑포함 은색 생산자판매가격 프레스제 23.3cm 청색알마이트	개
096012 - 20	" 밥통	프레스제 23.3cm 청색알마이트 생산자판매가격	"
096013 - 12	과 전 선	2.9 mm 생산자판매가격	MT
096014 - 12	"	3.2 mm "	"
096015 - 12	절연전선	2.6 mm 4층선 생산자판매가격	m
096016 - 12	"	7/2.0 mm 2층선 "	"
10	기계및동부분품		
101	일반용기계		
101009 - 19	양 수 기	휴갈 펌프구경 3촌 생산자판매가격	대
101002 - 19	계 분 기	도시농촌겸용 원기소요마력 5마력	"
101003 - 19	정 미 기	본기 1호소요마력 5마력	"
101004 - 19	정 맥 기	"	"
101005 - 19	제 면 기	1마력소요용소형	"
101006 - 19	중유발동기	16마력 550 회전	"
101007 - 19	선 반	벨트식 5척	"
101008 - 19	볼 반	1/4 마력국산모타	"
102	수송용기계기구		
102001 - 19	승 용 차	버스H.D.H 식 A60 디젤 좌석 50인승 알미늄샷슈 도요다	"
102002 - 19	화물삼륜차	K 200081 마력적재량 2,000kg	"
102003 - 21	자 전 차	26 완성차전등장치제외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102004 - 19	리 어 카	K S 표시품 중형 생산자판매가격	대
102005 - 19	목 조 선	신조선내용년수 20년선곡 "	용적톤
102006 - 19	블 베 아 탕	# 6306 생산자판매가격	개
102007 - 19	슬 라 브	GMC 용내경 3 25/32" 외경 394" 길이 7 3/16" 6 개 1 조 생산자판매가격	조
102048 - 19	스 프 링	버스용 front assembly 15 개 1 조 생산자판매가격	"
102009 - 19	피 스 톤	GMC 신형 STD 6 개 1 조 생산자판매 가격	"
103	전기용기계기구		
103001 - 19	전 동 기	10 마력 220V 60 사이클 1,800 회전 4 극 생산자판매가격	대
103002 - 19	변 압 기	10KVA 단상 3,300~6,600V 생산자판매가격	"
103003 - 21	선 풍 기	12" 40W 400 회분 속도조절장치및 수진장치부 생산자판매가격	"
103004 - 21	냉 장 고	공칭부터 120(출력 95W) 자동온도조 절기부 생산자판매가격	"
103005 - 21	라 디 오	전기용 5구다이내믹 5촌스피어커 2 band 생산자판매가격	"
103006 - 21	라 디 오	트랜지스터 7석다이내믹 5촌스피어커 BM709 또는 2 band 생산자판매가격	"
103007 - 21	전 축	10 W 가정용 2 X 6 A 급 "	"
103008 - 21	전 화 기	신호기 1 호 자동식흑색 "	"
103009 - 21	믹 샷 기	전기식 100V 240W 1200cc 유리컵및 밧모타는 수입품 생산판매가격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103010-20	전 구	백열 100V 30W 25개입 생산자판매가격	상 자
103011-20	형 광등 관구	FL-20D 생산자판매가격	개
103012-19	극 판	축전지용 H극판 생산자판매가격	"
103013-20	전 전 지	DM = (BA30) 1.5V "	상자(24개)
103014-20	회 중 전 등	1자형(대) 알루미늄제 "	타
103015-21	전 자 시 계	705 호 패종전자식 "	대
104	기타기계기구		
104001-19	제 초 기	2연식 직경 17.5cm, 폭 11.5cm 장 7.2cm의 바퀴 2개 생산자판매가격	"
104002-19	인 력 탈 곡 기	2인족답식 14매판 "	"
104003-19	제 승 기	1인족답식 "	"
104004-19	용 접 기	10KW 교류형 300A "	"
104005-19	직 기 용 종 광	면직기용 # 27 10 $\frac{1}{4}$ " "	분
104006-19	방 적 용 경 목 관	타방용 8"×1"×7/8" "	"
104007-19	직 기 용 샷 틀	면직용 14촌 보통식 "	개
104008-19	편 직 기	중 4.5mm 200분 일계스프링사용 "	대
104009-19	대 환 기	하절 메리야스용 직경 17" 생산자 판매가격	"
104010-21	재 봉 기	구형 가정용 D.N형 직선, 발틀 두 부만 생산자판매가격	"
104011-21	"	신형 가정용 D.B형 직선, 발틀 두 부만 생산자판매가격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104012-19	베리아스기바늘	대 환기용 양면침 800~1,000 침 생산자판매가격	본
104013-19	볼 트	6각두 12 mm 길이 100 mm 생산자판매가격	개
104014-19	낫 트	6각두 12 mm 생산자판매가격	"
104015-21	도량형기	접시지시저울 자동칭 10 kg 편면 스프링 2 개 생산자판매가격	대
104016-21	온도계	적경 5.5~6 mm 길이 30 cm 알콜 한란계 0°C -100°C 생산자 판매가격	개
104017-21	타자기	한글타자기 사무용 12" 생산자판매가격	대
11	연료및전력		
111	석탄류		
111001-19	유연탄	분탄 6,500~7,000 cal 수입품 인천부두저탄장가격	M/T
111002-19	무연탄분탄	석공 3급탄 5,300~5,600cal 석공저탄장가격	"
111003-19	무연분탄	민영탄 5,300~5,600cal 도착역 저탄장가격	"
111004-19	무연괴탄	석공 1급탄 5,900~6,200cal 석공저탄장가격	"
111005-19	조개탄	5,700 cal 이상 생산자판매가격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111006-20	연 탄	19공 5,000cal 기준 생산자판매가격 (공장도 운임제외)	200 개
112	석 유 류		
112001-19	휘 발 유	자동차용 A형 용기제외 K000 공장도판매가격	드 램
112002-20	등 유	백등유 용기제외 K000 판매가격	//
112003-19	경 유	디젤용 D-50 A형 용기제외 K000 판매가격	//
112004-19	중 유	해군용 특호 용기제외 K000 판매가격	//
112005-19	방카 C 유	연료용 용기제외 K000 판매가격	//
112006-20	푸로판가스	용기제외 K000 판매가격	kg
113	장작빚목탄		
113001-20	장 작	송중작 2척×6척×6척 역두가격	평
113002-20	목 탄	참나무술 상품 6관입 역두가격	포
114	전 력		
114001-19	대 동 력	100 KW 수용가 일 40,000 KWH 총비용	40,000KWH
114002-19	소 동 력	10 KW 수용가 일 2,000KWH 총비용	3,000"
12	잡 품		
121	광 산 품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1211	금속 광석		
121101-11	철 광 석	Fe 56 % 광산최근역가격	M T
121102-11	동 광 석	Cu 6 % 제련소구입가격	"
121103-11	연 광 석	Pb 50 % 제련소구입가격	"
121104-11	휘 수 연	MOS ₂ 90 % 이상 부두판매가격	S T
1212	비금속 광석		
121201-11	토 상 흑 연	C 75 % 광산현장인도가격	M T
121202-11	납 석	SK #34 "	"
121203-11	고 령 토	SK #34 Pink 부두가격	"
121204-11	"	SK #35 White "	"
121205-11	형 석	CaF ₂ 80 % 광산최근역두가격	"
121206-11	활 석	분 Mg O 30 % STO ₂ 60 % 325 목 공장구입가격	"
121207-11	인 상 흑 연	C 75 % 이상 광산최근역두가격	"
121208-11	석 면	6 D (6 급) 슬레이트 및 바킹 제조용 수입품 부두가격	S T
121209-11	석 면 판	1 m × 1 m 생산자판매가격	상자 (50장)
121210-11	석 회 석	CaO 50 % 이상 STO ₂ 0.5 % 이하 생산자판매가격	M T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121211-12	건 치 석	화강암 1척×1척×1.5척 대도시인근채석장판매가격	개
121212-12	쇄 석	화강암 직경 약 5cm 대도시인근채석장판매가격	m ³
121213-12	장 석	Fe ₂ O ₃ 1%이상 SiO ₂ 60%이상 Al ₂ O ₃ 30%이상 광산역누가격	M T
121214-12	대 리 석	황룡 두께 25mm 시공비포함 생산자판매가격	m ²
121215-11	규 사	초자용 23목이하 생산자판매가격	M T
121216-11	석영규석	SiO ₂ (시리카) 99.5%이상 광산최근역가격	//
122	피 혁 류		
122001-11	생 우 피	보통급 30kg (대) 공장구입가격	장
122002-11	Bullhide	9016-10016 수입품 보세창고인도가격	//
122003-11	우 갑 피	상급품 생산자판매가격	평
122004-11	우 저 혁	홍 생산자판매가격	//
122005-11	차 리 혁	중급품 후 2.5mm~3.6mm 가방제조용 생산자판매가격	//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122006-11	세무피(양피)	C형 생산자판매가격	평
123	가 구 류		
123001-21	옷 장	철제캐비닛 4척×6척×1.9척 생산자판매가격	개
123002-21	서류보관장	2.8척×5.9척×1.2척 0.7mm 철 판 설합 2, 책판 3 생산자판매 가격	//
123003-20	편 수 탁 자	3.5척×2.5척×2.5척 라왕 생산자판매가격	//
123004-20	의 자	사무용 라왕 회전철제 1.4척×1.5척×2.9척 생산자 판매가격	//
123005-20	호마이카상	2척×3척 다리접기식 생산자판매가격	//
123	합성수지제품		
124001-11	포리에 치렌필름	0.02mm×60cm×457m 생산자판매가격	권
124002-11	//	0.03mm×90cm×457m 생산자판매가격	//
124003-11	비닐 레 자	0.3mm×3.6"×40m 생산자판매가격	//
124004-20	대 야	프라스틱제대(2808) 생산자판매가격	개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124005-20	선 달	비닐체, 여자용 생산자판매가격	족
124006-20	비닐우산	중품 생산자판매가격	10 개
124007-19	아크릴판	두께 3 mm 132 mm X 105 cm 생산자 판매가격	평방척
124008-20	스폰지	프라스틱제 중품 두께 4 인치 생 산자판매가격	평
125	기 타		
125001-20	감 초	2 호 수입품 도매상판매가격	개
125002-20	오 배 자	충북산 도매상판매가격	"
125003-20	고 려 삼	30 편 도매상판매가격	"
125004-20	당 귀	도매상판매가격	100 개
12500-20	연 필	필기용 HB 흑심 고무붙임 중품 생산자판매가격	그로스 12타
125006-20	만 년 필	파이렛트 5 형 도매상판매가격	본
125007-20	볼 펜	녹크식 pencil 형 생산자판매가격	"
125008-20	콤포스	A-2 학생용 생산자판매가격	타
125009-20	주 판	본체 27 선 도매상판매가격	개
125010-20	백 목	특대 36 본 X 100 갑 생산자판매가 격	상 자
125011-20	크 레 용	16 색 12 갑입 생산자판매가격	"
125012-20	필기용잉크	청색 중품 2 합병 3 타 생산자판 매 가격	"
125013-20	원 지	상품 백색기계용 생산자판매가격	갑(100장)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125014-20	흑 판	12척×4척 합판계 상품 수성암배합 합성수지 생산자판매 가격	개
125015-20	우 산	나이론 61cm 통살 10개 상품 생산자판매가격	개
125016-20	레코드 판	L.P형 12촌 A급가수 국내취입 생산자판매가격	장
125017-20	안 경 테	세루로이드 상품 일반용(6mm) 생산자판매가격	개
125018-21	오 르 간	61건 쌍렬 생산자판매가격	대
125019-21	피 아 노	88건 중형 "	대
125020-20	돛 자 리	1등급 5척×6.5척 도매상 판매가 격	장
125012-20	인 삼 차	상품 수출용 합격품 생산자판매 가격	병(100g)
125022-20	인삼제제	병당 50정입 생산자판매가격	상자(10병)
125023-20	새 끼	중승(굵기 9~12mm) 길이 약 100m 농협구입가격	다 래
125024-20	가 마 니	곡용 4두입 1등급 농협구입가 격	장
125025-21	유 모 차	유아용 상품 생산자판매가격	대

Code	분 류	품 질 규 격	단 위
125026 - 11	원 돈 모	동모 가공업자구입가격	근
125027 - 11	우 골	가공업자 구입가격	%
125028 - 11	석 골	국산품 도매상 판매가격	대 (30kg)
125029 - 11	배 합 사 료	성계산란용 담백질 15% 이상 (65, 72, 80 호) 함유 생산자 판매가격	대 (15kg)
125030 - 19	이 발 용 의 자	3 호 생산자 판매가격	대
125031 - 19	연 마 지 석	A 형 직경 5 인치 두께 1 인치 생산자 판매가격	개

<부록 2>

가 격 의 불 연 속 보 고 표

1. 상품번호 _____
2. 상품명 _____ 시조사원
3. 변경내용 _____ ㉠

	변 경 전	변 경 후
품 질 규 격		
가 격 조 사 단 계		
거 래 단 위		
조 사 대 상 처		
기 타 사 항		
가 격		
생 산 비		

가격란에는 조사지침에 있어서 신규상품이 동시에 한시장에서 거래되며 또한 충분히 경제적인 때의 가격을 기입하고 이와같은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 일제히 산상품으로 대체되었을 때는 생산비란에 그 추정 생산비를 기입한다.

4. 변경이유

년 월 일 가격조사 결과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보고하오니 처리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관

9. 도소매업 동태조사

차 례

1 . 조사의 개요	343
가 . 조사의 목적	343
나 . 조사의 범위	343
다 . 조사의 방법	343
라 . 조사대상	343
마 . 조사표	343
바 . 조사체계	344
사 . 조사대상기간 , 조사기일 및 조사표제출	344
아 . 조사결과의 공표	344
2 . 조사의 범위	344
가 . 점포의 개념	344
나 . 조사의 단위	347
다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점포	348
3 . 조사원 직무요령	349
가 . 실 사	349
나 . 사고점포처리	349
다 . 조사표 기입요령	350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의 목적

도소매업 동태조사는 수도서울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점포의 상품판매, 재고, 구입등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유통면에서 본 경기 변동 추세를 측정하고 불가정책 및 국민소득 추계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조사의 범위

서울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한정하여 조사의 범위는 "한국표준 산업분류" 대분류 "6 상업" 중 "61도매업" 과 "62소매업" 에 속하는 약 7만 점포중에서 표본 이론에 의하여 층화 추출된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조사의 방법

모집단에서 추출된 점포의 관리책임자에게 조사원이 직접 면접하는 타계식 면접조사방법에 의한다.

라. 조사대상

조사대상이 되는 점포는 도·소매업 동태조사 대상처명부에 조사원별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앞으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사한다. 만약 표본점포가 휴업이나 폐업, 이전 및 전업으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하게 될 때는 즉시 당과에 보고하여 동종의 사업체를 지정받아서 조사하도록 한다. 따라서 조사원당 조사점포 수는 매월 동일하여야 한다.

마. 조사표

조사시 다음의 조사표에 있는 소정의 조사항목을 조사원이 기입한다.

1) 조사표 (청색)

도매업에 속하는 점포에 한한다.

2) 조사표 (백색)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체에 한한다.

바. 조사체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조사원—신고자

사. 조사대상기간, 조사기일 및 조사표제출

조사대상기간	조사기일	제출기일
매월 1일부터 달말까지	차월 1일—6일까지	조사월 8일까지

아. 조사결과의 공표

조사결과는 소정의 집계과정을 거쳐 한국 통계월보에 공표한다.

2. 조 사 의 범 위

조사의 범위는 전술한 바와같이 수도 서울의 도·소매업 점포에 한하며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해설한다.

가. 점포의 개념

점포란 주로 유체적 상품의 매매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상품판매에 부수되는 가벼운 정도의 가공·조립 및 수리는 상업에 포함한다.

1) 도매업

도매업이란 주로 다음의 업무를 행하는 점포를 말한다.

가) 소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나) 공장, 광산등에 대하여 원재료 및 연료등을 판매하는 경우

다) 호텔, 여관, 병원, 이발소, 미용원 등 서비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라) 관공서, 학교, 회사,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용품 및 기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마) 토건업자, 운수업자 등 산업용 사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단, 개인경영의 농·임·수산업자에 대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도매업이라 하지 않고 소매업으로 본다. 또한 다음에 게재하는 상품은 주로 산업용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도매업으로 본다.

(1) 업무용에 주로 사용하는 상품

예: 산업용 기계기구(농기구 제외)

(2) 자동차

(3) 주유료

단, 등유로 사용하는 유로는 소매업으로 본다.

바) 주로 수수료를 받고 상품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대리점 중개업)

주: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사)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종사하는 경우(무역업)

주: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다음의 경우는 도매업으로 하여 조사대상으로 한다.

(1) 총괄적 관리형태의 광공업회사

(본사 또는 출장소)는 판매업무는 같이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외되지만 별도의 장소에서 자기제품을 도매하는 점포직매점을 가지고 본사와 다른 장부에 의하여 매매업무를 행하는 경우는

도매업으로 본다。

(2) 제조도매상중 스스로는 상품을 만들지 않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하청 공장등에 지급해서 제품을 만들게 한 후 이것을 자기의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는 도매업으로 본다。

2) 소매업

소매업이라 함은 일반소비자(개인 및 가계·농가·어가포함)에 대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다음의 경우도 소매업으로 본다。

(1) 소매와 관련상품의 수리를 겸하는 경우(단, 수리전업의 경우는 제외됨)

(2) 주로 개인경영의 농림·수산업자(법인경영은 도매업임)에 대하여 생산에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나) 제조소매업

제조한 상품을 그 장소에서 개인 또는 가정용 소비자(농가·어가포함)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 : 양과점, 양화점, 양장점, 가구점, 과자점, 빵집, 누부집 등

주 : (1) 과자점이나 빵집이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판매하는 경우는 개인 서어비스업의 다과점으로 보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자가생산의 제품보다 타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한 상품의 비중이 클 때에는 소매업으로 본다。

(3) 스스로 상품을 만들지 않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하청공장등에 지급해서 제품을 만들게 하여 자기명의로 소매할 때도 소매업으로 본다。

나. 조사의 단위

1) 도·소매업 동태조사의 조사단위는 개개의 점포이며 하나의 회사 또는 1인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점포가 둘 이상 있을 때는 별개로 조사한다.

2) 여기서 말하는 점포란 "상품의 매매가 영업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개개의 물리적 장소"를 말하며 1구획을 차지하여 경영을 하고 있는 장소이다. 동일구내에 있으면 경영주체가 동일인인 경우 1구획으로 보고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영주체가 다르면 별개의 점포로 취급한다.

예를 들면 점포의 일부를 빌려서 따로 경영하는 점포인 경우는 동일구내라 할지라도 별개의 점포로 본다.

3) 동일구내란 일반적으로 울타리 같은 것을 가진 장소로서 관계자 이외 타인의 출입이 자유로 허용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동일구내나 아니냐가 불명확할 때는 임금 및 경영장부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점포로 하고 동일경영자가 독립된 별개의 두 건물에서 각각 다른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점포로 취급하며 또한 동일건물안에 방을 달리고 있는 제조회사의 본사와 그 판매지점이 있는 경우는 경리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만 별개의 점포로 보아 조사대상으로 한다.

4) 근접한 두개 이상의 장소에서 경영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임금이나 제장부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점포로 할 수 있으며 근접의 범위는 나란히 있거나 길 건너 마주보고 있는 것과 같은 좁은 범위로 한정한다.

5) 관공서 또는 회사에 부설된 직영매점이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으로 한다.

6) 농가 또는 어가의 가옥내 또는 이에 부설된 점포를 갖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농가·어가와는 별도로 그 점포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점포

다음에 기술된 것을 조사기술상 및 기타의 이유로 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공영기업체가 경영하는 점포

예 : (가) 국제관광공사가 경영하는 점포

단, 공사가 임대계약에 의해 점포를 빌려준 경우는 조사한다.

(나) 농협 및 수협의 공판장

단, 어업협동조합에서 경영하는 위탁판매장이나 리·동농업협동조합에서 경영하는 구판장은 조사한다.

2) 출입에 입장료 또는 허가등의 제한이 있는 장소에 설비되어 있거나 또는 그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한 자에 한정하고 있는 것.

예 : 역·홈내의 매점, 극장, 영화관, 야구장, 군병영내의 매점, 관공서, 학교, 회사, 공장내의 후생시설로서의 매점, 입장료를 받는 고궁내의 매점

3) 영업의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것, 또는 영업을 위한 고정적 설비가 없는 것.

예 : 노점, 입매, 행상등

단, 일정한 점포에 부설된 경우는 그 사업의 일부로 보고 양자를 합하여 조사한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장날에 따라 이동하는 상점은 제외한다.

4) 연초소매점

연초소매점이 다른 상품과 겸매일 때는 연초소매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 조사한다。

5) 외국정부나 주둔외국군이 경영하는 점포

6) 수리전업

단, 판매와 이에 부수되는 수리, 가공등을 겸하고 있는 점포는 조사대상으로 한다。

3. 조사원 직무요령

가. 실 사

1) 조사용품의 수령

가) 요령서

나) 점포명부

다) 대상점포 인사장

라) 표본점포 카드 및 표본점포 번농보고서

나. 사고점포처리

1) 응답불응 및 조사기피 점포

조사대상점포가 비협조적이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는 조사의 목적과 자료의 효용성을 이해시키고 비밀이 보장되는 점을 강조하여 계속 상대방의 협조를 촉구하여야 하며 2·3차 방문시에도 불응할 경우는 당과에 보고하여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불확실한 신고를 하는 점포

점포주나 대리인이 불확실한 신고를 하거나 허위신고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점포의 규모나 종업원수 업종 및 전월사

항을 참고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3) 제출한 조사표중 검토결과 판매액 및 재고액에 있어 단위 착오등의 원인으로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는 점포에 대하여는 담당조사원으로 하여금 재조사토록 한다.

다. 조사표의 기입요령

1) 조사표의 ※란은 당과 집계용 부호란이므로 조사원은 기입하지 않는다.

예 : 시별, 구별 표본번호, 산업분류 점포규모 판매액계층

2) 일반적 기입사항

가) 조사표는 반드시 흑·청색잉크 또는 볼펜으로 명백히 기입한다.

나) 조사표에 기입하는 숫자는 1, 2, 3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고 단위는 사사오입한다.

다) 단위는 천원단위로 한다.

3) 조사사항

가) 표본점포 일련번호

당과에서 작성하여 하달한 점포명부 작성상의 일련번호를 조사표 참고사항 우하단에 있는 속에 기입한다.

나) 종업원수

(1) 종업원이라 함은 조사일 현재로 점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유급역원과 상용고용원을 말하며 인원을 종업원수란에 기입한다.

(2) 자영업주·무급가족 종사자 유급역원

① 자영업주는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실제로 그 점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명의만 업무주로 실제로는 그 점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때는 제외한다.

② 무급가족 종사자란 생계를 같이하는 점포의 자영업주나 그의 배우자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로서 점포의 업무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③ 유급역원은 회사의 사장이나 감사등 유급의 법인 임원으로 주로 점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 중 주식배당금만 취하고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때는 제외한다. 법인사업체의 대표자와 직원중 일반 종업원과 동일한 급여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는 상용고용원으로 취급한다.

(나) 상용고용원

이는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1개월이상 고정급여를 받고 고용된 자를 말한다. 아래사항에 해당된자도 상용고용원으로 본다.

- ① 우유배달등 배달원으로 고용된자
- ② 자영업주의 가족으로 일정의 급여를 받는자
- ③ 전습자로 소액의 일정급여를 지급받는자
- ④ 코뮤티손을 받는 외무사원이나 판매원

(다) 임시 및 일일로 고용된 자라도 조사기준일 현재로 과거 2개월간 매월 20일이상 고용된자는 상용고용원으로 포함한다.

다) 분류번호 및 상품명

분류번호는 조사원용 상품분류표에 의하여 도·소매별로 기입하고 상품은 고적체로된 상품명을 기입한다(단, 상품명에 분류표에 없는 것은 분류번호란은 그대로 두고 원래의 상품명을 명확하게 기입할 것.)

라) 월중판매액

월중 상품판매액은 해당조사 대상월의 1개월간에 판매한

전 상품의 판매액을 기입하며 이는 현금판매, 외상판매, 월부판매액의 총액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1) 상품의 대금전액을 받았을 경우에 상품인도서는 물론 상품의 인도전이라도 대금을 받았을 때 판매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판매액에 계상한다.

(2) 외상판매, 할부판매의 경우는 상품을 인도했을 때 대금의 전액을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3) 시용판매(고객이 상품을 시험적으로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구입하고 그렇지 못하면 반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는 판매)의 경우는 대금을 입금했을 때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4) 상품권의 발행은 상품판매액에 계상하지 않지만 그 상품권으로 상품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그액만큼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5) 예약판매는 판매계약을 하고 상품이 완성되어 인도했을 때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6) 물품세등의 간접세는 상품판매액에 포함한다.

(7) 가공임 수수료가 상품판매와 결부되었을 때는 해당 상품의 판매액에 포함한다.

(8) 점포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조사시의 판매 가격으로 판매액에 계상한다.

마) 월말재고액

상품재고액은 조사대 상기간말일 현재 점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상품의 금액을 말한다. 금액계상은 시가주의(조사당시 구입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는 상품재고액으로 기입한다.

(1) 영업창고 또는 자가창고, 하차장등 기타의 장소에 보관한
상품

(2) 시용판매품은 고객으로 부터 매입통지나 대금을 입금하기
전까지 포함한다.

(3) 주문 상품이나 예약판매에 의한 상품은 상품인도 또는 대
금을 입금하기 전까지 포함한다.

(4) 조사일 현재 수송도중에 있는 미착품

바) 외상판매액

외상판매액은 외상판매(상품을 인도할때 대금의 일부 또
는 전부를 후일에 지불하도록 하는 판매)와 할부판매(일정의 기
준에 따라 대금을 수회로 분할 지불하도록 계약에 의한 판매)의
대금을 받지 않는 총액을 말한다.

주: 외상판매액은 월중판매액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사) 월중구입액

상품류별 월중구입한 상품류를 금액으로 기입한다.

주: 금액계상은 시가주의(조사당시 구입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조사한다.

아) 참고사항란

이는 조사대상월 현재의 특기사항 및 판매, 재고의 급격한
변동원인등을 기입한다.

부

록

1. 연령 표

1969년 기준

연령	간지	띠명	단기	서기	일본 연호	연령	간지	띠명	단기	서기	일본 연호
					소화						
0	기유	닭	4302	1969	44						
1	무신	잔나비	4301	1968	43						소화
2	정미	양	4300	1967	42	27	임오	말	4275	1942	17
3	병오	말	4299	1966	41	28	신사	뱀	4274	1941	16
4	을사	뱀	4298	1965	40	29	경진	용	4273	1940	15
5	갑진	용	4297	1964	39	30	기묘	토끼	4272	1939	14
6	계묘	토끼	4296	1963	38	31	무인	범	4271	1938	13
7	임인	범	4295	1962	37	32	정축	소	4270	1937	12
8	신축	소	4294	1961	36	33	병자	쥐	4269	1936	11
9	경자	쥐	4293	1960	35	34	을해	돼지	4268	1935	10
10	기해	돼지	4292	1959	34	35	갑술	개	4267	1934	9
11	무술	개	4291	1958	33	36	계유	닭	4266	1933	8
12	정유	닭	4290	1957	32	37	임신	잔나비	4265	1932	7
13	병신	잔나비	4289	1956	31	38	신미	양	4264	1931	6
14	을미	양	4288	1955	30	39	경오	말	4263	1930	5
15	갑오	말	4287	1954	29	40	기사	뱀	4262	1929	4
16	계사	뱀	4286	1953	28	41	무진	용	4261	1928	3
17	임진	용	4285	1952	27	42	정묘	토끼	4260	1927	2
18	계묘	토끼	4284	1951	26	43	병인	범	4259	1926	1
19	경인	범	4283	1950	25	44	을축	소	4258	1925	대정14
20	기축	소	4282	1949	24	45	갑자	쥐	4257	1924	13
21	무자	쥐	4281	1948	23	46	계해	돼지	4256	1923	12
22	정해	돼지	4280	1947	22	47	임술	개	4255	1922	11
23	병술	개	4279	1946	21	48	신유	닭	4254	1921	10
24	을유	닭	4278	1945	20	49	경신	잔나비	4253	1920	9
25	갑신	잔나비	4277	1944	19	50	기미	양	4252	1919	8
26	계미	양	4276	1943	18	51	무오	말	4251	1918	7

연령	간지	띠명	단기	서기	일본 연호	연령	간지	띠명	단기	서기	일본 연호
52	정사	뱀	4250	1917	대정 6	77	임진	용	4225	1892	명치 25
53	병진	용	4249	1916	5	78	신묘	토끼	4224	1891	24
54	을묘	토끼	4248	1915	4	79	경인	범	4223	1890	23
55	갑인	범	4247	1914	3	80	기축	소	4222	1889	22
56	계축	소	4246	1913	2	81	무자	쥐	4221	1888	21
57	임자	쥐	4245	1912	대정 1	82	정해	돼지	4220	1887	20
58	신해	돼지	4244	1911	명치44	83	병술	개	4219	1886	19
59	경술	개	4243	1910	43	84	을유	닭	4218	1885	18
60	을유	닭	4242	1909	42	85	갑신	잔나비	4217	1884	17
61	무신	잔나비	4241	1908	41	86	계미	양	4216	1883	16
62	정미	양	4240	1907	40	87	임오	말	4215	1882	15
63	병오	말	4239	1906	39	88	신사	뱀	4214	1881	14
64	을사	뱀	4238	1905	38	89	경진	용	4213	1880	13
65	갑진	용	4237	1904	37	90	기묘	토끼	4212	1879	12
66	계묘	토끼	4236	1903	36	91	무인	범	4211	1878	11
67	임인	범	4235	1902	35	92	정축	소	4210	1877	10
68	신축	소	4234	1901	34	93	병자	쥐	4209	1876	9
69	경자	쥐	4233	1900	33	94	을해	돼지	4208	1875	8
70	기해	돼지	4232	1899	32	95	갑술	개	4207	1874	7
71	무술	개	4231	1898	명치31	96	계유	닭	4206	1873	6
72	정유	닭	4230	1897	30	97	임신	잔나비	4205	1872	5
73	병신	잔나비	4229	1896	29	98	신미	양	4204	1871	4
74	을미	양	4228	1895	28	99	경오	말	4203	1870	3
75	갑오	말	4227	1894	27	100	기사	뱀	4202	1869	2
76	계사	뱀	4226	1893	26	101	무진	용	4201	1868	1

2. 계량단위환산표

(1) 길이

미터법			야아드·파운드법				척·관·법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인치	피이드	야아드	마일	척	관	법	리
1	0.01	0.00001	0.3937	0.03281	0.01094	0.000006	0.033	0.0055	0.000092	
100	1	0.001	39.37	3.2808	1.0936	0.00062	3.3	0.55	0.009166	0.00025
100000	1000	1	39370.7	3280.8	1093.6	0.62137	3300	550	9.1666	0.25463
2.54	0.0254	0.000025	1	0.08333	0.02777	0.000015	0.08382	0.01397	0.000232	
30.48	0.3048	0.000304	12	1	0.3333	0.000189	1.0058	0.16763	0.002793	
91.44	0.9144	0.000914	36	3	1	0.000568	3.0175	0.50292	0.008381	0.000232
160930	1609.3	1.6093	63360	5280	1760	1	5310.8	885.12	14.752	0.40978
30.303	0.30303	0.000303	11.93	0.99419	0.33139	0.000188	1	0.16666	0.002777	0.000077
181.818	1.81818	0.001818	71.582	5.96514	1.98838	0.001129	6	1	0.01666	0.00046
10909.08	109.091	0.10909	4294.94	357.912	119.304	0.06779	360	60	1	0.02777
392727	3927.27	3.92727	154620	12885	4295	2.4403	12960	2160	36	1

(2) 넓 이

-360-

미터법			야아드·파운드법				척관법			
평방미터	야아르	헥타아르	평방킬로미터	평방피이드	평방야아드	에이커	평방척	평	단(反)보	정 보
1	0.01	0.0001	0.000001	10.764	1.1968	0.000247	10.89	0.3025	0.001008	0.0001
100	1	0.01	0.0001	1076.4	119.68	0.024711	1089	30.25	0.10083	0.01008
10000	100	1	0.01	107640	11,968	2.4711	108900	3025	10.083	1.0083
1000000	10000	100	1	10764000	1196800	247.11	10890.00	302500	1008.3	100.83
0.092903	0.000929	0.000009	-	1	0.1111	0.000022	1.0117	0.0281	0.000093	0.000009
0.83613	0.008361	0.000084	-	9	1	0.000207	9.1055	0.25293	0.000843	0.000084
4046.8	40,468	0.404680	0.004047	43560	4840	1	44071.2	1224.2	4.0806	0.40806
0.091827	0.000918	0.000009	-	0.98841	0.10982	-	1	0.02778	0.000092	0.000009
3.3058	0.033058	0.000331	0.000003	35.583	3.9537	0.000817	36	1	0.003333	0.000333
991.74	9.9174	0.099174	0.000992	10674.9	1186.1	0.24506	10800	300	1	0.1
9917.4	99.174	0.99174	0.00992	106749	11861	2.4506	108000	3000	10	1

(3) 부 피

미 터 . 법			야 아 드 .		
미 리 미 터	리 터	킬로 미 터	입 방 인 치	입 방 피 이 드	입 방 야 아 드
1	0.001	0.000001	0.061024	0.000035	0.000001
1000	1	0.001	61.024	0.035315	0.001308
1000000	1000	1	61024	35.315	1.30796
16.387	0.01638	0.000016	1	0.000578	0.000021
28316.8	28.317	0.02831	1728	1	0.03704
764529.8	764.53	0.76453	46656	27	1
35238.32	35.2383	0.035238	2150.42	1.2444	0.04608
473.18	0.47318	0.000473	28.875	0.01671	0.000619
3785.4	3.7854	0.00378	231	0.13368	0.004591
180.39	0.18039	0.000180	11.08	0.00637	0.000235
1803.9	1.8039	0.00180	110.08	0.0637	0.002359
18039	18.039	0.01803	1100.8	0.637037	0.023594
180390	180.39	0.18039	11008	6.37037	0.23594

주 : 1) 은 미 량

미국 (U.S.) 곡 량 1 펙 크 (Peck) = 1/4 붓 셀 (bsh) =

영국 (U.K.) 곡 량 1 붓 셀 (bsh) = 36.367 입 (ℓ) =

1 펙 크 (Peck) = 1/4 붓 셀 (bsh) =

액 량 1 갈 론 (gal.) = 4.546 입 (ℓ) =

1 파 인 트 (Pt.) = 1/8 갈 론 (gal) =

파운드법			척관법			
(미) 붓셀	(미) 포인트 액 1)	(미) 갈론 액 1)	합	승	두	석
0.000028	0.002113	0.000264	0.005543	0.000554	0.000055	0.000005
0.028378	2.113423	0.264177	5.5435	0.55435	0.055435	0.005543
28.378	2113.24	264.177	5543.5	554.35	55.485	5.5435
0.000465	0.000034	0.004329	0.0908	0.00908	0.000908	0.0000908
0.8036	53.85996	7.48051	15.698	15.698	1.5698	0.15698
21.7013	0.001631	201.97	4238.09	423.809	42.380	4.2380
1	74.4768	9.3096	195.436	19.5346	1.9534	0.19534
0.013427	1	0.125	2.623	0.2623	0.0262	0.00262
0.10742	8	1	20.984	2.0984	0.20984	0.02098
0.005119	0.38123	0.04765	1	0.1	0.01	0.001
0.05119	3.8123	0.4765	10	1	0.1	0.01
0.5119	38.123	4.7654	100	10	1	0.1
5.119	381.23	47.654	1000	100	10	1

8.8098 입 (ℓ) = 4.884 승 (sung)

2.016 두 (tu)

9.092 입 (ℓ) = 5.041 승 (sung)

2.52 승 (sung)

0.568 입 (ℓ) = 3.15 합 (hop)

(4) 무게

미터법			야아드·파운드법					척관법		
그램	킬로그램	톤	그레인	(상) 1) 온스	(상) 1) 파운드	미톤 2)	영톤 3)	돈	근	관
1	0.001	0.000001	15.432	0.33527	0.0022	0.000001	-	0.26666	0.00166	0.000266
1000	1	0.001	15432	35.273	2.20459	0.0011	0.00098	266.666	1.66666	0.26666
1000000	1000	1	-	35273	2204.59	1.1023	0.98421	266666.6	1666.66	266.666
0.064798	0.000064	-	1	0.002285	0.000143	-	-	0.01728	0.00108	0.000017
28.3495	0.02835	0.000028	437.5	1	0.0625	0.000031	0.000027	7.56	0.04725	0.00756
453.592	0.45359	0.000454	7000	16	1	0.000504	0.00045	120.96	0.756	0.12096
907.180	907.18	0.90718	-	32000	2000	1	0.8929	241915	1511.968	241.915
1016.050	1016.05	1.01605	-	35840	2240	1.12	1	270944	1693.4	270.95
375	0.00375	0.000004	57872	0.1323	0.00827	-	-	1	0.00625	0.001
600	0.6	0.0006	9259.556	21.1647	1.32279	0.000661	0.00059	160	1	0.16
3750	3.75	0.00375	57872	132.28	8.2672	0.00413	0.00369	1000	6.25	1

-364-

주: 1) 은 상형 2) 은 미량 다 (yd.). 봉도 (lb.) 법에는 상형과 금형이 있다.

3) 은 영량 귀금속류의 계량에는 금형으로 1카랏 (200mg)를 사용한다.